■ 2016년 전문자료집 ■

팀 스 터 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2016년 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16-01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칭찬 ····· 5
- 16-02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 11

2 기능향상지원2팀
- 16-03 기억의 이해 ····· 22
- 16-04 Bobath Introductory course for cerebral palsy ····· 28

3. 가족문화지원팀
- 16-05 프레젠테이션도구 <프레지> ····· 38
- 16-06 뉴스포츠의 종목소개 및 실습 ····· 52

4. 지역연계팀
- 16-07 실무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엑셀 활용 방법 ····· 64
- 16-08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 83

5. 활동지원팀
- 16-09 변화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97

6. 운영지원팀
- 16-10 2016 행복에 관한 연구 ····· 109

7. 직업지원팀
- 16-11 정신장애의 이해 ····· 112
- 16-12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인권의 이해 ····· 122
- 16-13 맞춤형 전달체계의 과제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 137

8. 늘푸른동산 주간보호센터

◦ 16-14 이응교 교수 복지 상식 ····· 149

9. 열린일터

◦ 16-15 이응교 교수 복지 상식 ····· 156

10.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 16-16 당사자 연구 '베델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175

팀스터디 16-01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칭찬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6년 2월 19일 12:40~13:40
발표자	서미례
장 소	언어재활1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칭찬

1. 의사소통의 3가지 요소

1) 시각적 요소

산만한 눈 맞춤은 대개 근심, 거짓, 부끄러움, 나태 혹은 당황 등의 부정적 감정 표현 방법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응시하는 것도 좋지 않다. 하지만 똑바로 상대방을 응시할 필요가 있으며 처음에는 상대의 이마나 입 혹은 불 등으로 눈길을 주어가면서 서서히 눈 맞춤을 늘려 나갈 수 있다.

상대방과의 적당한 거리 유지도 중요하다.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주려면 약 0.5미터 떨어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한다. 팔을 뻗으면 상대방에게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이다.

얼굴 표정도 중요하다. 종종 메시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얼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몸동작과 자세도 중요하다. 얼굴이나 어깨 등을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마주 대하는 자세는 공격적인 자세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다. 가장 좋은 몸가짐의 방향은 정면으로 대하되, 약 10도내지 30도쯤 빗겨 서는 것이다. 이러한 위치는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도 너무 직접적인 응시를 피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2) 음성적 요소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목소리의 크기는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부드럽게 말하면 자기 의사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하는 습관이라면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관계없이 공격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화를 내고 있다거나 야비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말하는 속도에 따라 빠른 말투는 신경질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고, 지나치게 머뭇거리는 말투는 메시지를 불확실하게 만든다. 보통 속도는 1분에 1백 단어내지 2백 단어를 말하는 것이다. 말을 자꾸 반복하여 지루하게 만드는 '음', '에', '저' 등과 같이 끊게 만드는 버릇도 없애야 한다. 음조와 억양을 적당하게 구사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언어적 요소

언어사용의 중요성을 말한다. 문장을 끝맺는 문제로 분산된 문장이나 불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음이 안정되지 못했거나 정신이 혼란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다. 완벽하고 분명한 생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문장을 끝맺기 힘들다면 여러 개의 간단한 문장들을 복잡하고 길게 구성된 문장보다 더욱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말하기 전에 여러 차례 마음속으로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다.

2. 의사소통의 걸림돌 피하기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란, 자기의 문제를 피력하는 사람의 대화를 중단시키는 불쾌한 뉘앙스의 말이나 음조 또는 신체언어를 의미한다.

의사소통의 걸림돌	예	의도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
명령하기	“해야 할 일은 .....이다.” “불평은 그만해라.”	상황을 통제하고 재빠른 해결책을 주고 싶다.	“너는 네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
충고하기	“좋은 생각이 있다.” “이렇게 해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	“너는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 낼 만큼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회유하기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고통을 없애주고 싶다. 기분을 더 좋게 해주고 싶다.	“너는 그런 감정을 느낄 권리가 없다. 너는 고통을 다룰 능력이 없다.”
심문하기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되었니?”	문제의 발단을 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내고 싶다.	“틀림없이 네게 뭔가를 잘못했을 거야”
관심 돌리기	“그 일은 걱정하지 말자.”	화제를 바꿈으로써 그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싶다.	“네가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때 까지 겪어야 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심리 분석하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 “지나치게 신경과민해.”	행동을 분석하고 동기를 설명해 줌으로써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나는 너에 대해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너보다 더 우월하다.”
비판하기	“애당초 왜 그 일을 했니?” “그 일을 한 것인 미련한 짓이었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돕고 싶다.	“너는 판단력이 형편없어.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해.”
빈정대기	“글쎄, 이제는 끝장인 것 같다.”	바보같이 느끼게 함으로써 태도와 행동이 몹시 잘못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다.	“너는 정말 어리석구나”
도덕적 판단하기	“....하는 것이 옳다.” “너는 정말.....해야 한다.”	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	“네가 할 올바른 가치관은 내가 선택해 줄게.”
해결사 노릇하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조처한다는 것쯤이야 누구나 다 알고 있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척척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싶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의사소통의 걸림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정적으로 경정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조력하는 것이다.

3. 적극적 의사소통

1단계 -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적극적 경천이란 귀와 눈으로 경청하고, 직관과 사고로 경청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잘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① 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기운을 차릴 수 있다. 주의 집중은 "나는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는 소중하다. 나는 데 곁에서 너를 도와주고 싶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② 자신의 말을 최소한으로 줄여라

입을 열어 말을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없게 된다. 먼저 경청해 주고, 말은 많이 하지 말도록 한다.

③ 잘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라

'아 그래', 또는 '음- 음'과 같은 단순한 말이라도 해 주면 좋다. 말한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명료화 질문으로 확인하고 길게 한 이야기를 요약해 준다.

2단계 - 감정에 귀를 기울인다.

말의 내용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의 지각과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과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경청하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감정을 알아내려면 음조를 자세하게 경청하고 얼굴과 몸짓을 살펴야 한다. 이러한 경청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며 공감이란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 감정과 이야기 내용을 연결시킨다.

감정을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면 감정을 반영해 주고 그 감정을 사건의 내용과 연결시켜야 한다. ".....처럼 들리는데", 혹은 "내가 추측하건대.....(내가 생각할 때..)"와 같이 감정을 반영해 주면 독심술사나 해결사처럼 보이지 않고 틀리게 추측했다면, 잘 못된 추측을 수정해 줄 것이다.

4단계 - 대안을 찾아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일단 진정시키고,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좀 더 찾아보고, 각각의 해결방안이 가져다 줄 결과를 예견해 보도록 조력한다. 서둘러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말고, 스스로 대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최종적으로 무엇을, 언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도록 한다.

5단계 - 추후지도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시도된 다음에 다양한 정보가 쏟아진다. 이때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결과가 뒤따랐는지 이야기 한다.

4.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정확하게 찾는 것을 연습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기쁜 감정을 나타내는 말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
인정받는, 희망적인, 유능한, 영예로운, 모험적인, 중요한, 대담한, 기쁜, 찬란한, 사랑스러운, 침착한, 사랑하는, 아껴주는, 신명 나는, 명랑한, 평화스러운, 편안한, 원기 왕성한, 자신 있는, 장난스러운, 만족한, 기분 좋은, 용감한, 자랑스러운, 열심인, 기분이 전환된, 의기양양한, 해방된 듯한, 기가 살아나는, 만족한, 힘이 넘치는, 안정된, 신나는, 성공적인, 자유로운, 깜짝 놀란, 충만한, 동정적인, 반가운, 마음이 고요한, 굉장한, 이해받는 듯한, 기세등등한, 포근한, 행복한, 멋있는, 들뜬, 익살스러운	두려운, 질투심이 나는, 화난, 환멸의, 불안한, 고독한, 수치스러운, 비참한, 얼굴 붉히는, 초조한, 지루한, 기가 질린, 소심한, 고생하는, 기만당한, 욕심 많은, 걱정스러운, 약 올리는, 패배한, 떠밀리는, 반항적인, 배척당한, 실망한, 후회스러운, 풀이 꺾인, 원망스러운, 의기소침한, 부끄러운, 당황스러운, 바보 같은, 샘나는, 의심이 많은, 좌절한, 궁지에 몰린, 죄책감이 드는, 불편한, 미운, 불안정한, 주저하는, 불행한, 희망 없는, 사랑받지 못한, 상처 입은, 불확실한, 참을 수 없는, 싫증난, 짜증이 나는, 걱정스러운

5. 칭찬의 개념

칭찬은 다른 사람의 좋고 훌륭한 점을 들어 추어주거나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다. 칭찬은 상대방이 갖추고 있는 존재로서의 특성과 행동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어 높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칭찬은 인정받고 권장할 어떤 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한 자극의 한 방법으로서 학습자의 동기를 자극시키는 언어적 보상이다. 칭찬은 외적으로 주어지는 자극으로서 효과적일 뿐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얻기 위하여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내적동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인 강화의 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칭찬은 학습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6. 칭찬의 효과

1) 칭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

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얻는다.

② 미래에 도전하고 개척하는 적극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다.

③ 타인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긍정적인 선한 마음으로 변한다.

④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⑤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알아주는 여유를 가지게 된다.

⑥ 삶이 행복하다.

⑦ 상대방을 향상 칭찬은 자신에게 돌아와서 칭찬을 듣는다.

2) 칭찬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효과

① 칭찬 받는 행동을 더 잘하려고 한다.

② 원만한 성격이 된다.

③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④ 높은 자존감, 칭찬받은 행동에 대한 자신감과 긍지를 갖게 한다.

⑤ 칭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상대방을 칭찬한다.

⑥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준다.

7. 칭찬의 원리

1) 개별화의 원리 : 특성이나 발달 수준에 맞추어 칭찬의 내용과 방법이 조절되어야 한다.

2) 일관성의 원리 : 동일한 행동에 대해 동일한 칭찬을 해야 한다.

3) 충분성의 원리 : 칭찬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상대가 만족스럽다고 느낄 만큼 양이 충분하거나 내용이 강렬해야 한다.

4) 즉시성의 원리 : 칭찬거리가 일어난 직후에 칭찬을 바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5) 진정성의 원리 : 진정성은 온 정성을 쏟아 상대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실성과 느낌과 표현을 일치시키는 일치성, 상대방에 대한 신뢰성을 포함한다.

6) 구체성의 원리 : 행동을 자세히 기술하는 칭찬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요구된다.

7) 창의성의 원리 : 칭찬할 내용은 칭찬하는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결론

아동과 보호자를 만나며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기본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경청 및 칭찬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정경숙(2010). 가정과 연계한 격려-칭찬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기본생활습관 향상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옥화(2008). 칭찬부모교육 집단프로그램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어머니가 지각한 모-자 관계변화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광현, 김영숙, 이수남, 이은상, 최양미 공저(2002). 부모역할과 자녀교육. 고육과학사.

김인자(1997).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8가지. 사람과 사람

홍경자, 노안영, 차영희, 최태산 공역(2007). 부모코칭 프로그램: 적극적인 부모역할, Now!. 학지사

팀스터디 16-02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16년 10월 21일 12:20~13:20
발표자	황송이
장 소	상담실2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1. 읽기장애의 원인

가. 신경생물학적 요인 : 뇌기능상의 문제

1) 읽기장애를 지닌 사람은 베르니케 영역과 각화를 포함한 좌뇌의 측두-두정엽 영역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다.

2) 읽기장애를 지닌 사람은 좌뇌의 후두-측두엽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다.

3) 읽기장애를 지닌 사람은 우뇌의 측두-두정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다.

나. 유전적 요인

1) 읽기장애를 가진 부모와 자녀가 읽기장애를 나타낼 위험률은 일반인구보다 8배 높다.

2) 읽기장애 아동의 부모 중 25-60%가 읽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쌍둥이 연구 : 일란성>이란성

4) 염색체 연구 : 1,2,3,6,11,15,18번 염색체

다. 인지처리적 요인(인지처리의 지표)

1) 단어인지 읽기장애 : 음운인식, 빠른자동이름대기, 음운기억, 어휘

2) 읽기유창성 읽기장애 : 빠른 자동 이름대기, 표기처리, 어휘

3) 읽기이해 읽기장애 : 언어지식, 듣기이해, 작동기억, 상위인지

2. 읽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① 읽기 과제를 수행할 때, 부모나 교사에게 과잉 의존하는 성향을 보인다.
② 읽기 수행 시,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다.
③ 읽기전략을 적용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어렵다.
④ 읽은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⑤ 일반화가 어렵다.
⑥ 읽기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
⑦ 읽기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진보가 매우 느리다.
⑧ 모르는 단어를 읽는 것이 어렵고, 단어를 읽기 위해 터무니없는 시도나 추측을 한다.
⑨ 읽을 때 단어의 일부를 생략한다.
⑩ 소리내어 읽는 것을 두려워한다.
⑪ 대치, 생략, 오발음 등 다양한 오류 유형을 나타낸다.
⑫ 힘이 들고 고르지 않게 읽는다.
⑬ 억양의 변화가 부족하여 마치 외국어를 읽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다.
⑭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회피한다.

3. 읽기교수의 영역

가. 읽기선수기술

1) 정의

읽기선수기술은 발현적 문해, 문해출현이라고 하는데, 어린 아동의 초기 읽기 및 쓰기 행동을 말하며 이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읽기 및 쓰기 능력으로 발전한다. 여기에는 프린트 인식, 자모지식, 음운인식, 듣기이해가 포함된다.

2) 읽기선수기술의 하위영역

가) 프린트인식 : 문자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

* 프린트인식이 포함하는 2가지 개념

① 프린트의 기능에 대한 인식

- 문어가 메시지 또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 예 : 요리책의 글자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능을 가짐

② 프린트의 관례에 대한 인식

- 프린트의 특성 및 구조에 대한 관례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 예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기, 한 페이지를 읽은 후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등

* 프린트 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지침

① 프린트의 기능 및 관례 가르치고 강화하기

② 책 읽어주기

③ 프린트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 마련하기

④ 프린트를 활용하는 놀이하기

⑤ 구어와 문어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도록 돕기

⑥ 책읽기를 통해 프린트 관례에 대한 질문하기

나) 음운인식 : 말소리를 식별하는 능력, 같은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와 다른 소리로 시작되는 단어를 인식하는 능력, 단어를 구성하는 음소를 셀 수 있는 능력,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들을 합성·분절·조작할 수 있는 능력

* 하위 기술 및 음운인식 발달 수준

① 음운인식 단위, 음운인식 과제유형에 따라 구분

- 음운인식 단위 : 음절, 초성-각운, 음절체-종성, 음소
- 음운인식 과제유형 : 변별, 분리, 합성, 분절, 탈락, 대치

② 발달순서

- 음운인식 단위 : 문장 내 단어인식→끝소리가 같거나 다른 단어의 인식→음절→초성-각운,음절체-종성→음소
- 음운인식 과제유형 : 변별→합성, 분리, 분절, 수세기→탈락, 대치

* 음운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지침

① 아동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음운인식 교수 실시하기

② 음운 인식을 조기에 가르치기

③ 구체물 활용하기
④ 낱자-소리의 대응관계를 결합한 음운인식 교수 실시하기
⑤ 소집단 교수 실시하기
⑥ 교사의 음소 인식 과제에 대한 시범 보이기
⑦ 학생에게 연습 기회 제공하기
⑧ 아동이 유창성을 획득할 때까지 음운 인식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기

* 교수방법
① 초/중/종성에 기초해서 그림 분류하기
② 운율게임하기
③ 단어, 음절, 음소 수대로 박수치기
④ 단어들의 초성맞추기

다) 자모지식 :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에 대한 지식, 자음자와 모음자의 소리에 대한 지식, 자음자와 모음자의 이름과 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출하는 능력

* 자모지식 향상을 위한 지침
① 자모 관련 책이나 자모 블록 등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② 초기부터 문자소-음소 전환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기
③ 개별 자모의 이름 및 소리 가르치기
④ 개별 자모의 이름과 소리를 가르칠 때 음운인식 활동과 결합하기
⑤ 아동이 유창성을 획득할 때까지 문자소-음소 일치 지식을 자주 측정하기

라) 듣기이해
①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조기 읽기 발달 및 태도에 큰 영향을 준다.
- 책 읽는 방법, 책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터득
- 점차 주도적으로 책 읽기 활동에 참여
② 책을 읽어줄 때,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함
- 그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적절한 속도로 글 읽어주기
- 글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기
- 아동의 답을 반복하거나 확장시키기

나. 단어인지

1) 정의

단어를 빠르게 소리내어 읽고,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음독포함)

2) 학습부진학생의 단어인지 특성
① 일반학생에 비해 단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② 작동기억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읽기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③ 규칙단어보다 불규칙단어와 무의미 단어를 읽을 때 오류를 더 많이 보인다.

④ 일반학생에 비해 모든 단어인지 하위 검사에서 현저하게 낮은 성취를 보인다.

3) 단어인지 교수법

가) 파닉스 교수 : 음운인식과 낱자(군)-소리 대응 관계를 활용하여 단어를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읽기 교수법

* 특징

단어인지에 매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다양한 읽기능력을 지닌 학생에게 효과적이고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저소득층, 읽기장애 위험군 학생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나) 총체적 언어/통언어적 교수

① 읽기능력은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의미있는' 읽기 활동을 통해 단어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② 학생이 의미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단어의 시각적 형태, 발음, 의미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낱자(군)의 난이도와 순서를 고려하여 지도하지 않는다.

④ 문학작품 내에서 단어를 선택하여 지도한다.

⑤ 최근 파닉스 교수의 효과가 입중되면서 총체적 언어교수에 임베디드 파닉스를 삽입하여 단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⑥ 문맥을 활용하여 단어 의미 유추할 수 있다.

다) 다감각적 교수법 : 신체 운동적, 촉각적, 시각, 청각적 자극 등을 함께 제시하는 교수법

다. 유창성

1) 정의

글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절한 표현력을 가지고 읽는 능력으로 정확도, 속도, 표현력을 포함한다.

2) 읽기유창성에서의 오류 분석 기준

가) 대치

① 의미대치 : 제시된 어절을 다른 단어로 대치하는 경우

② 무의미대치 : 제시된 어절을 무의미 단어로 대치하는 경우

③ 형식형태소 대치 : 제시된 어절에서 어미나 조사 등 형식형태소를 다른 형식형태소로 대치한 경우

나) 생략

① 전체 어절 생략 : 제시된 어절의 전체가 생략된 경우

② 형식형태소 생략 : 제시된 어절에서 형식형태소가 생략된 경우

다) 첨가

① 전체 어절 첨가 : 새로운 단어나 어절이 첨가된 경우

② 형식형태소 첨가 : 제시된 어절에 형식형태소가 첨가된 경우

라) 반복
① 전체 어절 반복 : 제시된 어절 전체를 반복한 경우
② 첫 음절 반복 : 제시된 어절의 첫 음절을 반복한 경우
③ 부분 어절 반복 : 제시된 어절의 일부를 반복한 경우
마) 자기교정
오류를 보인 후 자기 스스로 교정하여 정반응하는 경우
3) 학습부진학생의 유창성 오류 특성
① 음운변동이 일어나는 단어에서 많은 오류
② 대치 오류가 많음
③ 의미가 통하지 않은 오류가 많음
4) 효과적인 읽기유창성 교수의 일반적 특성
① 동일한 글을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기 한다.
② 소리내어 반복 읽기를 실시할 때 먼저 글을 유창하게 읽는 사람이 시범을 보인다음, 학생에게 같은 글을 소리내어 읽도록 한다.
③ 체계적인 오류 교정 절차를 적용한다.
④ 학생이 동일한 글을 세 번 이상 소리내어 반복하여 읽도록 한다.
⑤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읽기 유창성 교수를 실시한다.
⑥ 학생이 글에 포함된 단어의 약 90%이상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라. 어휘

1) 정의
단일 단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맥 속의 단어 의미 추론 및 단어 사이의 연관성 이해 및 활용 능력을 포함
2) 어휘력의 분류
가) 양적 어휘지식 vs 질적 어휘지식
(1) 양적 어휘지식
어휘의 양으로 학습자가 몇 개의 어휘 의미(표면적 지식)를 알고 있는가에 관한 것
(2) 질적 어휘지식
학습자가 어휘의 의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어휘의 특성, 어휘의 조직, 어휘의 화용 등이 포함
나) 표현 어휘력 vs 이해 어휘력

표현어휘력	이해 어휘력
말하기, 쓰기에 해당	듣기, 읽기에 해당
예 ( ) 속에 들어갈 말을 써 보세요. 돈 쓰기를 좋아하고 (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 ) 써 버려서 겨우 양복 한 벌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다음의 글을 읽고 문제에 알맞은 낱말을 써 보세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거나 도로에서 지켜야 할 교통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도로는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 됩니다. →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3) 학습부진학생의 어휘 특성

가) 양적 어휘 측면

- 일반학생의 어휘 수보다 부족
- 어휘력이 읽기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10세보다 12세에서 더 크게 나타남

나) 질적 어휘 측면

- 학습부진학생은 어휘의 표면적 의미를 이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반면, 일반학생은 포괄적으로 이해한다.

4) 어휘 지도의 원리

가) 반복의 원리 : 한번 습득학 어휘는 반복해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나) 맥락의 원리 : 구체적 예문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도록 해야한다.

다) 연상의 원리 : 공통 의미를 지닌 요소들을 통한 낱말지도를 해야한다.

라) 구체화의 원리 :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낱말에서 시작하여 추상적 낱말로 확대해야 한다.

마. 읽기이해

1) 정의

자신의 선행지식과 글에서 제시되는 정보를 연결하여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

2) 글의 유형에 따른 차이

	이야기글	설명글
목적	즐거움	정보제공
도식	친숙한 내용 도식	친숙하지 않은 내용 도식
구조	일관성 있는 텍스트 구조	다양한 텍스트 구조
초점	주인공의 동기, 의도, 목적	기능적인 정보와 이론적인 생각
관점	서로 다른 캐릭터의 시점을 이해하기 위해 종종 다양한 접근을 요구함	텍스트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유지함
추론	화용적인 추론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추론
연결어	그리고, 그런데, 그래서 등	왜냐하면, 전에, 후에, 그러므로 등
평가	비공식적평가	구조화된 공식 평가
정보처리과정	하향식(top-down)	상향식(bottom-up)

4. Cornell Method

① 사용방법

■ 왼쪽 좁은 부분(핵심내용) : 제목, 핵심단어, 주요개념 기록

■ 오른쪽 넓은 부분(수업내용) :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중요 개념 중심으로 기록

■ 아래쪽 부분(요약한 내용) : 위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 새로운 개념을 추가기록

■ 각 페이지의 맨 위에 교과목명, 날짜, 주제를 쓴다.

핵심내용	수업내용
요약한 내용	

[연습1] 필기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줄이기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지며, 겨울에는 이것과 반대가 된다.

⇨

물체가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갖게 되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고 한다. 물체가 높은 곳에 있을수록 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커지고, 낮은 곳에 있으면 작아진다.

⇨

물속에서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물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이 생겨 물체의 무게가 줄어드는데, 이 힘을 부력이라고 한다. 부력이 물에 잠긴 물체의 무게보다 작으면 물체는 가라앉고, 같거나 크면 물체는 물에 뜬다.

⇨

[연습2] 코넬 방법으로 필기하기

< 제 목 : 화 산 >

화산폭발은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오는 것을 말한다. 화산분출물이 뿜어져 나오는 화구 또는 분화구라고 한다. 마그마가 땅위로 나온 다음부터는 용암이라고 부르며 붉은 색이다.

화산은 화산이 아닌 산과 비교하였을 때 독특한 특징이 있다. 화산은 첫째, 꼭대기 부분에 오목한 분화구가 있다. 둘째, 삿갓을 엎어 놓은 모양이다. 셋째, 다른 산들과 이어져 있지 않다. 화산이 아닌 산의 특징은 첫째, 다른 산들과 이어져 있다. 둘째, 산골짜기와 산등성이 있다. 셋째, 산봉우리가 볼록하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피해가 무서울 정도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이로움도 있다. 첫째, 화산온천을 형성한다. 둘째, 백두산 천지, 한라산 백록담, 일본의 후지산처럼 유명한 관광지로 개발한다. 셋째, 마그마로 데워진 수증기를 이용해 지역을 발전시키며 그 외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 하지만 화산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도 만만치 않다. 첫째,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일어난다. 둘째, 산사태가 일어나며 땅과 숲이 못쓸 정도로 황폐해진다. 셋째, 화산재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폭풍우나 해일이 일어나며 지진도 일어난다.

5. 마치며

특수교육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 대부부분은 학습과 관련한 활동을 주로 진행한다. 특히 한글학습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한글을 배우는 아동들의 대부분은 읽기선수기술의 습득이 필요한 수준이다. 따라서 읽기 수준을 파악하여 수준에 맞는 읽기 교수법을 함께 진행한다면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읽기 교수법을 모든 아동들에게 적용하기 어렵지만 기초 읽기 교수법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한다면 프로그램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런앤런 학습연구소 학습치료 교육자료(성소연)
언어와 읽기장애(Hugh W.Catts, Alan G. Kamhi 저, 김정미 외 2명 역, 시그마프레스)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김동일 외3 명 저, 학지사)

팀스터디 16-03

기억의 이해

팀 명	기능향상지원 2팀
일 시	2016년 04월 07일
담당자	작업치료사 임주성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기억의 이해

1. 기억의 정의

우리는 '기억'이라하면 다양한 내용을 생각하게 된다. 과거의 사건, 감정, 사실과 행동, 미래의 예정 계획까지 떠올리게 된다. 기억이란 '새로운 경험이 보존되고, 그 경험이 의식이나 행위 속에서 재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재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고 세계를 지각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다. 전제되는 조건인 경험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식화되지 않는 것들도 합쳐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기억의 종류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다. 재생방법에 따른 분류로 의식으로의 재생과 행동으로의 재생이 있으며, 보통 이를 서술 기억과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이라 부른다. 또한 기억의 시간에 따라 장기기억(Long-term memory)과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으로 나누기도 하며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일화기억(Episodic memory), 미래 기억(Prospective memory) 등으로 나누는 분류도 있다.

2. 기억의 분류

기억의 종류에는 다양한 분류가 있다. 재생방법에 따른 분류로 의식으로의 재생과 행동으로의 재생이 있으며, 보통 이를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과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이라 부른다. 이 외에도 장기기억(Long-term memory)과 단기기억,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일화기억(Episodic memory), 미래 기억 등의 분류도 있다.

가.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은 의식으로 재생되는 기억으로써 언어를 매개로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의 사실과 사건의 의식적인 회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이라 인식하는 기억의 분류이다. 이러한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은 시간에 따라 단기기억(Short-term memory)과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은 새로운 정보를 잠시 의식상에 저장해두는 것을 의미하며, 도중에 간섭받지 않고 즉시 재생하는 기억을 말한다.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은 용량 및 유지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7±2개의 정보묶음(chunk)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묶음을 잘 조직화하는 것만으로도 용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은 정보를 제공받는 자극에 따라 청각언어성 단기기억과 시각성 단기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시각성 단기기억은 비언어성이라고도 하며, 동시처리를 통한 약 7개의 시계열량을 지니고 있다. 청각성 단기기억은 리허설(Rehersal)에 의해 유지가 되며 계열처리를 특징으로 하여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를 통한 반향회로로 보존한다. 또한 간섭효과를 통해 단기기억

(Short-term memory)과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의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이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의식 속에서 확실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에 대한 인지기능의 손실이 장기기억(Long-term memory)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다. 즉,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이 장기기억(Long-term memory)으로 가는 단계로써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Baddeley의 작업기억(Working memory)모델이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란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이 단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지작업에 사용되기 위해 저장되어 있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저장 시간이 짧아서 단기기억(Short-term memory)이 아닌, 다른 작업에 소재를 제공하기 위해 짧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런 작업기억(Working memory)을 단순히 주의나 지능이 아닌 의식의 확대와 연관되어 의식적 현재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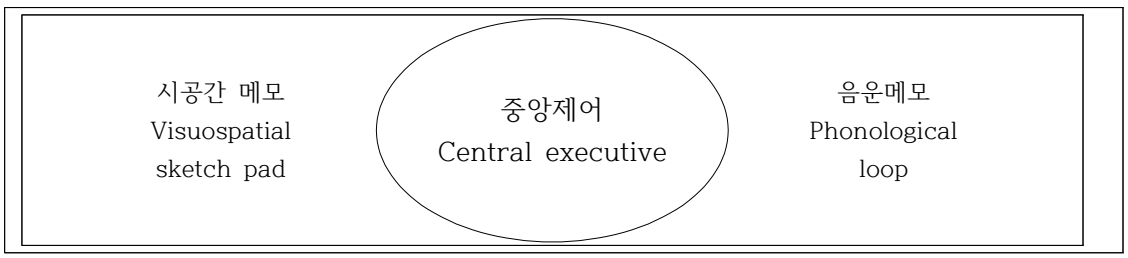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기억이라 함은 reset되는 일이 없이 오랫동안 남게 된다. 이를 장기기억(Long-term memory)이라 하며, 크게 일화기억(Episodic memory)과 의미기억(Semantic memory)으로 나눌 수 있다.
일화기억(Episodic memory)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의 사건 기억을 의미하며 생활이라는 큰 흐름의 기억으로 시간, 장소, 감정정보를 동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단기기억(Short-term memory)보다는 길게, 하지만 곧 잊어버리는 기억을 최근기억(Recent memory)라고 하며, 오랫동안 유지되는 기억을 원격기억(Remote memory)라 하여 분류한다. 둘 사이에 뚜렷한 시간적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저장된 시간의 차이가 내발적인 상기와 재입력의 반복을 통해 안정화에 영향을 준다. 일화기억(Episodic memory)은 내용에 따라서 구별할 수도 있는데 직접 경험한 자전적 기억과 간접적인 사회적 일화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자전적 기억은 전체 정보를 포함한 감각정보가 동원되어 생활로 기억되나, 사회적 일화기억은 신피질의 원격정보 수용기구(청각/시각/언어계)가 주로 동원되어 사건으로 기억하게 된다.
생활기억에는 예정기억(Prospective memory, 전망기억)이라 하여 앞으로 일어날 행동에 관계된 기억도 있다. 발화의 계기에 따라 시간 의존성 예정기억(Time based

prospective memory)와 사건 의존성 예정기억(Event based prospective memory)로 나눌 수 있다. 이와는 반대의 회상기억(Retrospective memory)도 존재한다.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은 지적기억이라 하여 지식과 관련이 있다. 대상의 언어적 인식과 관련하여 상징과 기호, 개념 등에 관한 기억으로 감각적 특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은 언어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공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경험 속에서 반복되고 겹쳐진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심적 표상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가 의식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에 대한 설명과 분류였다면, 의식화되기 어려운 기억을 잠재기억(Implicit memory)이라 한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의식하지 않은 채 처리하고 있다. 의식수준으로 올라오는 정보는 개인에게 중요한 부분만이 올라오게 된다. 의식적으로 상기할 수 없는 잠재기억(Implicit memory)이라도 저장되어 있다면 단서에 의해 인출되기 쉽다. 이때 작용하는 단서를 점화(Priming)이라 한다. 특정단서를 통해 특정기억을 불러내는 것으로 단서가 기억과 같은 것인지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점화와 간접점화로 나누게 된다.

나.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과는 달리 말로는 재생할 수 없으나 행동으로 재생할 수 있는 기억을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이라 한다.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감각과 운동이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획득하게 된다. 특정 행동이나 감정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함으로써 성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기억상실증 환자에게도 보존되고 있다. 인지적인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입력과 출력의 최적, 최단의 루트를 형성하며 방법의 지식(Knowing how)으로써의 기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기억은 4가지로 분류되며 신체적·인지적 기술인 습관/기술, 과거경험에 따른 반응의 민감도 증가인 예비화, 고전적 조건화, 반복노출에 대한 반응의 세기가 변화하는 비연합적 기억(Non-associative learning)으로 나눌 수 있다.

3. 기억의 과정

기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보존하며, 재생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 등록(Registration)

부호화(Encoding)라고도 하며 정상적인 입력과, 정상적인 정보처리기능(언어/감각), 정상적인 주의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 세가지 중 하나에 어려움이 있다면 등록이 불완전해진다. 주의는 의식을 일정한 과제에 집중시키고 효율화하는 기능으로 시간성과 공간성으로 나눌 수 있다. 다시 공간성은 시각성과 청각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각성의 제한이 발생하면 무시(Neglect)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등록단계는 기억을 위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단계로 문제가 생기면 기억의 저장과 재생이 불가능하거나 왜곡되게 된다.

나. 저장(Store, Retention, 파지)

등록된 정보는 신경계에 보관되며, 이후의 재생을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다. 경험이 의식적인 현상으로 입력되고 비의식적인 형식으로 보존되며 필요에 따라 의식적인 형태로 보존된다. 이러한 저장형태가 CNS의 신경연결의 변화로 저장이 되는지, 혹은 별개의 심리과정으로 저장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억은 저장이라는 정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현상은 아니다.

다. 재생(Recall, Retrieval, Decoding)

재생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발적 재생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조건과는 상관없이 의식이 내적인 심리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단서 재생은 의도적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단서를 통해 떠오르는 것을 말한다. 점화는 이러한 단서 재생의 일종이다. 의도적 재생은 의도적으로 특정사건/현상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재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기능이다. 자극이 과거의 심리표상과 자동적으로 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인이 있기에 생활이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재생의 분류는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영향을 주며 나타나게 된다.

4. 기억의 해부학적 구조와 네트워크

기억상실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과 관찰에서 측두엽 내측에 위치한 해마와 해마방회, 뇌궁, 유두체, 시상의 배측내핵, 시상전핵, 시상방내측 전방부, 편도체, 전뇌기저부, 뇌량팽대부 후방영역 등이 뇌에서 신경해부학적으로 기억과 연관이 있는 구조라고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상의 위치에서 신경연결에 따른 기억의 등록-보존-재인이 이루어지는데 Papez 회로가 가장 유력한 연결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해마체-뇌궁-유두체-시상전핵-대상회-대상속-해마방회-해마체로 이어지는 폐쇄회로로 처음 연구된 정동계보다 기억계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저-외측회로로 편도체-시상배측내핵-전두엽 안와피질 후방영역-측두엽 전방-편도체의 네트워크 구조가 있다. 이런 편도체 회로의 손상이 해마손상보다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상호간의 연결을 복잡하게 이루고 있다. 기억은 광범위한 구조를 지닌 네트워크에 저장되며 이러한 네트워크의 키포인트나 연락로의 손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억의 장애를 나타내게 된다.

5.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의 장애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서술기억(Declarative memory)(Declarative memory)의 심상으로써의 의식화가 아닌 운동적, 행위적인 능력의 획득-저장-재생과 관련이 있으며, 단순한 1회성 습득이 아니라 반복에 의해 운동패턴이 숙련화 되어가는

것을 말한다. 기억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손상되지 않으며, 이미 획득한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의 재생에 손상을 보이는 것은 개별 기능의 재현장애로 나타나며 관념실행증(Ideational apraxia)의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주로 뇌간과 소뇌에서 다루고 있으며 기억회로상의 기저핵의 선조체와 연관이 있다.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 소뇌에서 신경연접의 정교화가 이루어지며 불필요한 연접은 사라지는 모습으로 절차기억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6. 정리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심리적 표상과 같은 의미의 심상으로 지각 심상과 추상심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심상의 단위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름이고, 이러한 이름과 심상이 결합되어 개념을 형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조작성을 획득하게 된다. 우리는 심상을 토대로 경험하고 서술하고 기억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감각적 심상은 뇌의 각 연합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회로들과의 기능적 결합으로 이야기를 지니게 된다. 심상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기억은 신경의 네트워크상의 흥분패턴으로 변화되고 보존된다. 지속적인 보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마, 해마방회, 대뇌연합영역의 기억회로가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끊임없이 반복됨으로 인해 연접이 증가하면 해마와 다른 영역과의 결합을 더욱 강하게 한다. 이를 다중기억흔적설이라 한다. 이 가설에서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형성된 기억흔적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기억흔적은 피질간 네트워크에서 성립이 되며 이러한 기억흔적을 의식수준으로 올리거나 소실되지 않게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억은 시간이라 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신경활동의 총체이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작업기억(Working memory)으로써 상기된 현재에서 현재는 현재와 기억의 상호작용으로만 성립이 된다.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도 처음에는 일화기억(Episodic memory)으로 입력이 된다. 하지만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이 반복의 결과로 표상화되는 반면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은 표상화되지 않는다. 일화기억(Episodic memory), 절차기억(Procedural memory), 의미기억(Semantic memory)은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

7. 참고문헌

기억의 신경심리학. 山鳥 重.

시각, 지각, 인지. Barbara Zoltan.

팀스터디 16-04

Bobath Introductory course for cerebral palsy

팀 명	기능향상지원 2팀
일 시	2016년 06월 10일
담당자	물리치료사 김진봉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Bobath Introductory Course for C.P

1. Bobath concept

보바스 치료법은 1940년대 유태인 계열 독일 출신 물리치료사와 의사인 보바스 부부가 창안하였다. 초기에는 운동조절 모델에 기초한 그들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치료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60년 동안 많은 변천 과정을 거쳐 현재 뇌성마비 환아를 위한 기본적인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영역은 뇌졸중 등의 신경학적 손상을 입은 성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뇌성마비 및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환자에서 발생한 신경학적 손상은 뇌의 정상적인 발달과 성숙, 기능을 방해하여 모든 발달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하고 근육을 비정상적으로 긴장시키며, 이를 통해 자세와 움직임도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보바스 치료는 이러한 환자에게 정상적인 근긴장과 자세, 움직임을 반복하도록 유도하여, 자세나 움직임을 바로잡아 주고 정상 운동 형태를 촉진시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준다.

보바스 치료가 창안된 이후 과거 중요하게 여겨지던 비정상 반사를 억제하는 치료는 현재 그 중요성이 많이 감소되었다. 대신 정상적인 근긴장과 자세를 반복적으로 유도하고 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

- 뇌의 신경경로가 외부의 자극, 경험, 학습에 의해 구조 기능적으로 변화하고 재조직화 되는 현상
- 인간의 두뇌는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
- 뇌손상과 관련된 이후 진행되는 자생적인 뇌신경 재조직화와 아울러, 특정한 운동피질영역의 기능은 개별적인 운동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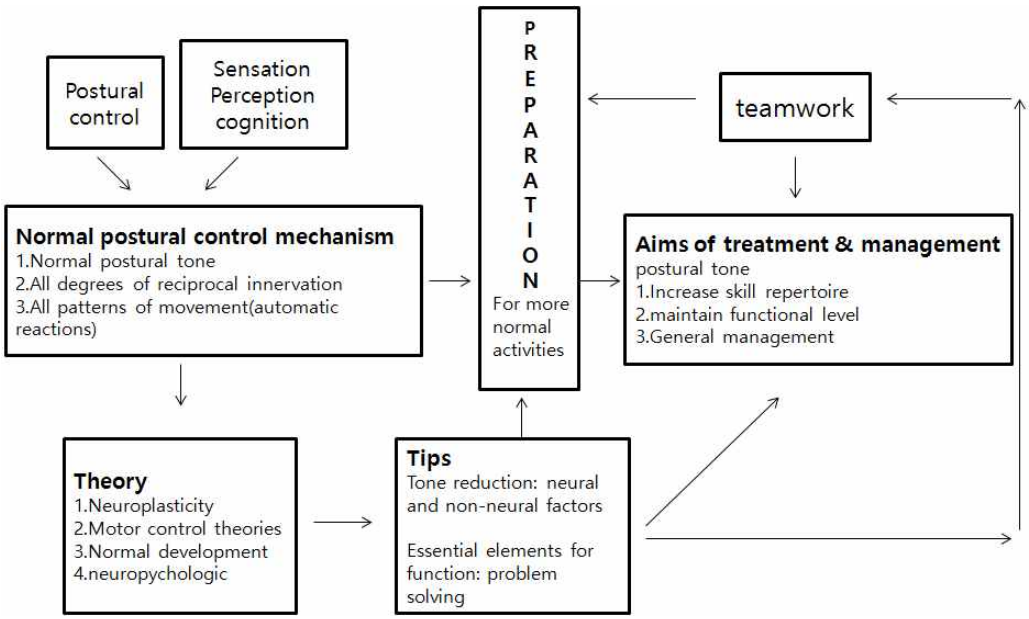

2. Normal development

(1) 신생아(neonate, 생후 1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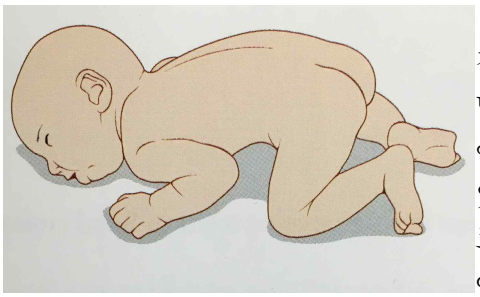

신생아는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머리는 비대칭적 자세로 골반은 .굴곡상태로 되어있다. 바닥에 닿는 면은 뺨에서부터 배꼽까지 닿아 있고 상지에 있어서 양 팔은 컵의 손잡이 모양으로 굽어져 있고 주관절은 굴곡 되어 있고 손목은 척골 측으로 외전, 굴곡 되어 있고 손은 주먹을 쥐고 있다. 아직 지탱 면은 없고 체중부하면만 가진다. 아기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버둥거리는 원시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인지발달 면에서 이 시기는 감각운동의 반사기로서 소리와 촉각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물건에 따라 눈을 움직이며, 주변 환경을 탐색하게 된다. 외부자극에 대해 구체적인 반응을 하지는 못하지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및 미각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감정적인 면에서 유아의 요구가 만족되면 기본적인 신뢰감이 발달하게 된다.

(2) 생후 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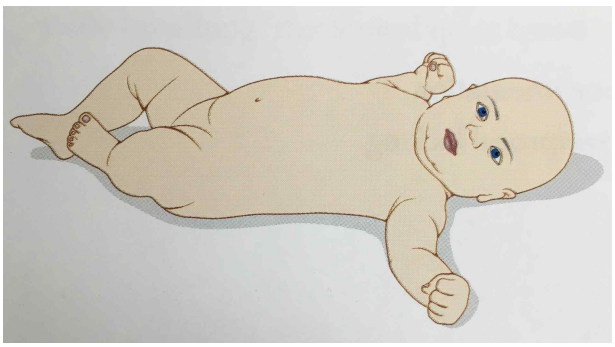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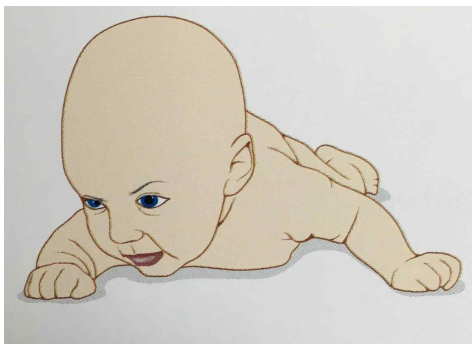

손과 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손과 손의 협응 운동, 신체도식(body scheme)의 첫 단계로 손가락을 빠는 움직임도 확실하게 나타난다. 엎드린 상태에서 생리적인 굴곡이 감소하고 중력에 대한 신전력(extension force)이 증가된다. 생리적인 굴곡력(flexion force)의 감소로 머리조절(head control)이 되지 않지만 45° 정도 머리를 들고 10초 정도는 지지할 수 있다. 아동의 발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발달하게 된다. 엎드려서 팔로 몸을 지탱하고 허리를 가누기 시작하며, 앉은 자세를 완성하고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달과정의 시작이 목을 가누는 것이다. 목을 가누면서 즉, 머리를 자유롭게 조절을 하면서 아동의 시야가 넓어지고, 어머니 품에 안길 때도 바로 선 자세가 되며, 엎드려서 자기 스스로 목을 가눔으로써 주위를 살필 수 있게 된다.

이 시기에는 물건의 형태와 색을 분별하기 시작한다. 물체나 사람이 움직이면 눈으로 쫓아간다. 낯익은 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돌리고,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려고 한다. 소리를 듣고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아기는 소리와 물체

의 관계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는 우는 소리 이외에 아기소리 옹알이 비슷한 소리를 낸다. 생후 1기 중반(6주)까지는 아직 지탱면은 없고 체중부하면만 가지게 된다.

(3) 생후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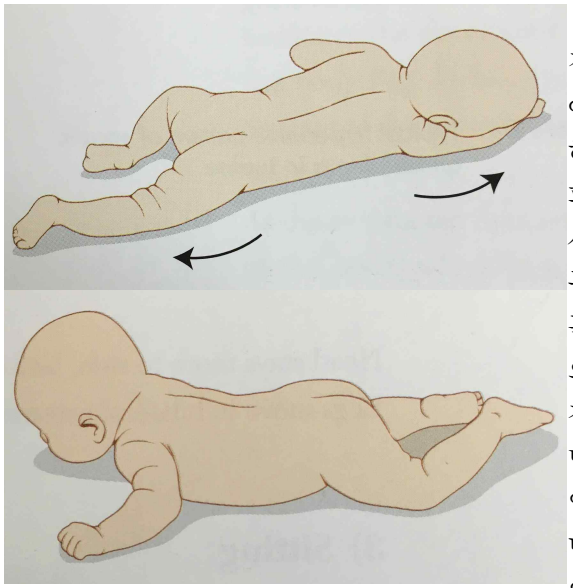

고관절 굴곡력(hip flexion force)의 계속적인 발달로 골반(pelvis)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체간의 상부나 손의 운동이 가능하게 된다. 서서히 신체를 탐색하며 손을 펴면서 잡으려 한다. 고개를 가누게 되면서 두 팔을 어깨 위로 높이 올리는 만세 동작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작용이 발달하게 되면서 손과 발의 근육 활동으로 물체를 쥐고 흔드는 동작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목의 근육도 발달하면서 몸통을 평행하게 들면 머리를 일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고, 소리 나는 장난감을 보면 머리를 180° 정도 회전할 수 있다. 지탱면은 점점 다리 쪽으로 옮겨져서 머리는 지탱면 밖에서 유지되며 머리와 목 그리고 다리는 대칭적으로 이완된 상태로 펴지게 된다. 목이 신장되면서 머리는 자유로워지게 된다. 무게점은 골반대 까지 내려가며 다리는 느슨한 자연스러운 상태(고관절 신전, 외전, 외회전)가 된다. 대칭적인 양 팔꿈치 지탱의 완성은 대체적으로 생후 3개월이 되면 완전한 모양을 갖추게 된다.

(4) 생후 4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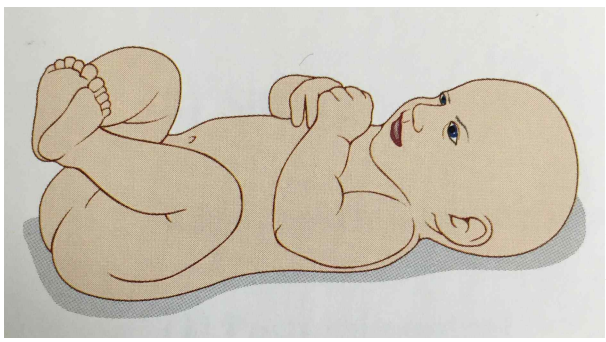

중추신경계의 성숙이 진행되면서 좀 더 균형 있는 굴근 및 신근 긴장으로 운동조절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원시반사들이 통합되면서 몇몇 정위반응(righting reaction)이 나타난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가운데로 유지할 수 있고, 누운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면 유아의 턱이 안으로 당겨지며 머리는 가운데에 있게 되고 약간의 복근 활동과 상하지의 굴곡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엎드린 자세에서 누운 자세로 구르기(rolling)이 가능해진다. 무게 중심이 low thoracic으로 옮겨지면서 완전한 양 팔꿈치 지탱으로 바닥을 지지

하여 어깨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며 배가 눌리면서 흉식 호흡이 발달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좌/우의 체중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양손을 어깨 높이로 올리는 만세 자세를 완전하게 성공하는 등 좌우대칭 자세를 수행할 수 있다. 손을 펴기도 하고, 손장난을 하려고 가운데로 가져오기도 하며, 미숙한 손바닥 쥐기가 보인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일관성 있게 고개를 돌리며,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물건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거나 동시에 두 가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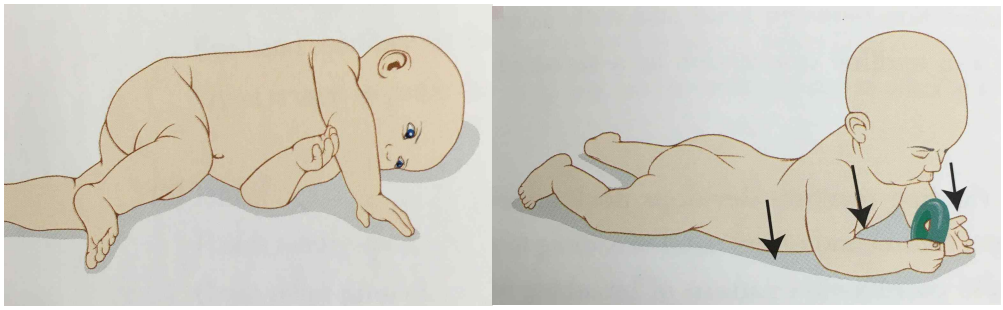

사회성 면에서 발성, 웃음, 비명, 불기, 혀를 떨기, 그리고 몸짓으로 좋고 싫음을 표현하게 된다. 기본적인 신뢰감이 발달하게 된다.

(5) 생후 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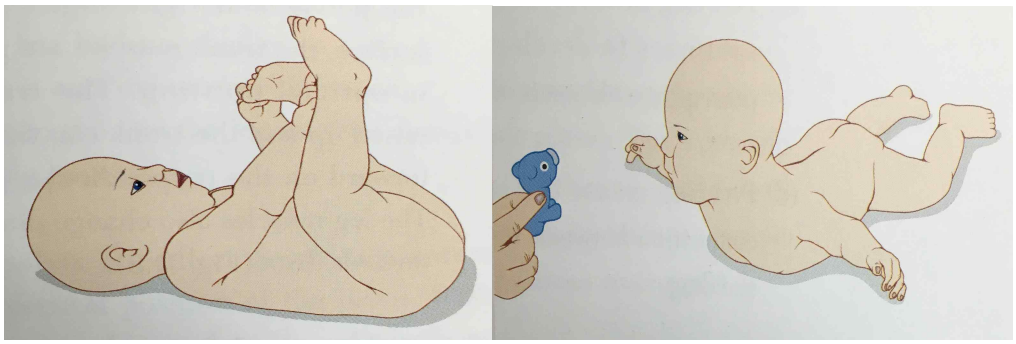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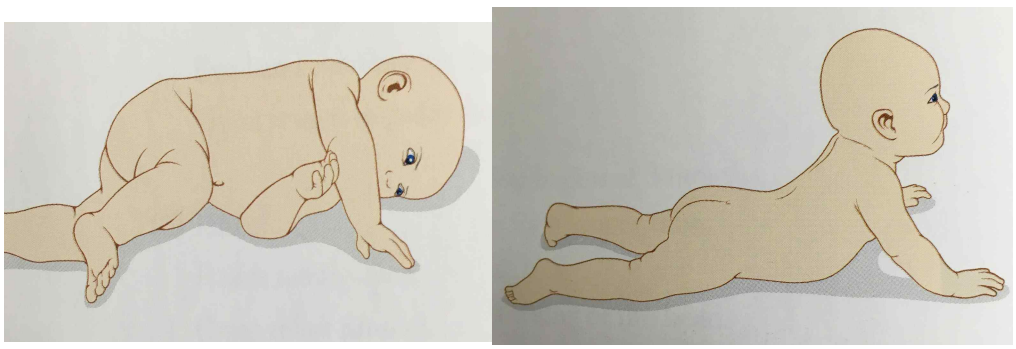

머리와 체간의 조절력이 더 증가되며 앉은 자세에서 당겼을 때 체간과 함께 머리를 조절할 수 있다. 다리의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손으로 발을 갖고 놀기 시작한다. 잡아주면서 세우면 깡충깡충 뛰거나 발을 힘껏 뻗쳐 서는 시늉을 하거나 몇 걸음 정도 갈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자세에서도 하지(lower extremity)의 분리운동이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혼자 힘으로 몸을 뒤집고, 엎드린 자세에서 바로 누운 자세로

구르기도 가능하다. 뒤집은 자세에서 머리를 곧게 들고 가슴까지 들며, 앞을 응시한다. 또한 한 손으로 상체를 받치고 다른 손을 앞으로 뻗치는 동작도 보인다. 어떤 동작이나 붙잡으려고 하는 관념. 즉 운동적 상상력과 창의력은 지능발달 에 있어 중요하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side lying)는 지지면이 좁아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발목의 발등 굽힘이 일어난다.

(6) 생후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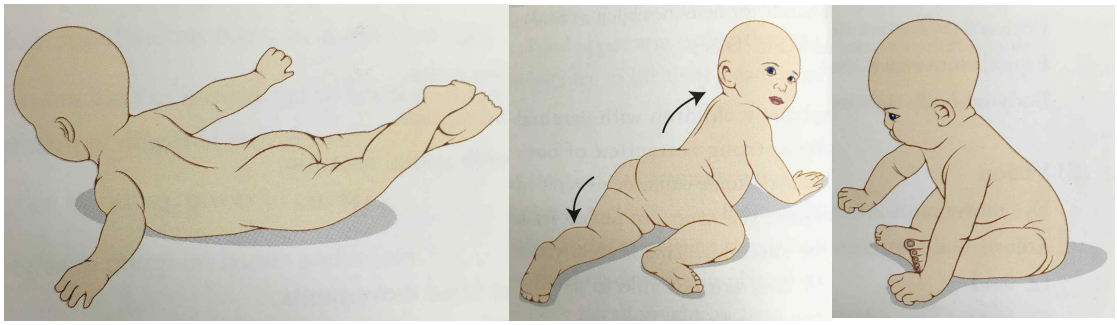

중력에 대해서 머리를 잘 조절한다. 환경에 대해 반응하며 체간의 큰 움직임이 나타난다. 엎드린 자세에서 골반은 지지면에 반해 굴곡되어 있고, 양 팔을 펴면서 몸을 유지할 수 있다. 뒤집기는 쉽게 할 수 있으며, 배로 길 수 있게 된다. 발바닥을 딛고 몸을 지지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것을 정확하게 잡고,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 쥘 수도 있다.

시력과 함께 청력도 발달하여 소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 감정표현도 3~4개월보다 풍부해지며, 많은 사람을 접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낯가림을 할 수 있다. 기댈만한 곳에 앉도록 하거나 옆에서 받쳐주거나 등을 잡아주면 불안정하지만 혼자 앉을 수 있다. 혼자 힘으로 그럭저럭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한손은 바닥을 짚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한손으로 장난감을 잡고 흔들거나 다른 놀이를 하면서 동작의 범위를 넓혀가려고 한다.

(7) 생후 7개월

비대칭성 및 대칭성 긴장성 경반사(asymmetric and symmetric tonic neck reflexes)와 같은 원시적인 유아 반사들이 통합되고 운동이 좀 더 자유로워지며, 높은 수준의 과도기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엎드린 자세와 바로 누운 자세로부터의 구르기, 배밀이, 그리고 손과 무릎을 이용하여 엎드린 자세에서 네발기기 자세로 움직인다. 팔의 근육이 강해지므로 상체를 일으킨 채 소리 나는 방향으로 돌아보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거나 물체를 잡으려고 몸을 약간 움직이거나 한다. 앉기를 유지할 수 있고, 네발기기자세에서 앉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 다리 근육도 점점 발달해서 이전에는 아동을 세우면 대체로 무릎을 구부리지만 이 무렵부터는 무릎을 쭉 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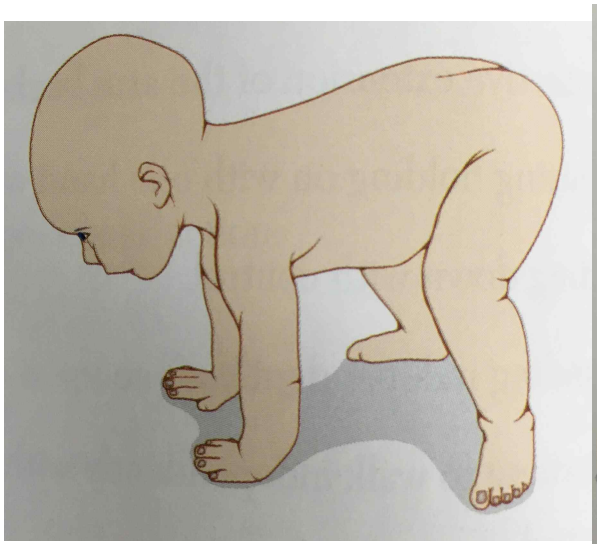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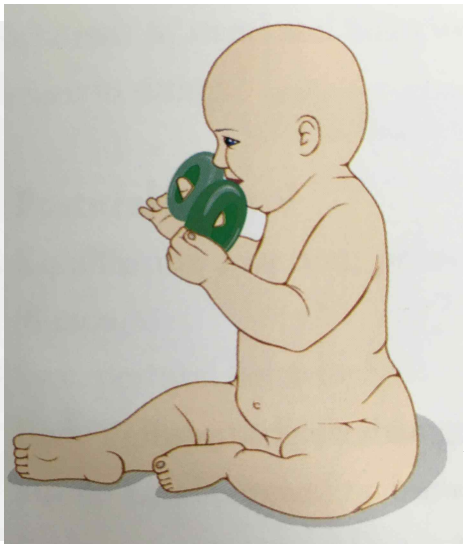
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수 있고, 무언가를 잡고 다리를 외전하면서 옆으로 이동하기가 가능해진다. 앉은 자세에서 두 손을 바닥에서 뗄 수 있게 되고 앉은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체간 상부의 능동적 회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손 뻗기가 가능하다. 정확히 목표한 곳에 손을 뻗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들을 이용해 물체 조각을 쥔다.
또한 작은 물체도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침은 흘리지만 구강운동이 숙련되어 정확하고 힘 있게 입술을 오므려 수저로 먹기가 가능해진다. 빠른 경우 6개월 정도에 아래 앞니가 나기 시작하고, 점차 위의 앞니가 나와 8개월 정도에 아래 위의 젖니가 난 아동을 볼 수 있다. 발성이 좋아져 단일 자음과 중복자음, 그리고 모음 결합 양상이 보인다.

(8) 생후 8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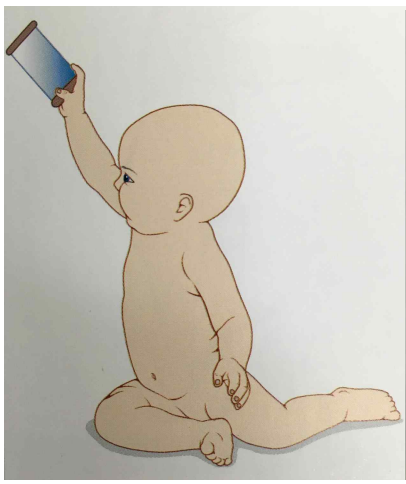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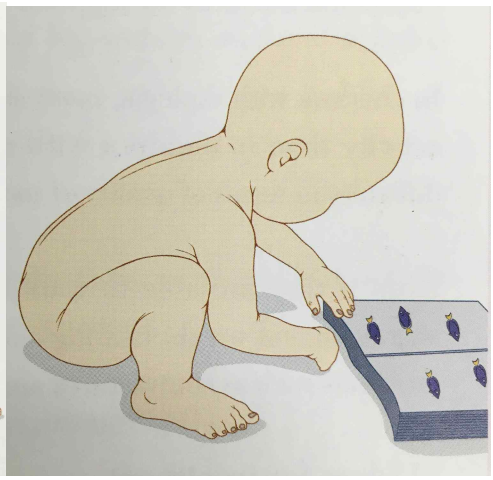
골반의 움직임이 매우 발달하여 골반과 체간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를 자유롭고 크게 움직일 수 있으며, 혼자 앉을 수도 있다. 앉아서 양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관심 있는 물체를 잡고, 싫으면 버리는 동작도 가능하다. 시상면에서의 움직임으로 바닥에 있는 장난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는 엉덩이를 어깨와 발 뒤

쪽에 잘 위치시킬 수 있고, 하지 특히 넙다리 네갈래근이 원심성 수축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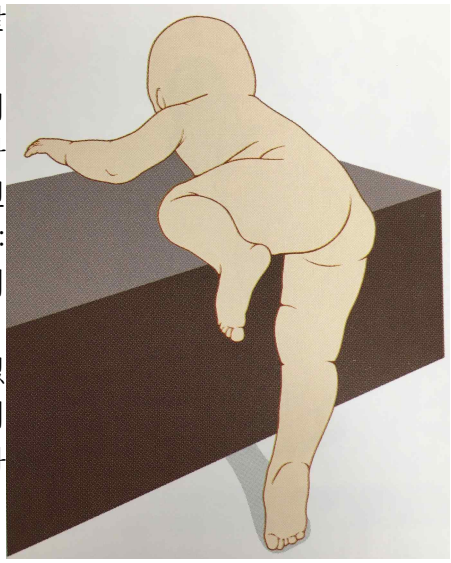

손과 발 근육의 발달과 함께 앉아 있다가 기기 시작하고, 잡고 서기 시작했다가 혼자 서며, 걸음마를 하는 등 운동 기능이 눈에 띄게 발달한다. 물건을 잡고 서 있을 때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 COG)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발가락을 이용하여 체중을 지지한다.

'마마', '다다', '바이 바이' 와 같은 음을 낼 수 있으며, 부모는 '바이 바이' 하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동작과 말을 함께 이해시킬 수 있다. 낯선 사람에 대해 불안해한다.

(9) 생후 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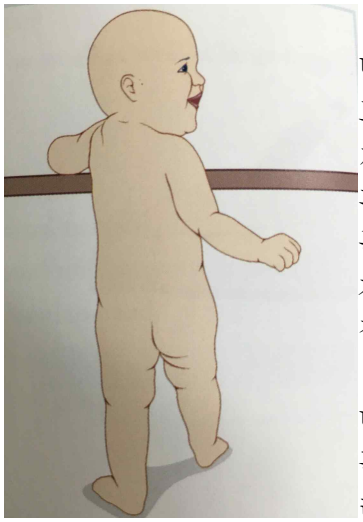

움직임에 있어서 많은 발달과 집중적인 탐색의 시기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절의 움직임이 조절되며, 체간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한 자세에서 다른 자세로 쉽게 이동하게 해준다. 고관절의 내회전(internal rotation)과 외회전(external rotation)이 가능하며 하지의 운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뭔가를 붙잡고 일어서서 얼마간 자세를 유지하며, 일어선 자세에서 손을 뻗어 물체를 붙잡거나 잡아당기는 동작이 가능하다.

이 때 사람의 얼굴을 구별하고 기억하면서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을 기억하게 된다. 또한 좋아하는 물건, 싫어하는 물건, 먹기 싫은 것 등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말소리도 흉내 낼 수도 있다.

(10) 생후 10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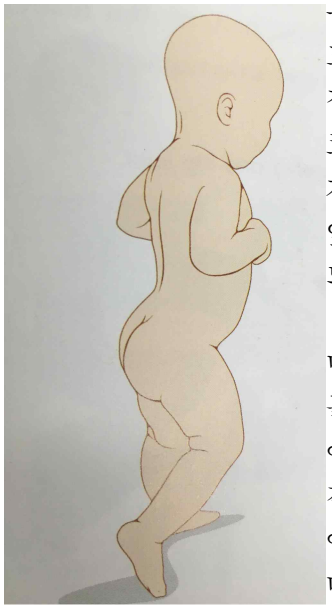

유아의 움직임과 그에 대한 시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교대 움직임으로 손과 무릎을 이용한 기기가 가능해진다. 잡지 않은 상태로 서 있다가 아동이 의지적으로 앉는 자세로 낮출 수 있다. 가구나 난간을 잡고 서거나, 잠깐 동안 혼자 서기 시작한다. 앉아있으면서 균형을 잃지 않고 25cm 앞까지 뻗을 수 있다. 엄지와 검지로 집는 동작이 보다 잘 되어 손가락으로 먹을 수 있다. 공놀이가 가능해진다.

사회성 면에서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집중하기 원하면 소리치고, 칭찬에 반응한다. 배변으로 기저귀가 젖으면 불수의적으로 표시(울음, 표정, 지시)를 한다. 언어적인 면에서 '엄마', '아빠' 비슷한 소리를 내고, '안 돼', '앉아' 와 같은 한두 개의 단어를 이해하거나 반응한다. 인지적인 면에서 안과 밖, 물건의 앞과 뒤, 위와 밑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물건의 손잡이를 잡고 목적을 가지고 흔드는 것과 같이 결과를 얻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11) 생후 11, 12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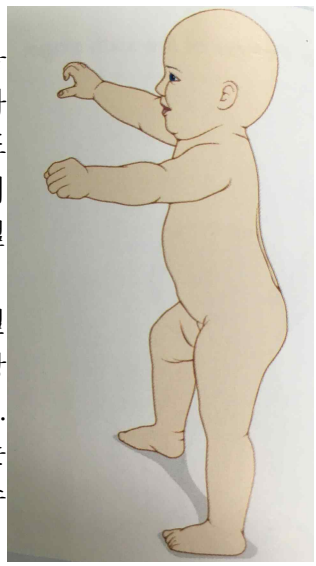

네발기기로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양팔을 지지하면서 걸음을 걷기도 한다. 또한 손과 발도 눈에 띄게 발달하여 의자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블록 쌓기도 능숙해진다.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떨어뜨릴 수 있으며, 검지로 가지고 싶어하는 대상을 추적하거나 가리키고, 찌를 수 있다. 다른 음절들을 흉내 내며, 적극적으로 낯가림이 시작된다.

기는 것이 매우 익숙하며 잡아주면 옆으로 발자국을 옮길 수 있고, 한 손만 지지해주어도 걸을 수 있다. 끈이 달린 장난감을 끌 수 있고, 장난감을 그릇에 집어넣는 행동을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컵으로 물을 마실 수 있다. 의미가 있는 단어가 생기며,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다.

3. 결론

이론적인 배경에서, 정상발달에 관한 정보는 아동의 움직임에 관여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motor learning에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로 표현된다. 따라서 만삭아동과 조산아의 차이점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유아가 태아발달 단계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아는 다양한 motor skills을 배우면서 첫 일년을 보낸다. 유아의 운동 발달은 머리에서 아래 방향으로, 중심에서 말초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반응이며, 모든 아이의 발달 순서는 같지만, 발달 시기는 아이마다 다를 수 있다. 몸통의 안정성이 먼저 발달하고 이후 팔과 다리의 다양한 기능이 발달한다. 손으로 무엇을 잡는 것보다 팔을 뻗기 위한 어깨 발달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걷기 위해서는 엉덩이 관절의 발달이 발과 발목보다 먼저 발달한다. 반사적이고 원시적인 동작에서 의식적인 동작으로 발달하게 되고, 신경계가 성숙함에 따라 미숙한 동작이 통합되어 수의적인 동작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한 영역의 발달 지표는 다른 영역의 발달 지표와 평행해서 발달하지는 않으며 발달 지연이 있는 경우, 어느 영역의 지연이 확실한지, 발달 지연이 진행성인지, 이전의 발달 지표는 어떠했는지 확인해야한다. 뇌성마비아의 치료를 위해 우리는 환경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이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여 스스로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balance reaction, equilibrium reaction, protective reaction 등을 이용하여 automatic background를 늘려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치료에 접근하도록 하여야겠다.

참고문헌

Normal development. 홍정선. 군자출판사. 2007.

팀스터디 16-05

프레젠테이션도구 <프레지>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6년 04월 22일
발표자	박성욱
장 소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프레젠테이션도구 <프레지>

1. 프레지(Prezi)란 무엇인가?

프레지는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며 전달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이다. 프레지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플래시까지 거의 모든 정보 형태를 지원한다. 프레지 설계방법은 한 장의 큰 도화지 위에 모든 생각을 쏟아 놓고 이를 정리하는 방법과 같다. 마치 어릴 적에 큰 전지에 가족 신문을 만들 때처럼 원하는 자료를 손 쉬운 방법으로 배열 할 수 있다.

2. 프레지가 파워포인트와 다른 점

➔ **제작 과정**

파워포인트는 목차 순서에 따라 한 가지 주제를 하나의 슬라이드에 담아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반면 프레지는 모든 아이디어를 큰 캔버스에 쏟아 붓고 각 아이디어들끼리 모으고 자르고 붙이는 작업을 통해 비논리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파워포인트는 제작 과정 속에서 아이디어가 하나의 주제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수렴적 사고를 하게 만든다. 최대한 사족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은 제거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에 초점을 맞추는 제작 방식이다. 하지만 Prezi는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처럼 아이디어에 살을 붙이는 발산적 사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파워포인트가 오프라인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반해 프레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많은 기술적 개선을 통해 프레지를 이용하면 캔버스에 특정 YouTube URL을 옮겨 적어놓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다.

➔ **표현 방법**

파워포인트는 잘 정리된 여러 장의 슬라이드를 한 장씩 넘겨가며 순차적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하지만 프레지는 한 장의 캔버스의 이곳 저곳을 보여주며 역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이런 방식은 고등학교 때 친구와 이별을 아쉬워하며 적은 롤링페이퍼를 살펴보는 것과 유사하다. 프레지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색깔로 적혀있는 글씨들 사이 사이의 깨알 같은 글씨까지 Zoom In 해서 보여 줄 수 있다.

➔ **사용처**

파워포인트는 전세계 모든 회사원들이 애용하는 발표 도구이다. 회계정리, 사업발표, 투자모집 등 거의 모든 형식의 발표에 사용되고 있다. 간혹 프레지의 현란한 화면 움직임은 청중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내용 전달에 실패를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학술적인 내용을 전달할 때는 파워포인트가 적절하다. 하지만 이처럼 딱딱하고 복잡한 주제들도 잘 만들면 Cool! 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이 프레지의 장점이다.

프레지의 최대 장점은 큰 캔버스를 물 흐르듯 이동하며 중간에 멈추어 현미경으로 살펴보거나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활기찬 역동성이다.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처음 대중에게 알리거나 시간적/공간적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자료로써는 프레지가 제격이다. 예를 들어, 관광지역을 안내하는 자료를 만들거나 수업 시간에 역사의 흐름에 따라 인물을 재조명하는 자료를 만들 때 프레지를 이용해서 시선을 이동시키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다.

3. 프레지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나?

➔건축학도와 프로그래머가 만든 최고의 프로그램

프레지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프레지 역시 미국 내 어느 차고에서 곱슬머리에 주근깨가 있는 컴퓨터광이 개발한 웹 서비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편견이다. 프레지는 동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헝가리에서 태어났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건축가이자 예술가인 애덤(Adam Somlai-Fischer)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엔지니어인 피터 할라시(Peter Halacsy)가 만나 프레지를 만들었다. 이 둘은 프레지의 공동 창업자로 애덤은 선임 디자이너 이사를 맡고, 피터는 기술총괄이사를 맡고 있다.

➔애덤과 피터 할라시

건축가인 애덤은 자신의 설계도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꼈다. 큰 청사진을 펼쳐놓고 돋보기를 가져다 이곳 저곳의 세부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었으나 기존의 발표 도구로는 이러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아마도 건축학도인 애덤은 CAD(computer-Aided Design)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3D로 물체를 돌려가며 이곳 저곳을 확대 및 축소하는 서비스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CAD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전문적이며 고가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애덤은 과거에 여러 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던 피터 할라시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 놓았고, 애덤과 피터 할라시는 CAD처럼 자유자재로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면들을 비출 수 있으면서 값도 매우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툴을 웹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7년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베타 테스트로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2년이 조금 넘도록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09년 4월 공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명 프레지(Prezi)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의 앞부분을 따온 것으로, 신선함과 재미를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아이디어를 넘어 회사가 되기까지

이후 애덤과 피터 할라시는 전문경영인 피터 알바이(Peter Arvai)를 프레지의 CEO로 선임한다. 피터 알바이는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맞은 치료법을 제공하는 웹 서비스 omvard.se의 창업자이다. 이 웹 서비스는 2009년 스웨덴에서 최고의 웹 사이트로 선정되었다. 또한 피터 알바이는 아이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만든 Mobispine의 부사장으로써 기업공개(IPO) 및 기업인수합병(M&A)을 담당했던 노련한 경영인이다.

사실, 피터 알바이는 Mobispine의 부사장으로 재임시절에 컴퓨터 언어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피터 할라시를 고용하고 싶어했다. 피터 할라시에게 찾아간 피터 알바이는 채용에 실패하고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오히려 피터 할라시는 자신들의 회사 프레지의 대표로 피터 알바이를 부르게 된 것이다.

프레지의 창업자 두 명과 대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새로운 기술과 예술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도 세 명 모두 헝가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피터 알바이가 Mobispine의 안정적인 부사장 자리를 마다하고 신생 벤처회사인 프레지로 간 이유는 단 하나, 어떤 사람도 굉장히 멋진 웹 서비스가 헝가리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터 알바이는 이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다.

Part 2. 프레지 사용법 가이드

1. 프레지 가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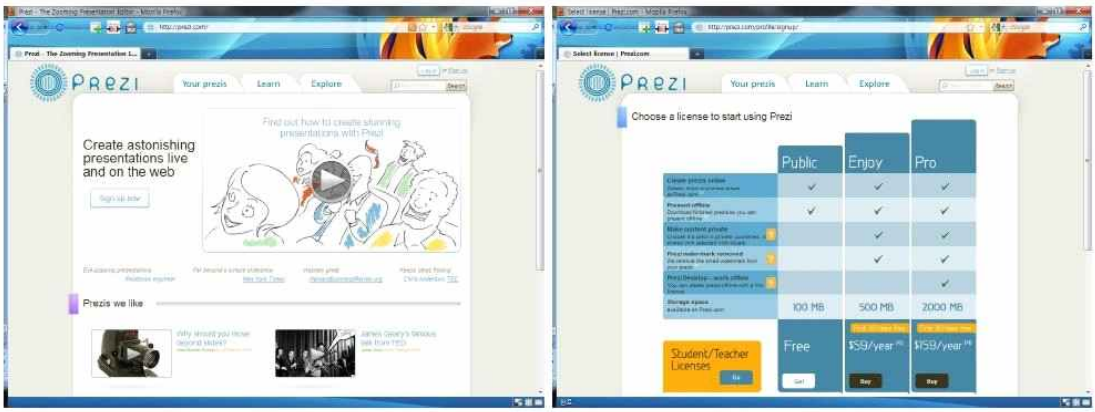

프레지는 크게 나누어 Public 계정 / Edu 계정 / 유료 계정으로 나눈다.

➔ **Public 계정(무료)**

장점

-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 접속 가능
- 작업한 프레지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100MB 무료 저장공간

단점

- 작업한 모든 프레지가 공개로 설정
- 작업한 모든 프레제 하단에 작은 프레지 워터마크 노출
- 온라인으로만 프레지 작업 가능

➔ **Edu 계정(무료)**

장점

-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 접속 가능

- 작업한 프레지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작업한 프레지의가 공개/비공개 설정 가능

- 프레지 워터마크 삭제 가능

- 500MB 무료 저장공간

단점

- 온라인으로만 프레지 작업 가능

➔ **Enjoy 계정 (유료, $59/year)**

장점

-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 접속 가능

- 작업한 프레지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작업한 프레지의가 공개/비공개 설정 가능

- 프레지 워터마크 삭제 가능

- 500MB 저장공간

단점

- 온라인으로만 프레지 작업 가능

실질적으로 Edu 계정(무료)과 Enjoy 계정(유료)은 같은 권한을 갖는다.

➔ **Pro 계정 (유료, $159/year)**

장점

-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컴퓨터로 접속 가능

- 작업한 프레지를 오프라인으로 다운로드 가능

- 작업한 프레지의가 공개/비공개 설정 가능

- 프레지 워터마크 삭제

- 프레지 데스크탑 설치 및 오프라인에서 프레지 작업 가능

- 2000MB 저장공간

2. 프레지 시작하기

➔ **New Prezi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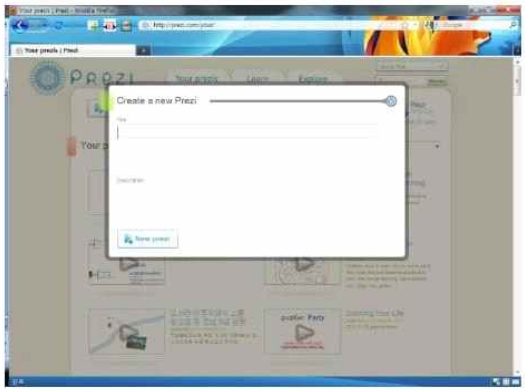

3. 프레지 홈페이지 살펴보기

➔ **Prezi.com 첫 화면**

➔ **Your Prezi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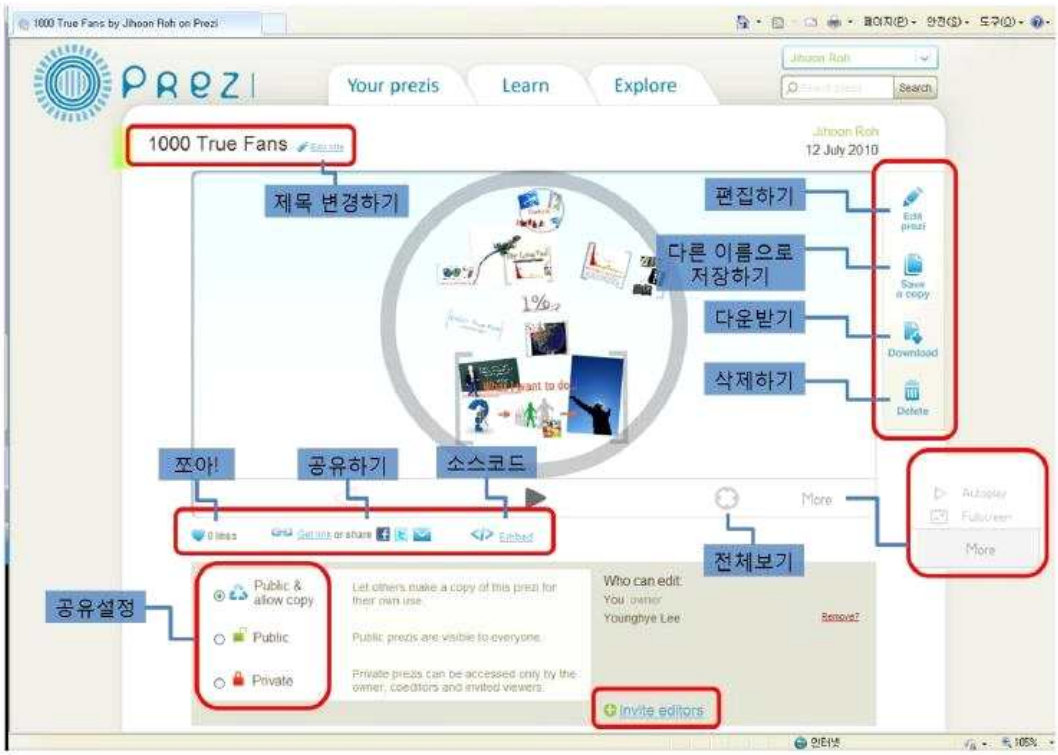

➔**공유설정**

Public & allow copy 프레지 작업을 웹에 공개하여 검색결과에 반영. 복사 가능.

Public 프레지 작업을 웹에 공개하여 검색결과에 반영

Private 프레지 작업을 개인 소장용으로 저장 (Get link 를 통해 보안 처리된 URL 주소로 공유가능)

➔ **다운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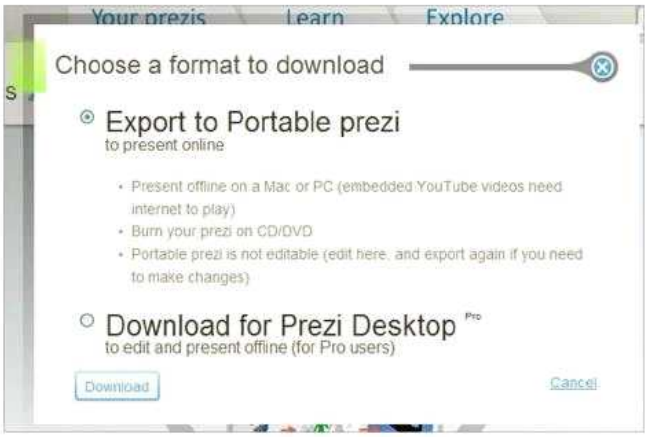

Export to Portable prezi

- Mac 혹은 PC 에서 오프라인 발표용 (프레지에 설치된 YouTube 영상의 경우 인터넷이 연결된 경우에만 플레이 가능)

- CD/DVD 작업 가능

- 휴대용 프레지 작업의 경우 편집 불가능 (편집이 필요할 경우, 웹에서 작업 후 다시 다운받기)

Download for Prezi Desktop Pro

- 오프라인에서 편집 및 발표 가능 (Pro 유료 계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

4. 프레지 작업 메뉴

➔ **버블 메뉴(Bubble Menu)**

Write 아무 곳이나 클릭 후 텍스트 작업

Insert (단축키 **I**)

- **Load File** (단축키 **L**)이미지 (JPG, PNG) 영상 (MP4, AVI, MOV

- **Shape** (단축키 **S**)각 테마에 따라 제공되는 화살표, 선, 하이라이트

Frame (단축키 **F**)

- 히든 프레임은 Show 보기 모드에서 프레임의 외곽선이 보이지 않음

- Shift 키를 누르고 프레임을 만들면 4:3 비율로 프레임 생성

Path (단축키 **P**)

- 각각의 개체를 클릭해서 Path 설정

- 각 Path 사이의 주간 점을 이용해서 Path 삽입 가능

- 지정된 Path를 클릭 후 다른 곳에 끌어다 놓으면 개별 Path 삭제 가능

Colors & Fonts

- 주제에 맞는 테마 설정

- 7 가지 알파벳 / 한국어 / 중국어 / 일본어

- **Theme Wizard** 프레지 테마를 자신이 직접 정하는 기능

➔ **Zoom In / Out 표시기 (오른편)**

홈 버튼으로 모든 프레지 작업 한 창으로 보기

+ - 사이의 흰 색 막대기로 Zooming Depth 확인

➔ **막대 메뉴 (위편)**

Save (인터넷에서 작업 시 자동 저장기능)

Undo/Redo 뒤로 돌아가기/ 앞으로 돌아가기

Meeting 협업 URL 링크를 이용해 최대 10명까지 동시에 프레지 작업 가능

Print 프레지 작업을 모두 마친 후 각 Path로 설정한 화면 하나하나를 한 장의 슬라이드로 변환하여 PDF 파일 생성

➔ **지브라 컨트롤러(Zebra Controller)**

첫번째 동심원 – 개체 이동

두번째 동심원 – 확대 축소

세번째 동심원 – 회전 (Shift 키를 누르고 돌리면 15도씩 전환)

+ 버튼 – 삭제/복사/그룹으로 묶기/앞으로 보내기/뒤로 보내기

5. 프레지 커뮤니티 포럼 (http://getsatisfaction.com/prezi)

Ask a question 프레지 사용에 관련된 질문하기

Share an idea 프레지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기능 공유하기

Report a problem 문제점 알리기

Give praise 칭찬하기

이곳에서 프레지 개선사항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며, 한글 테마의 경우도 <Share an idea> 을 거쳐 프레지에 반영되었다.

Part 3. 프레지 설계하기

1. 이야기 구성하기

다른 발표 도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프레지의 경우는 작업 전에 탄탄한 이야기 구성을 세워야 한다. 프레지는 메시지 전달에 최적화된 도구로 전달할 이야기의 전개 과정이 지루하다면 프레지로 표현해도 지루함 이상을 전달하기는 어렵다.

➔ **마인드맵 그리기**

- 프레지로 작업하는 것처럼 흰 종이 한 장과 연필을 꺼낸다.
- 전달하려는 메시지의 핵심 키워드를 종이의 정 가운데에 적는다. 가능하다면 글로 적기 보다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그리기가 좋다.
-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에 가지를 친다.
- 이야기에 붙은 각 가지들을 어떤 순서로 보여줄지 생각한다.

➔ **수미상관**

수미상관은 글의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내용의 구절을 반복해서 배치하는 표현 기법으로 시에서 많이 쓰인다. 핵심 메시지를 짧은 문장에 담아 전달하는 시구처럼 프레지도 첫 번째 이미지와 마지막 이미지에 연관성을 고려해서 제작하면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다.

2. 멀티미디어 활용하기

프레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글 보다는 이미지 혹은 영상으로 화면 처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이미지**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찾을 때 사용하면 유용한 웹사이트이다. 모두 저작권이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된 이미지를 제공한다.

http://www.publicdomainpictures.net/

http://www.photos8.com/

http://www.public-domain-photos.com/

http://commons.wikimedia.org/wiki/Main_Page

http://www.gettyimages.com/

➔ **백터매직 (http://vectormagic.com/)**

비트맵이미지를 벡터이미지로 바꿔주는 도구로 프레지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100 배 이상 증가한다. 비트맵이미지의 경우 프레지에서 확대를 할 경우 이미지가 깨지게 되지만 백터매직을 활용해서 백터이미지로 전환할 경우 확대를 해도 선명하게 나타는 장점이 있다. 백터매직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이야기를 큰 이미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영상**

프레지에서 영상을 삽입할 경우 영상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는 방법 보다는 YouTube 영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권한다. 1 분에 40 시간 분량의 영상이 업로드 되는 YouTube 에는 원하는 모든 영상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활용한다면 영상제작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업로드 하는 방식 대신 YouTube 링크로 영상을 삽입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레지 저장공간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다.

팀역량계발 16-06

뉴스포츠의 종목소개 및 실습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16년 07월 21일
발표자	박지현
장 소	특수체육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뉴스포츠 종목소개 및 실습

1.뉴스포츠란?

뉴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론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메이져스포츠(축구, 야구 등)가 아닌 모든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스포츠를 말한다. 한마디로, 뉴스포츠는 참가자 중심의 체험형 스포츠를 대표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뉴스포츠는 대체적으로 형태별, 유형별, 종목별로 분류된다.

① 비교적 최근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입형 뉴스포츠
② 기존의 스포츠를 부분적으로 개량한 개량형 뉴스포츠
③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고안한 개별형 뉴스포츠

가까운 일본에서는 1988년부터 문부과학성, 각 지방자치단체, 일본체육협회, (재)일본레크리에이션협회 등이 주축이 되어 국가 차원에서 뉴스포츠를 개발, 보급하여 매년 1천 여종의 뉴스포츠가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책 차원에서 스포츠•레크리에이션축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 국민들의 스포츠활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 스포츠진흥은 물론 국제교류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뉴스포츠 종목소개

종목	1.플로어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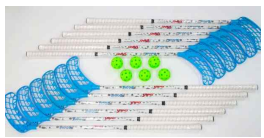
운영방법	남녀노소 누구나 하키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경기로 공도 부드러운 재질이며, 스틱, 골대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는 매력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종목	2.보체	
운영방법	보체는 표적구(흰 공)를 던져 착지한 곳을 목표로 한 팀당 공 4개를 굴려 표적구 가장 가까이 간 공에 점수를 주는 경기다. 굴리는 공은 상태팀과 구별하기 위해 빨간색, 녹색 등으로 만들어진다.	
종목	3.협동제기차기	
운영방법	8명이 한 조를 이루어 진행되는 단체 종목으로 조화로운 팀워크를 통해 협동심과 순발력,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동일시간에 제기를 많이 차는 팀이 우승이다.	
종목	4.표적 맞추기	

운영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표적을 맞추는 경기를 할 수 있으며 참가자의 집중력과 힘 조절능력을 향상시키면서 과녁판의 숫자를 이용하여 더하고 빼는 연산 능력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종목	5.사켓	
운영방법	축구와 같이 손을 제외한 발, 머리, 무릎 등을 이용하는 경기로 아웃라인이 없으며 골대를 놓고 반드시 1회만 볼터치를 하여 마지막 공을 골인시킨 사람이 득점하는 경기이다.	
종목	6.티볼	
운영방법	야구와 흡사한 뉴스포츠 경기로 투수가 필요없이 티위에 공을 올려놓고 치는 방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슬라이딩과 도루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종목	7.츄크볼	
운영방법	핸드볼과 비슷한 형태의 몸동작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 사방 1m넓이의 네트에 볼을 던져 튀어 오르게 하여 공이 상대방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는 스포츠이다.	
종목	8.낙하산	
운영방법	손잡이가 달린 대형 천을 이용하여 풍선만들기, 공 튀기기, 터널만들어 통과하기 등의 다양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으며 팔의 근력증진, 스킨십을 통한 심리사회적 발달 등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다.	
종목	9.후크볼	
운영방법	골프 스윙능력을 길러주는 종목으로 실내외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골프장 이미지의 타깃에 골프채로 펴서 10개의 공을 중심에 맞추어가는 경기이다.	
종목	10.후크볼(야구)	
운영방법	야구 피칭능력을 향상시키는 종목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경기이다. 찍찍이판 과녁에 공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세교정과 정확성을 길러준다.	
종목	11.패드민턴(핸들러)	
운영방법	탁구와 배드민턴의 특성을 접목시켜 개발된 스포츠로, 탁구 라켓과 흡사한 전용 라켓을 이용하여 네트를 사이에 두고 단식 혹은 복식으로 셔틀콕을 주고받아 넘기는 과정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종목	12,스포츠스태킹	
운영방법	스포츠스태킹은 12개의 스피드스텍스 컵을 다양한 방법으로 쌓고 내리면서 순발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스포츠 경기이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	

	고, 일정 모양을 빨리 쌓는 사람이 우승한다.	
종목	13.플라잉디스크(타깃)	
운영방법	원반 모양의 디스크를 던져 목표물(타깃)의 번호를 맞추는 경기로 정밀성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스포츠이다.	
종목	14.플라잉디스크(골프)	
운영방법	골인지점에 기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거리를 두고 손으로 디스크를 날려 목표지점에 넣는 형태의 종목이다.	
종목	15.플라잉디스크(피구)	
운영방법	플라잉디스크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변형시킨 종목으로 피구 형태로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을 접목한 것이다. 피구공 대신 디스크를 공과 같이 던지고 라인 안의 사람들이 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목	16.플라잉디스크(윳놀이)	
운영방법	한국의 전통놀이를 응용한 것으로 세대에 관계없이 놀이와 운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로 재구성하였다. 집중력과 정확성이 요구되며 디스크를 타깃에 맞추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종목	17.킨볼	
운영방법	협동과 존중, 참여를 중시하는 경기로 손이나 발로 공을 타격하여 3회 안에 다른 팀에게 넘기는 경기이다. 머리로 킨볼 옮기기, 발로만 옮기기, 릴레이로 반환점 돌아오기 등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종목	18.인디아카	
운영방법	'인디아카볼'이라고 하는 특수한 용구를 이용하고, 손으로 서로 치는 발리볼 타입의 스포츠이다. 4매의 큰 날개가 볼의 스피드를 완화해주기 때문에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스포츠이다.	
종목	19.볼링골프	
운영방법	각 팀에 주어진 색깔의 공을 서로 번갈아 굴려 숫자 보드판 원형홀컵에 넣는 게임으로 홀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결정한다. 노란색공은 표적구로 활용해서 보치아 경기를 할 수도 있다.	
종목	20.컬링	
운영방법	동계스포츠 방식의 스포츠를 실내에서 즐길 수 있도록 변형시킨 뉴스포츠로 2팀이 스톰(빨강, 파랑 각 4개)을 굴려 원 중앙에 가깝게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경기한다.	
종목	21.포고스틱	
운영방법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에서 상품화되었고, 한	

	국에서는 모양은 본딴 '스카이콩콩'으로 유명해졌다. 포고스틱은 '스카이콩콩'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닌 원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종목	22.롤브레이트	
운영방법	로프를 활용하여 서로 끌어주며 협동하는 놀이와 장애물을 통과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나무로 만들어져 튼튼하며 회전력이 높은 우레탄 바퀴로 만들어져 있다.	
종목	23.넷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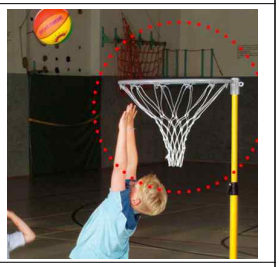
운영방법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넷볼은 농구와 유사한 종목으로 아동이나 여성도 할 수 있도록 변형된 종목이다. 공은 반드시 손으로만 주고 받아야 하며 드리블을 하지 않고, 몸싸움도 거의 없다.	
종목	24.라크로스	
운영방법	북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구기인 '버게터웨이'를 근대적으로 변형시킨 운동경기로 긴 스틱을 이용하여 서로 주고 받거나 상대편 골에 공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이다.	
종목	25.캐치컵	
운영방법	고깔 모양의 컵에 줄이 이어져 공과 연결된 형태로 공을 돌리거나 발로 차거나 컵을 이용해 야구 형태로 공을 칠 수도 있고 컵으로 받아내는 경기도 가능하다.	
종목	26.판뒤집기	
운영방법	두 팀이 각자의 색을 정한 뒤 무작위로 땅에 놓인 판을 뒤집으며 자기편의 색이 많아지도록 경쟁하는 경기이다. 순발력과 판단력, 협응력을 키울 수 있다.	
종목	27.폼게이트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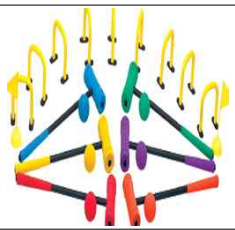
운영방법	게이트볼 장비를 폼재질로 변형시킨 것으로 휘두르거나 경기 중 맞아도 다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골프형 스포츠의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팀을 나눠 9개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종목	28.스프링볼	
운영방법	짐닉볼 형대로 된 앉아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종목으로 전신의 협응능력이 발달하고 간다하게 팀 대항 게임도 할 수 있다. 손잡이가 있고 3세 이상 62kg	

	이하 이용 가능하다.	
종목	29.플링고	
운영방법	2004년 독일 전 배구 국가대표 선수가 개발한 뉴스포츠로 최고의 비치 게임상도 수상했던 경력도 있다. 배구와 유사하여 기본 언더 자세와 공 위치 파악, 안정된 자세교정에 큰 도움이 된다.	
종목	30.스쿠프	
운영방법	네트를 사이에 두고 스쿠프를 이용하여 펀 맥스공을 던지고 받아 승부를 가르는 운동. 마주보고 주고 받기, 과녁판 맞추기, 벽에 던지고 받기 등 다양한 응용가능.	
종목	31.모노플라잉	
운영방법	양쪽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공이 튀어 오르는 도구로 혼자 튀기기, 둘이 튀기기, 여러 사람 전달하기 등 유아, 청소년, 노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할 수 있다.	
종목	32.볼로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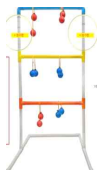
운영방법	기둥에 볼을 던져서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조절해서 던지는 게임으로 야외와 실내 어디든 가능하다. 간단한 게임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종목	33.파워스피드낙하산	
운영방법	스피드의 두 가지 요소인 걸음의 폭과 반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저항운동과 고속훈련을 할 수 있다. 허리벨트는 어느 방향이든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편리하고 안전하다.	
종목	34.팀워커	
운영방법	발을 끼울 수 있는 기다란 받침과 끈으로 이어진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이동하는 경기로 개인 또는 단체가 함께 연결되어 협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이다.	
종목	35.위플레이 게임시소	
운영방법	전신의 움직임을 통해 밸런스를 높여주는 운동기구로 플라스틱 재질로 40kg까지 이용가능하며, 아동 스스로가 볼을 움직이게 하여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동시에 저글링 같은 공놀이도 할 수 있다.	
종목	36.버니휠볼	
운영방법	개인 또는 2팀으로 나뉘어 공을 던져 휠 타겟을 맞추는 게임으로 한 팀은 타겟이 올라가게 하고 다른	

	한 팀은 내려가게 하여 먼저 성공한 팀이 승리하는 운동게임이다.	
종목	37.숫자카드세트	
운영방법	두 팀으로 나누어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거꾸로 가려진 숫자판을 순차적으로 뒤집이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먼저 완성하는 팀이 우승한다. 빨리 뛰는 민첩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종목	38.링토스(고리던지기)	
운영방법	링토스란 고리를 던진다는 뜻으로 영유라 체육 프로그램 또는 노인, 장애인 프로그램에 접목할 수 있다. 위험성이 없고 쉽게 게임형태로 활동할 수 있어 성취감을 통해 신체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종목	39.공받기세트(스윙루프)	
운영방법	볼을 던져 링 위에 볼을 올려놓는 동작을 기초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손의 조절능력과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종목	40.2인3각	
운영방법	협동심과 유연성,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커플형태의 단체활동 운동으로 다양한 동작으로 응용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활동량이 높아 운동 효과가 높다.	
종목	41.팽이치기	
운영방법	나무로 깍은 팽이를 얼음 위나 단단한 흙 위에서 돌리는 놀이로 오래 돌리기, 멀리차기, 빨리 돌아오기, 혹은 서로 부딪쳐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즐기기도 한다.	
종목	42.제기차기	
운영방법	개칙구는 한 발을 땅바닥에 고정시키고 다른 발 안쪽 옆면으로 차는 것이며, 쌍발제기는 두 발을 번갈아가며 차고 발등제기를 발등으로 차는 것을 말한다.	
종목	43.콩쥬	
운영방법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라는 의미의 '콩쥬'는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줄을 몸통 부분에 여러 번 돌려 감은 후, 콩쥬를 들어 올려 양쪽 어깨를 교차하며 들썩이면 붕붕 소리가 나며 돌아가게 된다.	
종목	44.림보	
운영방법	림보는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나무나 끝으로 가로선	

	을 만들어서, 몸을 뒤로 젖혀서 그 아래를 통과하는 종목이다. 가로선에 닿아도 줄이 떨어지지 않으면 성공으로 인정한다.	
종목	45.훌라후프(헬스후프)	
운영방법	간단한 기구 하나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에도 거의 충격을 주지 않아 부상 위험도 없다. 심지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종목	46.배드민턴	
운영방법	네트를 사이에 두고 단식 혹은 복식으로 진행되며 라켓을 이용해 배드민턴공을 상대편 네트 너머로 한 번에 넘기는 종목이다. 민첩성과 순발력을 키울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많은 운동력을 필요로 한다.	
종목	47.음악줄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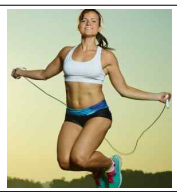
운영방법	신나는 음악에 맞춰 실력에 따라 다양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 운동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긴 줄넘기를 활용한 단체활동도 가능하다.	
종목	48.비석치기	
운영방법	실내, 외에서 모두 가능한 우리나라 대표 전통놀이 중 하나로 던지기, 세 발 뛰어차기, 발등차기, 배(가슴)치기, 어깨 또는 머리에 올려놓고 걸어가 쓰러뜨리기 등 다양한 놀이가 가능하다.	
종목	49.필라테스링	
운영방법	상, 하체의 근력강화와 자세교정에 도움이 되는 필라테스 도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패드가 덧대어져 있어 다양한 응용동작이 가능하다. 무릎조이기, 다이 일자로 펴기, 팔 다리 스트레칭에 효과적이다.	
종목	50.케틀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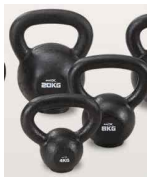
운영방법	케틀벨은 중량을 이용한 운동기구로 아령이나 덤벨과 같이 근육의 힘만으로 하는 운동과는 달리 전신의 탄력과 균형, 지구력, 근력 등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균형잡힌 몸매 유지에 효과적이다.	
종목	51.짐스틱	
운영방법	짐스틱은 스틱과 밴드가 결합된 운동기구로 강도를 조절하는 전신운동이 모두 가능하다. 다양한 부위(근육)에 운동을 하여 자극을 줄 수 있고 유연성과 근력 향상에도 효과가 높다.	

종목	52.스텝박스	
운영방법	계단모양의 지지대인 스텝박스를 통한 운동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기구이다. 다양한 동작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리듬에 맞춰 진행하며 유연성 강화와 균형감각에 도움이 된다.	
종목	53.플레이고고밸런스	
운영방법	내구성이 강한 반원형 도구를 구름다리, 시소, 터널, 원형균형대, S자균형대 등으로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운동놀이가 가능하다. 아동 및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	
종목	54.튜빙밴드(스포츠밴드)	
운영방법	쭉쭉 늘어나는 신기한 운동기구인 튜빙밴트는 근력운동 및 유연성 강화에 효과적이다. 작고 가벼워 어디에서나 활용이 가능하며 다른 운동기구와도 함께 이용 할 수 있다.	
종목	55.코퍼밴드, 점핑로프	
운영방법	여러 가지 기초운동을 단체활동으로 표현하여 흥미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이다. 부드러운 원단으로 쌓인 라텍스 튜브로 만들어져 신축성이 좋아 역동적인 동작으로 협응력을 키워준다.	
종목	56.유니바	
운영방법	유아체육 또는 장애인체육에서 사용하는 도구로 뛰어넘거나 통과하기, 균형잡기 등의 동작으로 응용하여 활동하며 다른 도구들과 같이 장애물 경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종목	57.멀티돔아치게이트	
운영방법	아치게이트 높이가 76.2cm로 축구연습, 터널통과하기, 미니골대, 장애물로 사용할 수 있다.	
종목	58.컬러콘 & 콘커버	
운영방법	콘커버는 그 위에 숫자가 적혀 있어 컬러콘에 씌어 지정번호 돌아오기, 번호 순서대로 돌아오기 등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동 할 수 있다.	
종목	59.휴먼 바스켓	
운영방법	휴먼바스켓을 허리에 매고 상대의 바스켓에 서로 많이 공을 넣는 게임 또는 일정거리에서 자기 팀 바스켓에 공을 많이 넣는 게임 등 다양하게 활동 할 수 있으며, 바스켓을 정면(배)으로 또는 후면(등)으로	

	바꿔가며 활동 할 수 있다.	
종목	60.풍가룬	
운영방법	좁은 공간이나 테이블에서 탁구나 배드민턴형 게임을 솜털공이나 탁구 폼볼을 이용하여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셔틀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솜털공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종목	61.태그플래그	
운영방법	팔이나 허리에 벨크로 밴드를 부착하고 2팀으로 나누어 각각 빨간색, 노란색 띠를 나누어 부착하여 서로 다른 색깔의 띠를 떼어내며 활동할 수 있는 게임.	
종목	62.스윙볼	
운영방법	발목에 고리를 걸고 점프를 하여 고리의 연결된 펀볼을 회전시켜 반대쪽으로 넘으며 활동할 수 있고 응용하여 상대방 펀볼 터치하는 게임을 할 수 있다.	
종목	63.점포 스택스	
운영방법	야외 수업 및 넓은 체육관에서 조를 이루어 스포츠스태킹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협동심 및 스포츠스태킹의 활동성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종목	64.원형 팝업 타겟	
운영방법	여러 가지 공을 굴리거나 던져서 점수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타켓형 스포츠(양궁, 컬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쉽게 접고 펼칠 수 있으며 바닥 이외에 벽에 부착 사용도 가능하다.	
종목	65.디스크타겟 골대	
운영방법	플라잉디스크나 여러 가지 공을 이용하여 타깃에 부여된 점수 및 주머니에 넣거나 맞추는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컬러풀한 색상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종목	66.타켓토스	
운영방법	저글링볼이나 슈팅볼 및 여러 가지 교구를 이용하여 정해진 타깃에 넣는 놀이로써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접어서 보관하기 용이하다.	
종목	67.낙하산 발리볼	
운영방법	신체 각 부위를 다양하게 사용하며 신체의 신경과 근육조정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은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낙하산을 이용하여 풍선, 빈백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배구형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종목	68.대형 윷놀이	

운영방법	우리나라 전통 놀이로써 4개의 대형 윷가락을 던져 도개걸윷모 5개의 나오는 만큼 전진하며 활동하는 놀이로 개인 및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활동 할 수 있다.	
종목	69.킥볼(발야구볼)	
운영방법	야구 경기를 발로 하는 게임으로서 야구경기규칙보다 단순한 규칙으로 신체활동을 할 수 있으며 볼의 재질이 부드러워 피구운동을 응용할 수 있다.	
종목	70.에이비 맥스 프로	
운영방법	트위스트 운동과 근력밴드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 스트레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운동용품으로 단기간 높은 운동량으로 몸매관리 효과에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	
종목	71.짐나스틱 리본	
운영방법	플라스틱에 회전고리가 고정되어 있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자신 및 타인의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다.	
종목	72.핸드민턴	
운영방법	활동량이 많은 게임으로 패들에 직접 손바닥을 고정하여 사용하며 핸들의 그립감이 우수하다. 유아를 포함 누구나 손바닥 야구, 운동회 게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게임을 할 수 있다.	
종목	73.사다리 래더	
운영방법	사다리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순발력과 민첩성 훈련이 가능하며 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많은 트레이닝 방법을 제공한다.	
종목	74.단체줄넘기	
운영방법	줄넘기는 심폐기능 강화와 민첩성 및 순발력, 지구력 훈련이 가능하며, 단체줄넘기는 공동체 의식속에서의 일체감과 동료간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학급 단위별로 경기를 할 수있다.	
종목	75.못말리는 휴지통	
운영방법	못 말리는 휴지공은 구겨진 종이 휴기를 움직이는 휴지통에 빠르게 그리고 많이 던져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간단한 방식의 보드게임이다. 휴지통은 건전지로 작동되며, 게임이 시작되면 휴지통은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뚜껑을 닫아 플레이어가 휴지 넣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기도 해 플레이어를 당황시키기도 한다.	

3.뉴스포츠 실습종목

1)디스크골프

경기는 티라인에서 시작해 두 번째부터는 디스크가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던져 골 홀레 넣으면 된다. 골프처럼 일반적으로 4명이 1조가 돼 9홀 또는 18홀을 도는 동안 최소 횟수로 던져 넣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 디스크골프를 단순한 원반던지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비거리와 정확도는 물론 코스의 난이도에 따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스쿠프 볼(사이클론 볼)

스쿠프 볼은 공을 던지고 받는 훈련과 플라잉디스크의 얼티미트와 같은 방법으로 팀원들끼리 패스를 통해 상대방의 골에 공을 넣거나 상대 진영의 엔드라인에서 공을 터치다운 하면 득점을 하는 경기이다. 뿐만 아니라 네트를 두고 양쪽에서 공을 던져 상대팀이 잡아내지 못하면 득점을 하는 방식으로도 경기를 할 수 없다. 스쿠프 볼은 공을 던질 때 팔 힘에만 의존해서 공을 던지는 습관을 없애고 손목의 스냅과 공을 놓는 타이밍과 지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며, 운동장 또는 체육실의 크기나 환경에 맞추어 네트형 경기나 필드형 경기로 적절하게 응용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3)플로어볼

두 팀 간의 시합 형태로 경기를 진행하여 상대팀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의 크기에 따라 5:5, 4:4, 3:3으로 인원수를 조정해서 즐길 수 있다. 정식 경기 시간은 3피리어드 20분씩, 두 번의 10분간의 휴식시간을 갖게 되며 각 피리어드가 끝나면 각 팀은 공격 진영을 바꿔야 한다. 일반 경기의 경우 전, 후반으로 나눠 각 15분, 20분씩 진행할 수가 있다. 경기 중 필드선수의 경우는 수시로 선수 교체가 가능하다. 격렬한 육체적 플레이인 보디 체킹(Body checking)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어린이나 여성, 혼성팀의 경기가 가능하다. 경기 규칙을 어기는 선수에게는 2분간 경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한다.

팀스터디 16-07

실무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엑셀 활용 방법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16년 06월 23일
발표자	최중진 부장, 이정화 팀장, 고형식, 윤혜림, 김서영, 이안나, 조용진
장 소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실무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엑셀 활용 방법

1. 유효성 검사와 이름 정의

◆ 유효성 검사하기

-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한다.
-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의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다.
- 원본란에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다.
-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에서 [모두 지우기]를 클릭하면 데이터 유효성을 삭제할 수 있다.

- 유효성 검사가 설정된 셀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데이터 목록이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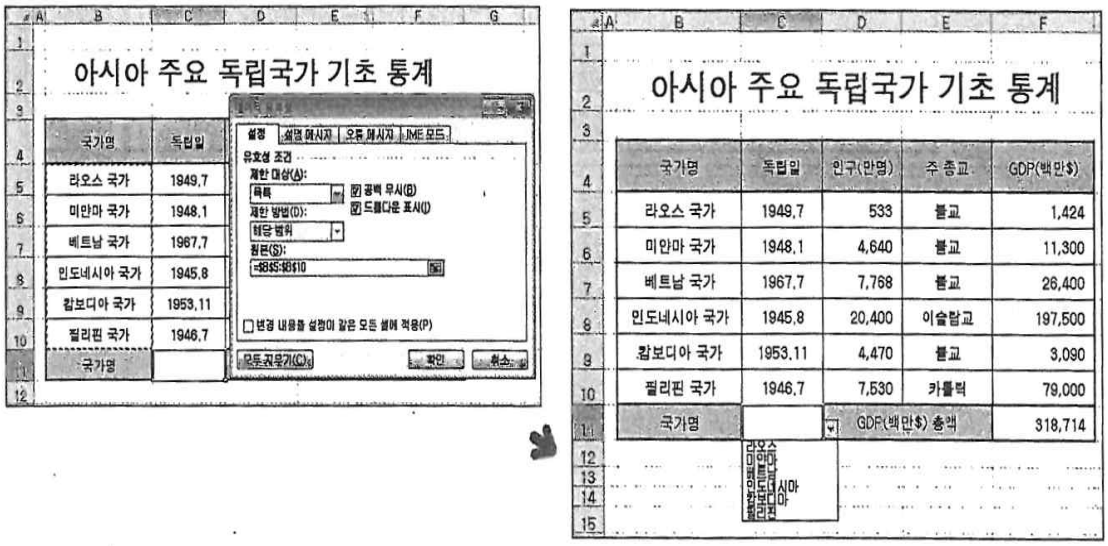

◆ 이름 정의하기

• 이름을 정의할 셀을 선택하거나 셀 블록을 설정한 다음 이름상자에 이름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인구수 | 533

	B	C	D	E	F
1					
2	아시아 주요 독립국가 기초 통계				
3					
4	국가명	독립일	인구(만명)	주 종교	GDP(백만$)
5	라오스 국가	1949.7	533	불교	1,424
6	미얀마 국가	1948.1	4,640	불교	11,300
7	베트남 국가	1967.7	7,768	불교	26,400
8	인도네시아 국가	1945.8	20,400	이슬람교	197,500
9	캄보디아 국가	1953.11	4,470	불교	3,090
10	필리핀 국가	1946.7	7,530	카톨릭	79,000
11	국가명	라오스	GDP(백만$) 총액		318,714

• [수식] 탭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를 클릭한다.
• [새 이름] 대화상자의 이름란에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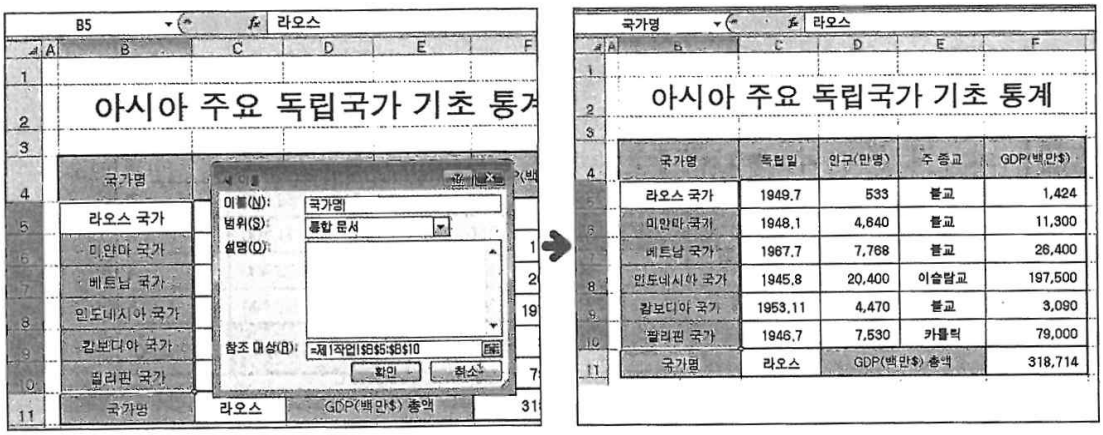

1 《출력형태》와 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목과 셀 서식을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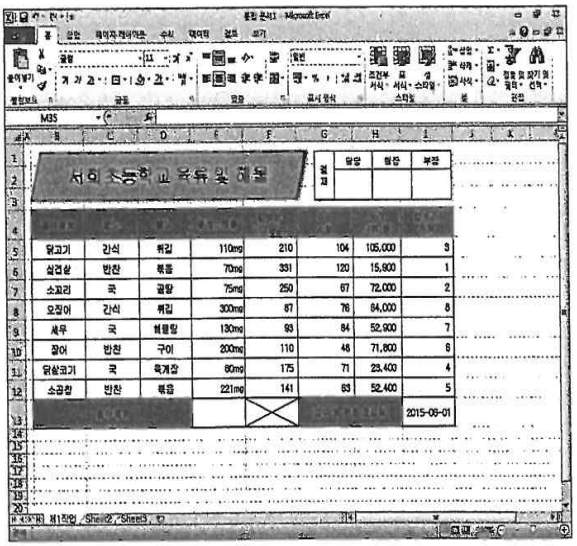

2 [G5] 셀부터 [G12] 셀까지 블록을 설정한 다음 이름상자에 '주문수량'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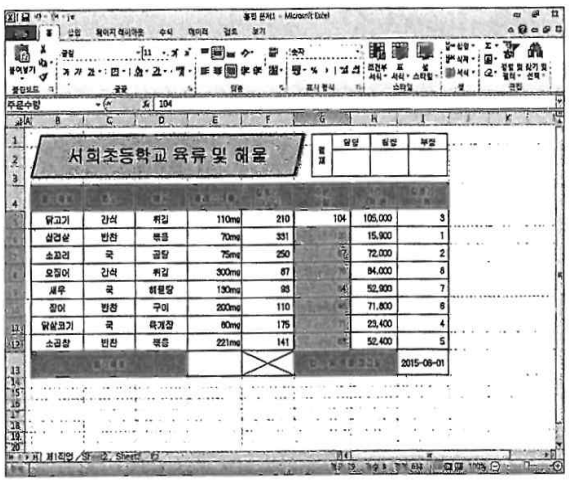

3 [E13] 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한다.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지정하고 원본란을 선택한 다음 [B5] 셀부터 [B12] 셀까지 블록 설정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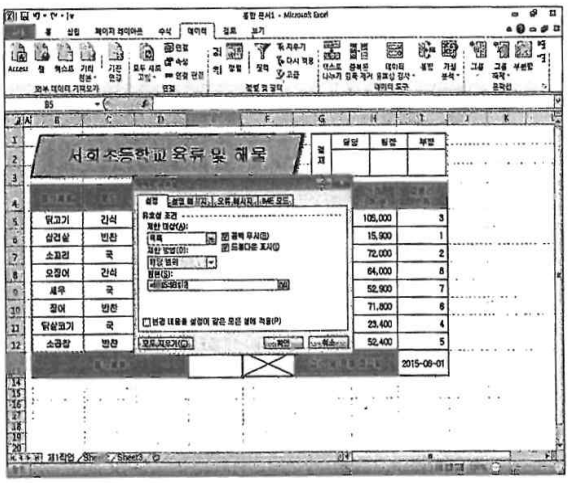

4 [E13] 셀에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음식재료 목록이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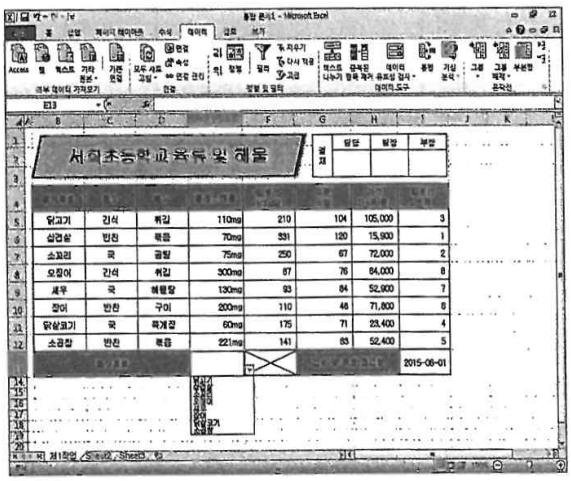

2. 함수식

♦ 날짜와 시간 함수

함수명	함수식	의미
TODAY	=TODAY()	현재 시스템 날짜를 표시한다.
NOW	=NOW()	현재 시스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다.
DATE	=DATE(년, 월, 일)	년, 월, 일을 날짜 데이터로 표시한다.
YEAR	=YEAR(날짜)	날짜의 년도를 구한다.
MONTH	=MONTH(날짜)	날짜의 월을 구한다.
DAY	=DAY(날짜)	날짜의 일을 구한다.
HOUR	=HOUR(시간)	시간에서 시를 구한다.
MINUTE	=MINUTE(시간)	시간에서 분을 구한다.
SECOND	=SECOND(시간)	시간에서 초를 구한다.
WEEKDAY	=WEEKDAY(날짜, 옵션)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한다. - 날짜 :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번호로 표시 - 옵션 : 반환 값의 종류 1 또는 생략 : 1이 일요일 2 : 1을 월요일로 시작 3 : 0을 월요일로 시작

예)

함수명	함수식	결과값
TODAY	=TODAY()	2015-11-26
NOW	=NOW()	2015-11-26 9:39
DATE	=DATE(2012, 05, 05)	2015-05-05
YEAR	=YEAR(TODAY())	2015
MONTH	=MONTH(TODAY())	11
DAY	=DAY(TODAY())	26
HOUR	=HOUR(NOW())	9
MINUTE	=MINUTE(NOW())	39
SECOND	=SECOND(NOW())	47
WEEKDAY	=WEEKDAY(TODAY())	2

♦ 문자열 함수

함수명	함수식	의미
CONCATENATE	=CONCATENATE(문자열1, 문자열2, …)	문자열1, 문자열2, …를 하나로 합친다.
LEFT	=LEFT(문자열, 숫자)	문자열 값의 맨 왼쪽에서 지정한 숫자 만큼 문자를 표시한다.
RIGHT	=RIGHT(문자열, 숫자)	문자열 값의 오른쪽에서 지정한 숫자 만큼 문자를 표시한다.
MID	=MID(문자열, 숫자1, 숫자2)	문자열 값의 숫자1 의 위치부터 숫자2 만큼 문자를 표시한다.
LEN	=LEN(문자열)	문자열의 길이를 나타낸다.
LOWER	=LOWER(문자열)	문자열 값을 모두 소문자로 바꾼다.
UPPER	=UPPER(문자열)	문자열 값을 모두 대문자로 바꾼다.
VALUE	=VALUE(문자열)	문자열로 입력된 숫자를 계산식이 가능한 숫자 값으로 바꾼다.
REPT	=REPT(문자열, 숫자)	문자열을 숫자 만큼 반복해서 표시한다.
REPLACE	=REPLACE(문자열1, 숫자1, 숫자2, 문자열2)	문자열 1에서 숫자1 위치부터 숫자2만큼 문자열2로 바꾼다.
PROPER	=PROPER(문자열)	문자열 값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꾼다.

예)

함수식	결과	설명
=CONCATENATE("출", "고", "일")	출고일	문자 "출", "고", "일"을 하나로 합쳐 표시
=LEFT("판매 현황")	판매	"판매 현황"에서 왼쪽 2개 문자를 표시
=RIGHT("판매 현황",2)	현황	"판매 현황"에서 오른쪽 2개 문자를 표시
=MID("판매 현황", 2, 1)	매	"판매 현황"에서 두 번째 문자부터 1개 문자를 표시
=LEN("판매 현황")	5	"판매 현황"의 문자 길이를 표시
=LOWER("GOOD")	good	"GOOD"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
=UPPER("good")	GOOD	"good"을 모두 대문자로 변환
=VALUE("1500")	1500	문자 "1500"을 숫자로 변환
=REPT("·",3)	···	"·" 문자를 3번 표시
=PROPER("good")	Good	"good"의 첫 "g"만 대문자로 변환
=REPLACE("Have Nice Day", 1, 9, "Good")	Good Day	"Have Nice Day"의 1번째 문자부터 9번째 문자를 "Good"으로 변환

♦ 수학/삼각 함수

함수명	함수식	의미
SUM	=SUM(인수1, 인수2…)	인수들에 대한 합을 구한다.
SUMIF	=SUMIF(범위, 조건, 구할 합의 범위)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의 합을 구한다.
INT	=INT(인수)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다.
PRODUCT	=PRODUCT(인수1, 인수2…)	인수를 곱한 값을 구한다.
ROUND	=ROUND(숫자, 자릿수)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한다.
ROUNDDOWN	=ROUNDDOWN(숫자, 자릿수)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에서 내린다.
ROUNDUP	=ROUNDUP(숫자, 자릿수)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에서 올린다.
SUMPRODUCT	=SUMPRODUCT(배열1, 배열2…)	주어진 배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모두 곱하고 그 곱의 합계를 구한다.
ABS	=ABS(숫자)	절대 값을 구한다.
MOD	=MOD(숫자, 나눌 수)	나눗셈의 나머지 값을 구한다.
CEILING	=CEILING(수치, 배수의 기준)	수를 significance의 배수가 되도록 절대 값을 올린다.
ODD	=ODD(숫자)	주어진 수에서 가장 가까운 홀수로, 양수인 경우 올리고, 음수인 경우 내린다.
PI	=PI()	원주율(파이 : 3.14145…) 값을 구한다.
POWER	=POWER(숫자1, 숫자2)	숫자1을 지정한 숫자2 만큼 거듭제곱한 결과를 구한다.
SUBTOTAL	=SUBTOTAL(Function_num, 범위)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의 부분합을 구한다.

예)

함수명	결과	설명
=SUM(10,20,30)	60	10, 20, 30의 합계를 구한다.
=INT(4.5)	4	4.5의 내림 값을 구한다.
=PRODUCT(2, 3)	6	2와 3을 곱한 값을 구한다.
=ROUND(12.569, 1)	12.6	12.569의 소수 1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구한다.
=ROUNDDOWN(12.569, 2)	12.56	12.569의 소수 2자리에서 내림한 값을 구한다.
=ROUNDUP(12.569, 2)	12.57	12.569의 소수 2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구함한다
=ABS(-6)	6	-6의 절대값을 구한다.
=MOD(25, 4)	1	25를 4로 나누어 나머지 값을 구한다.

♦통계 함수

함수명	함수식	의미
AVERAGE	=AVERAGE(인수1, 인수2, 인수3…)	인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COUNT	=COUNT(인수1, 인수2, 인수3…)	인수들 중 숫자 인수에 대한 개수를 구한다.
COUNTA	=COUNTA(인수1, 인수2, 인수3…)	인수들 중 공백이 아닌 인수의 개수를 구한다.
COUNTIF	=COUNTIF(범위, 조건)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한다.
COUNTBLANK	=COUNTBLANK(범위)	지정한 범위에서 공백 셀의 개수를 구한다.
RANK	=RANK(인수, 범위, 옵션)	지정한 범위에서 인수의 순위를 구한다.
MAX	=MAX(인수1, 인수2, 인수3…)	인수들 중 가장 큰 값을 구한다.
MIN	=MIN(인수1, 인수2, 인수3…)	인수들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MEDIAN	=MEDIAN(인수1, 인수2, 인수3…)	주어진 인수들의 중간 값을 구한다.
MODE	=MODE(인수1, 인수2, 인수3…)	인수들 중 가장 많이 나온 인수를 구한다.
LARGE	=LARGE(범위, 인수)	지정한 범위에서 인수 번째로 큰 값을 구한다.
SMALL	=SMALL(범위, 인수)	지정한 범위에서 인수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한다.
TRIMMEAN	=TRIMMEAN(배열, 제외할 데이터 요소)	데이터 집합의 내부 평균을 구한다.

함수식	결과	설명
=AVERAGE(C3:F3)	3,548.5	강북의 평균 값
=COUNT(D3:D9)	5	D3 셀부터 D9 셀까지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
=COUNTA(F3:F9)	4	F3 셀부터 F9 셀까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개수
=COUNTIF(C3:C9,">=5000")	3	C3 셀부터 C9 셀까지 데이터 값이 5000 이상인 셀의 개수
=COUNTBLANK(F3:F9)	3	F3 셀부터 [F9] 셀까지 비어 있는 셀의 개수
=RANK(G3,$G$3:$G$9)	5	강북의 순위
=LARGE(G3:G9,3)	4,816.25	평균 값 중 3번째로 큰 값
=SMALL(G3:G9,3)	3,548.50	평균 값 중 3번째로 작은 값
=MAX(G3:G9)	7113.67	평균이 가장 큰 값
=MEDIAN(G3:G9)	4,250	평균 중에서 중간 값
=MIN(G3:G9)	3151.67	평균이 가장 작은 값
=MODE(G3:G9)	5900	E3 셀부터 E9 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수

♦ 데이터베이스 함수

함수명	구분	의미
DAVERAGE	=DAVERAGE(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값의 평균을 구한다.
DSUM	=DSUM(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값의 합을 구한다.
DCOUNT	=DCOUNT(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DMAX	=DMAX(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가장 큰 값을 구한다.
DMIN	=DMIN(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
DCOUNTA	=DCOUNTA(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고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한다.
DGET	=DGET(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하나의 값을 추출한다.
DVAR	=DVAR(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값을 사용하여 표본을 기반으로 한 모집단의 분산을 구한다.
DPRODUCT	=DPRODUCT(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값을 곱한다.
DSTDEV	=DSTDEV(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값을 사용하여 전체 모집단을 기반으로 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

예)

	A	B	C	D	E	F	G
1							
2		강좌명	분류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비고
3		POP 손 글씨	취미	최재순	45 명	₩ 70,000	정원마감
4		가정요리	쿠킹	이영희	50 명	₩ 30,000	
5		사물놀이	예능	강호정	25 명	₩ 30,000	정원마감
6		이미지리터칭	취미	김지선		₩ 25,000	
7		드럼배우기	예능	유재희	20 명	₩ 40,000	
8		인형만들기	취미	나경숙	15 명	₩ 30,000	정원마감
9		반찬만들기	쿠킹	이민호	20 명	₩ 50,000	정원마감
10		퀼트	취미	전석진	15 명	₩ 35,000	

함수명	결과	설명
=DSUM(B2:G10, 4, C2:C3)	75	분류가 취미인 수강인원
=DAVERAGE(B2:G10,5,C2:C3)	40000	분류가 취미인 평균 수강료
=DCOUNT(B2:G10,4,C2:C3)	3	분류가 취미 중 수강인원이 있는 곳의 개수
=DMAX(B2:G10,4,C2:C3)	45	분류가 취미인 데이터 중 참가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의 인원수
=DMIN(B2:G10,4,C2:C3)	15	분류가 취미인 데이터 중 참가 인원이 가장 적은 곳의 인원수
=DCOUNTA(B2:G10,6,C2:C3)	2	분류가 취미인 정원 마감의 수

♦ 찾기 / 참조 함수

함수명	구분	의미
CHOOSE	=CHOOSE(숫자, 인수1, 인수2, ···)	숫자 위치에 있는 인수를 표시한다.
HLOOKUP	=HLOOKUP(기준값, 범위, 행번호, 옵션)	범위에서 기준 값과 같은 데이터를 찾아 지정한 열 번호에 있는 값을 구한다.
VLOOKUP	=VLOOKUP(찾을 값, 범위, 열번호, 옵션)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지정한 값을 찾아 지정한 행 번호에 있는 값을 구한다.
INDEX	=INDEX(범위, 행 번호, 열 번호)	지정한 범위에서 행과 열 번호에 위치한 셀의 값을 표시한다.
MATCH	=MATCH(찾을 값, 범위, 옵션)	범위에서 찾을 값과 같은 값을 찾아 그 위치를 번호로 표시한다.

♦ 정보 함수

함수명	구분	의미
IF	=IF(조건식, 값1, 값2)	조건이 참이면 값1을 그렇지 않으면 값2를 표시한다.
AND	=AND(조건식1, 조건식2···)	조건식1과 조건식2가 모두 참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한다.
OR	=OR(조건식1, 조건식2···)	조건식1이나 조건식2가 만족하면 TRUE를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표시한다.

3. 피벗 테이블

◆ 피벗 테이블 만들기

• [삽입] 탭의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한다.
•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데이터 범위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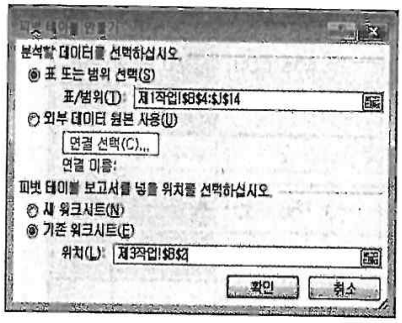

•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에 각각의 필드 단추를 드래그하여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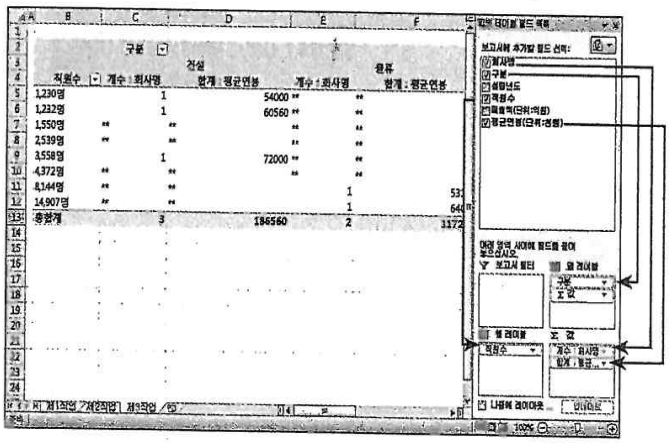

• 데이터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이동]을 선택하면 왼쪽, 오른쪽 또는 위쪽 아래쪽, 처음으로 이동, 끝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다.
• 필드 단추를 클릭하여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하면 사용할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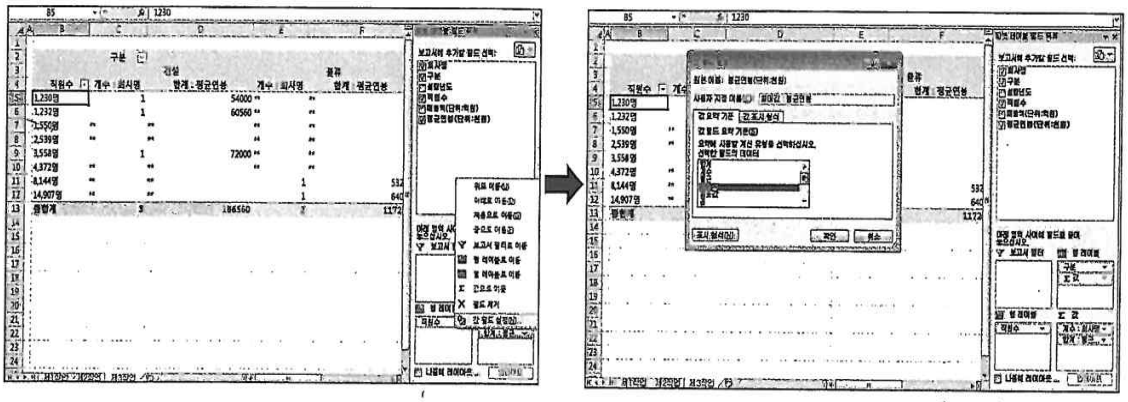

♦ 피벗 테이블 그룹화 하기

- 그룹화할 항목을 선택한 다음 [옵션] 탭의 [그룹] 그룹에서 (그룹 선택)을 클릭한다.
- [그룹화] 대화상자에서 시작과 끝, 단위를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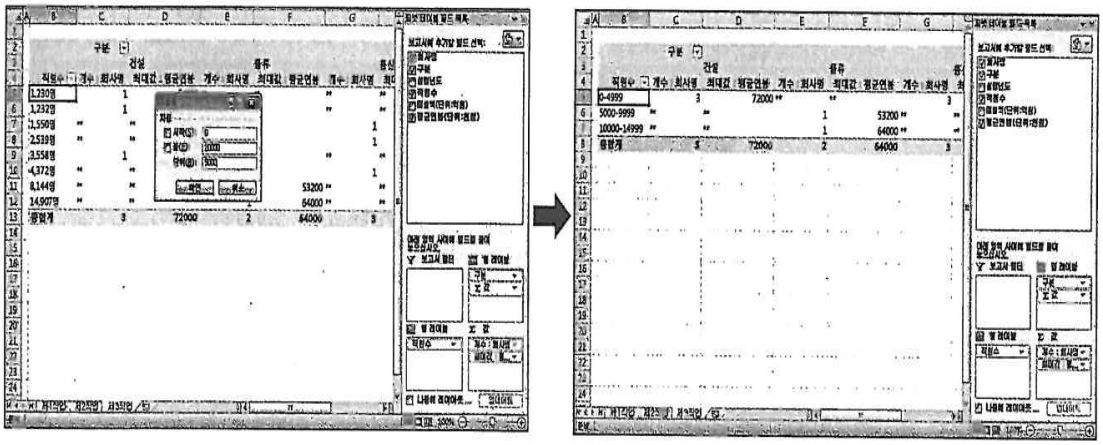

♦ 피벗 테이블 옵션 설정하기

- [옵션] 탭의 [피벗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을 클릭한다.
-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의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거나 빈 셀에 특정 기호를 설정할 수 있다.
-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피벗 테이블의 열 총합계 또는 행 총합계를 표시하거나 감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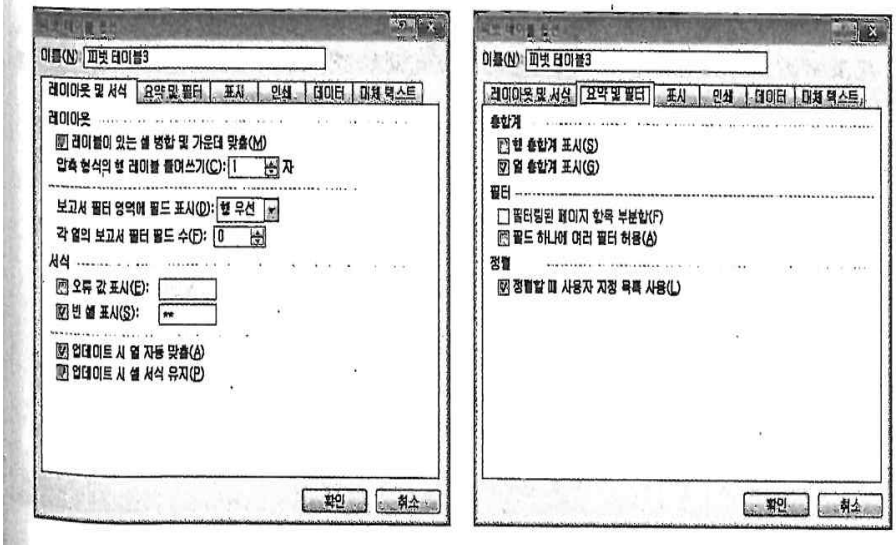

1 [Sheet3]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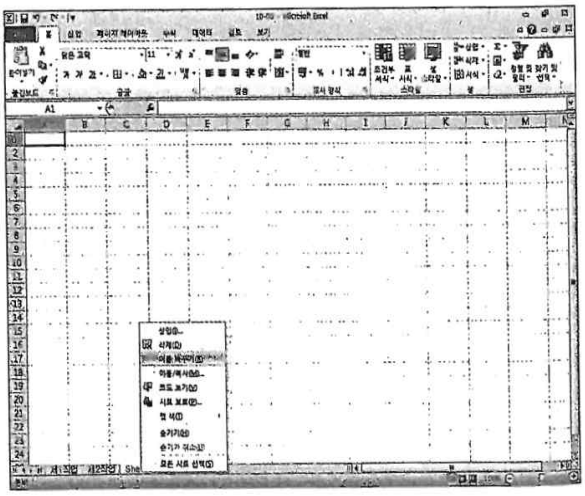

2 시트 이름을 "제3작업"으로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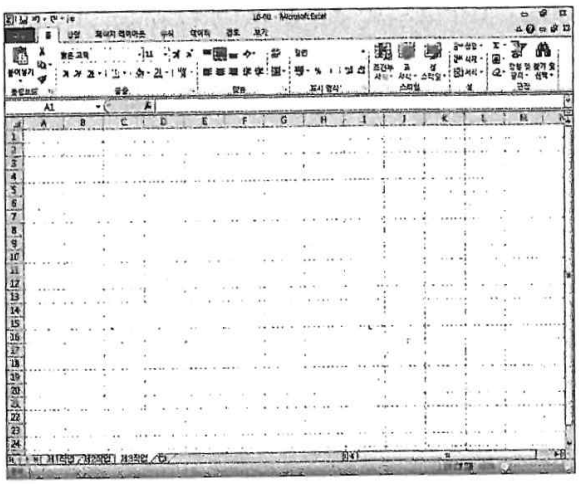

3 [제1작업] 시트의 [B4] 셀부터 [H12] 셀까지 블록을 설정한 다음 [삽입] 탭의 [표] 그룹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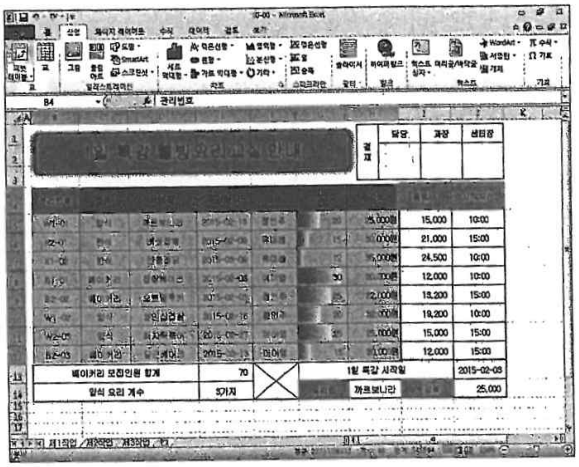

4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에서에 데이터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한 다음 위치 란의 단추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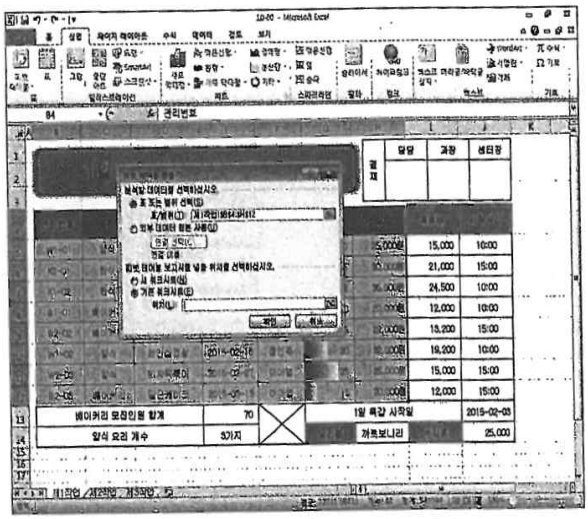

5 [제3작업] 시트 탭을 클릭한 다음 [B2]를 선택한 후 다시 단추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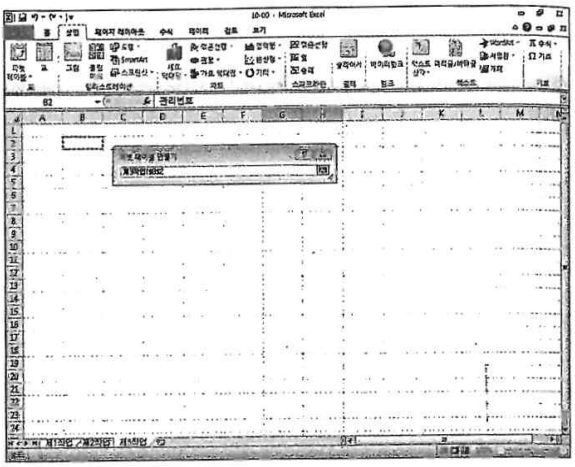

6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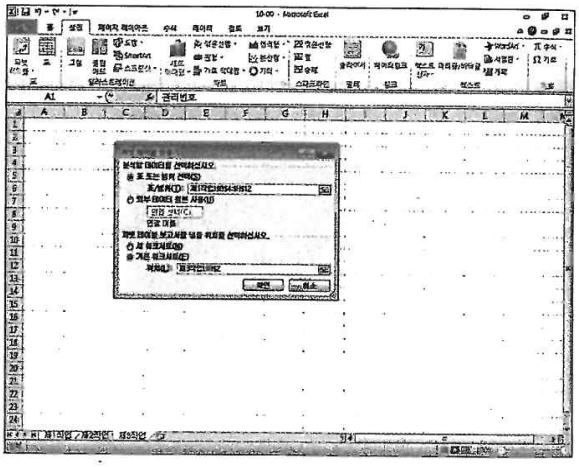

7 [A] 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열 너비]를 선택한다. [열 너비] 대화상자에 "1"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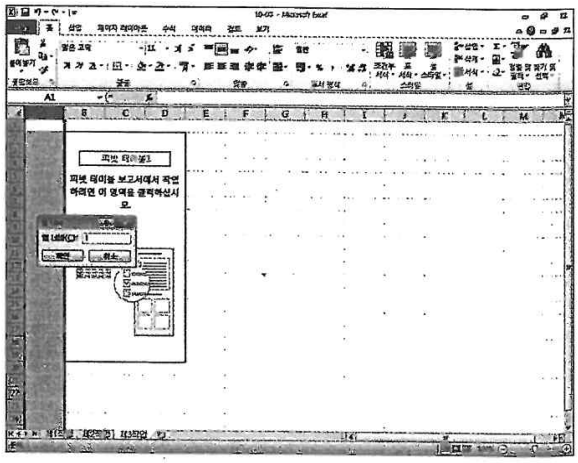

8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 열 레이블에는 '분류', 행 레이블에는 '특강일자', 값에는 '모집인원(명)'과 '요리명' 필드 단추를 《출력형태》와 같이 드래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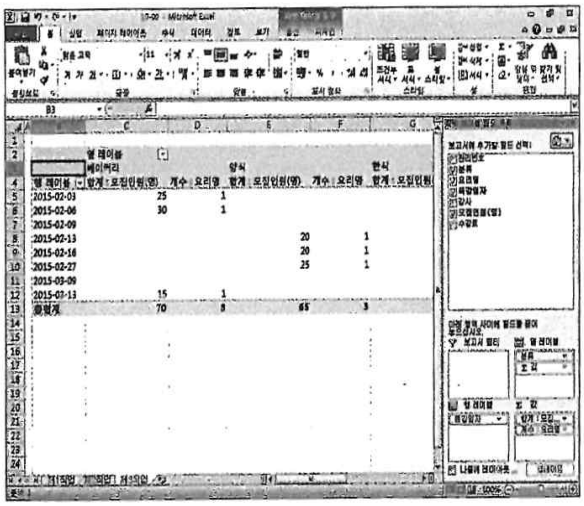

9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에서 [합계:모집인원(명)] 필드 단추를 클릭하여 [값 필드 설정]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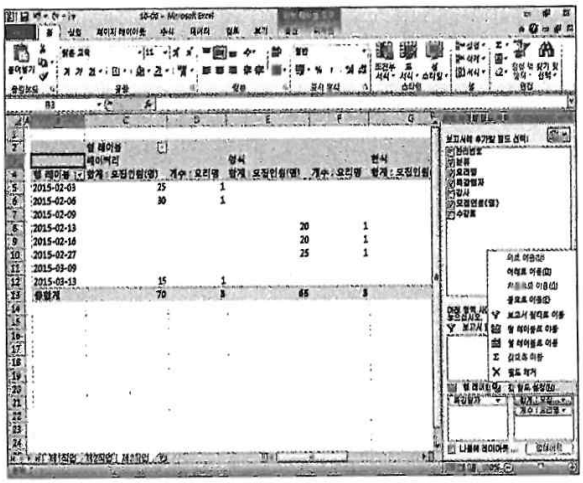

10 [값 필드 설정] 대화상자에서 함수를 '최대값'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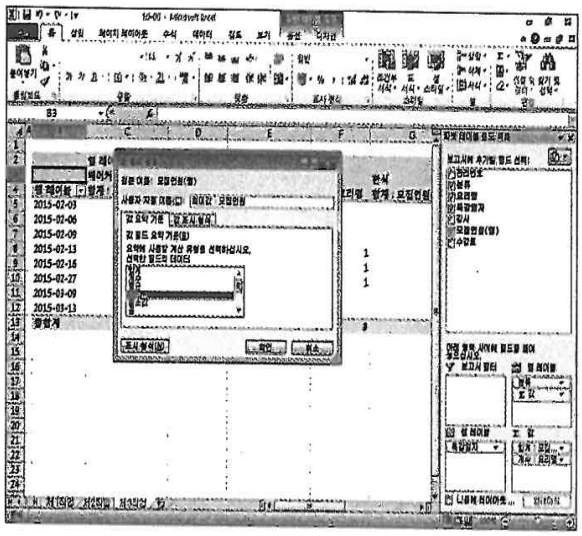

11 [C2] 셀을 선택한 다음 "분류"를 입력한다. [G3]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이동]-[처음으로 "한식" 이동]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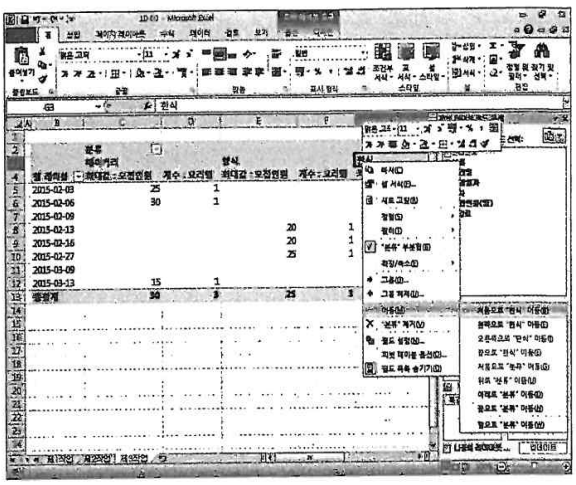

12 [피벗 테이블 도구]-[옵션] 탭의 [피벗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을 클릭한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고 빈 셀 표시란에 "***"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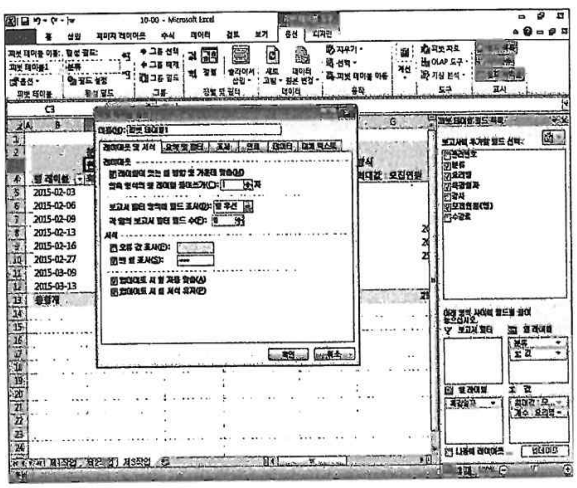

12 [피벗 테이블 도구]-[옵션] 탭의 [피벗 테이블] 그룹에서 (옵션)을 클릭한다.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상자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선택하고 빈 셀 표시란에 "***"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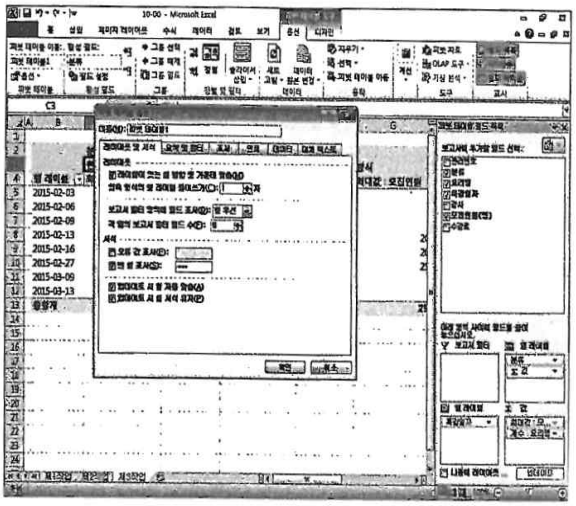

13 [요약 및 필터] 탭에서 '행 총합계 표시'를 해제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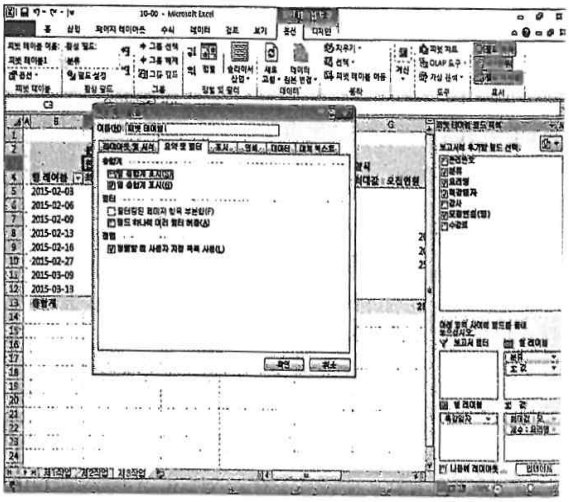

14 [B4] 셀을 선택한 다음 "특강일자"를 입력한다. [B5] 셀을 선택한 다음 [피벗 테이블 도구]-[옵션] 탭의 [그룹] 그룹에서 (그룹 선택)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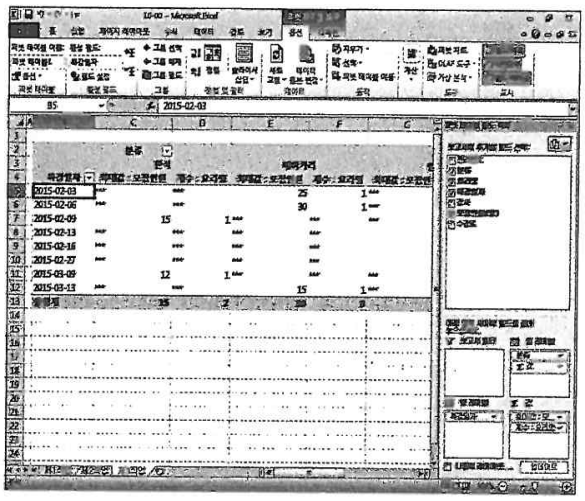

15 [그룹화] 대화상자에서 단위를 '월'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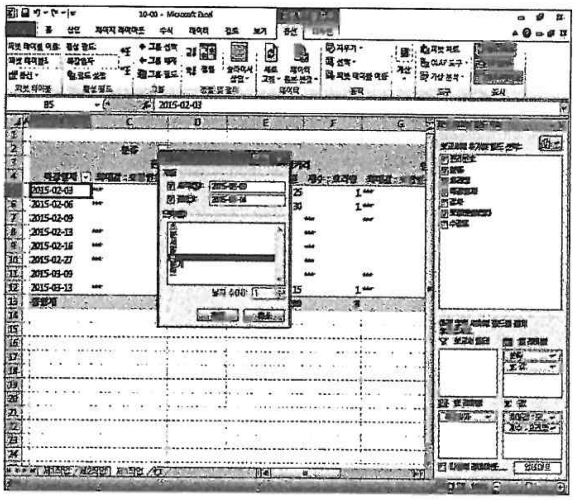

16 다음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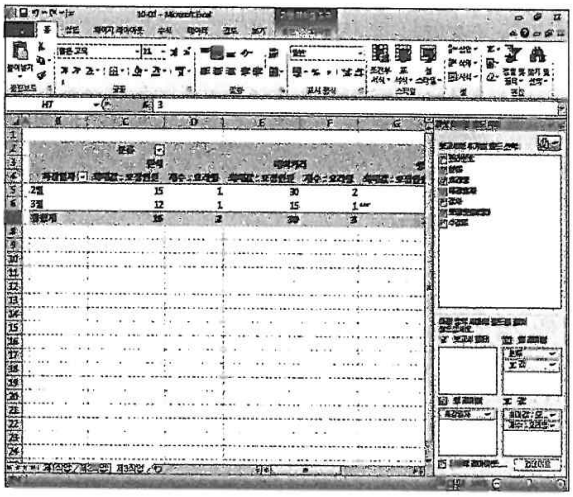

■ 총평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업무는 엑셀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기록 및 실적을 빠르고 쉽게 도출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이 있다. 엑셀 프로그램의 수식과 함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과 엑셀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팀스터디를 엑셀 교육으로 진행하여 전문성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기획홍보팀 최중진 부장님의 엑셀 기본 교육을 통해 직원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수식과 함수에 쓰이는 '',!,[],$ 등 기본적인 수식 개념을 알게 되었으며 직접 연습을 통해서 빨리 습득하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벗테이블, 유효성검사, 수식 등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무에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팀역량계발 16-08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노트

팀 명	지역연계팀
일 시	2016년 11월 22일
발표자	윤혜림
장 소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관 사례관리 공부 노트

1부 사례관리 바탕 : 생태·강점·관계

생태

당사자를 이해하려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펴야 합니다. 생태 관점은 당사자나 그가 속한 환경, 어느 한 조건만으로 문제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쁜 조건도 그 속에 놓인 당사자와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개인과 환경을 따로 보지 않고 서로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관점으로 당사자를 바라보는 사례관리 실무자는 당사자와 그가 속한 환경, 이 둘 사이를 좋게 만드는 일을 궁리합니다.

예) 이런 관점이라면 한 아이를 돕는다고 할 때에 그 아이의 가족이나 담임선생님. 친하게 지내는 친구, 혹은 아이가 믿고 따르는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마땅한 과정입니다. 아이의 어려움이 그 아이와 둘레 사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이 상호작용 결과이기 쉽고, 그 해결도 그런 둘레 사람과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강점

맑은 물 한 양동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란 잉크 몇 방울이 덜어지자 물 전체가 금세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때 이 양동이를 다시 맑게 하는 방법은?

어떤 이는 잉크를 다시 걷어 내기 위해 애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잉크를 없애기보다 더 많은 물을 부어 잉크를 희석합니다.

이처럼 어떤 문제를 붙잡고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문제 외에 잘해왔던 일이나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게 돕는 사회복지사의 실천이 '강점 사회사업'입니다. 강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에게서 강점을 찾거나 만들어 이로써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돕습니다.

강점관점은 당사자의 강점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점관점은 처음부터 아예 당사자의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강점관점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바탕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점을 찾아 생동하거나 새로운 강점을 만듭니다. 이 강점이 커져 문제를 희석하거나 상쇄합니다. 바탕이 살아나면 당면한 그 문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아예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강점을 찾을 수 없으면 두 가지를 체크해주세요!
① 그의 존재 그 자체가 강점이다
당사자에게서 강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어느 교육에서도 어떤 선생님께서 당신이 만나는 무기력한 아이에게서 강점을 찾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의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 되어 누워만 계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그분에게도 강점이 있을까요?
아주머니 말씀이 밖에서 일 마치고 돌아오면 그래도 남편이 있어 힘이 된다고 합니다. 누워만 있어도 남편이 있어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② 진지하게 강점을 볼 시간이 있기는 했는가?

관계

강점 가운데 특히 당사지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관계'에 주목합니다. 이 관계를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당사자의 관계망은 문제 대처와 해결의 원천입니다. 우리와 만나는 동안 당사자에게 '관계'를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의 풍성한 인간관계가 당사자의 탄력성이 됩니다. 지역사회의 풍성한 이웃 관계가 지역사회의 탄력성이 됩니다.
사회사업가의 사례관리는 관계를 살려 관계로 돕는 일입니다.

생태·강점·관계 정리

어떤 관점으로 사람과 사회를 보는가에 따라, 문제를 보는 관점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례관리, 생태와 강점과 관계를 바탕에 두고 그 위에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례관리는 당사자(혹은 그 가족)의 욕구를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해가게 돕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예전에 경험해 보았고, 또 잘 이겨냈음에도 이를 떠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이겨낼 힘이 있음에도 적절히 그런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분에게도 누군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어떤 순서로 알아보고 살펴보면 좋을지 안내하고, 그 일에 관한 그 사람의 강점을 알아주고 세워주고 응원해 준다면 좋겠지요. 그렇게 당사자가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해결해가게 도와주는 일이 사례관리입니다. 그리고 이대 당사자에게 어떤 자원이 있고 이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활용하면 좋을지 거들어 주는 이가 사례관리자입니다.

사례관리는 당사자의 한 가지 욕구라도 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살펴보고 두루 만나야 할 사람이 많은 경우, 즉 활용해야 하는 '복지자원'이 많기에 이런 자원의 활용을 안내하고, 또 당사자가 이를 적절히 활용하게 돕는 일입니다. 복지자원의 활용을 '관리'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사례관리, 생태와 강점과 관계를 바탕에 두고 그 위에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눈은? 당사자의 생태와 강점과 관계를 보는 눈.
사회복지사는? 생태와 강점의 눈으로 관계를 붙잡고 일하는 사람.

2부 사례관리 여러 주제

'사례관리'를 '사람관리'로 해석하면
사례관리. 여기서 '관리'는 사람 관리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한 가지 욕구라고 이를 해결하려면 찾아 활용해야 하는 자원이 많기에, 이'여러 자원의 활용'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당사자가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이뤄가게, 문제를 해결하게 돕거나 주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람 관리'로 해석하면,

① 당사자가 불쾌해할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를 전인격적 약자로 보고 그의 인생을 관리하려 드니 불쾌합니다. 단지 이 일을 조금 거들어 달라고 한 것뿐인데,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② 당사자가 모든 걸 의존하려 할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사회복지사에게 부탁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의 부탁을 넘어서서 모든 걸 대신해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인생을 관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말하지 않은 일도 대신 다 해주니 당사자는 아예 모든 걸 사회복지사에게 맡겨버리려 합니다. 이렇게 도우면 당사자의 자존심과 염치가 사라집니다.
사회복지사도 갈수록 부담스럽습니다. 다해주겠다고 했으니 이제 욕망으로 변해버린 당사자의 욕구를 감당할 수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저앉고 말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도 '사례관리'를 자주 말하지만, 한 기관 같은 팀 동료들도 서로 달리 이해하고, 그렇게 각자 이해한 대로 실천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천에 앞서 먼저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례관리
-개별성: 당사자를 한 명씩(혹은 한 가정씩) 개별화하여,
-지속성: 상당 기간 함께하면서,
-다양성: 여러 가지 자원 활용을 돕는 일입니다.

욕구
사회복지사는 당사자를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을지라도 이를 다시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느끼고 표현하게' 거들어야 합니다. 자기 삶을 살게 도

와야 합니다.

규범적 욕구

당사자의 문제(욕구)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판단 기준, 즉 규범이 있어야 합니다.

규범적 욕구(normative need)는 전문가들에 의해 어떠한 기준을 통해 욕구/ 느껴진 욕구(felt need)는 한 개인이 자기의 욕구라고 생각하는 욕구/ 표현된 욕구(expressed need)는 충족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기를 요구하는 욕구를 말함.

① 소극적 욕구와 적극적 욕구

소극적 욕구는 좋지 않은 것을 해소하려는 욕구, 회피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적극적 욕구는 좋은 것을 바라는 이루거나 누리려는 욕구, 성취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② 욕구 선택

문제를 없애려는 소극적 욕구도 존중하지만 되도록 좋은 걸 이루고 성취하려는 적극적 욕구에 주력합니다.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욕구를 선정해야 합니다. 여러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사자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일인데 이를 외면하는 건 무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처지와 역량을 생각하여 진정 당사자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돕는 겁니다.

③ 욕구 합의

당사자가 느끼고 표현하는 욕구를 존중하지만 사회 규범과 사회복지사의 전문가 판단, 사회복지사로서 정체성도 생각하여 돕습니다. 당사자의 욕구만을 좇는 것도 극단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고 판단, 결정, 진행하는 것도 극단적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 규범과 전문가 판단 아래 당사자를 위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도, 이를 다시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당사자가 느끼고 표현하게' 거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욕구를 '합의한다'는 말입니다.

복지자원

사례관리에서 '자원'은 복지 당사자의 욕구 해결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사례관리는 자원 연계로 당사자의 욕구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게 돕는 중개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 실천에서는 당사자 혹은 그 가족의 욕구나 문제를 돕는 건 자원 연결로 이뤄진다는 걸 전제합니다.

자원은 크게 당사자 쪽 자원과 사회복지사 쪽 자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 자원과 공식적 자원으로 나눠보기도 합니다. 여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비슷한 보편적 자원과 약자를 위해 따로 만든 특별한 자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살필 때에는 먼저 그 '당사자 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일에 관한 당사자의 경험이나 생각, 당사자 쪽 관계를 먼저 생각해 이 속에서 강점을 찾고, 이를 활용하여 욕구를 해결하게 거들어야 합니다.

① 당사자 쪽 자원
당사자 자원도 크게 당사자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으로 나눠 살핍니다. 당사자 내적 자원은 그 일에 관한 당사자의 경험이나 역량, 생각이나 의지 같은 것입니다.
② 지역사회 자원
당사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가 살아가는 지역사회, 마음 두고 있는 곳이나 모임에서 실마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지역사회 여러 사람의 협력을 얻는 방법이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 입니다.
③ 복지 서비스 자원
사안과 상황, 그리고 사람에 따라 특별한 복지 서비스를 주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는 마치 깁스와 같습니다. 팔을 다치면 깁스를 하고 다 나으면 떼어 냅니다. 그런데 깁스가 편하다고 십 년 하고 있으면, 이제 그 팔을 쓸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복지 자원 종류
'복지 자원'은 복지 욕구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사례관리는 당사자가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게 거드는 일입니다. 그 과정을 함께하며 응원 격려, 칭찬 감사하는 일입니다. 직접 자원을 주선, 연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최악의 조합은 사회복지사가 자기 쪽 자원으로, 그것도 공식적인 자원,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원 탐색 순서'는 사례관리 실천의 윤리
① 당사자 자원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당사자 자원을 살피지 않으면 당사자는 더욱 복지 서비스에 의존하려 할 겁니다. 당사자 자원을 살핀다는 건 그 일에 관하여, 그 문제에 대하여 당사자가 어떻게 하려 하는지, 어떻게 해 왔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② 지역사회 자원을 먼저 살피지 않으면
지역사회에 분명 좋은 뜻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가끔 오가며 안부 전해 주실 분. 반찬 만든 김에 조금 더 해 나눠 먹으려는 분, 우리 아이 데리고 산책하는 길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분. 이런 분들을 찾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만한 일을 주선해야 합니다.
비공식 자원을 찾는 일은 복지관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일?
'욕구를 중심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과의 면접과 방문 그리고 다양한 체계들과 접촉

을 통해 기존의 연결된 자원을 확인'
지나치게 가족 중심으로 몰아간다?
가족 사이 멀어졌다고, 그래서 가족 서로 고통스러워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하니 이를 서비스로 대신해주는 이가 사회복지사는 아닐 겁니다. 가족이 함께 살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면 이 이야기처럼 화해할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회사업가는 갈대가 상했다고 꺾어버리고 대신 기둥을 세우거나, 불씨가 약해졌다고 덮어버리고 대신 형광등 다는 이가 아닙니다. 사회사업가는 상한 갈대를 받쳐주고,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초기 면접
초기 면접은 당사자를 처음 만나 문제나 욕구에 관해 나누는 자리입니다. 당사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작성하면서도 문제 상황에 대한 당사자의 처지를 공감하려 애쓰는 인연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나를 분석하는 일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내가 어려움이 있어 찾아갔더니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지나치게 문제를 확대하거나 단정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나 어린 시절 여러 일을 추적하여 지금의 상황을 분석하려 한다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초기 면접은 당사자와 신뢰를 쌓는 첫 단추입니다.
이렇게 당사자와 함께 초기 면접 지를 작성하면 편안합니다. 말해야 하는 당사자 처지를 생각해도 편안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묻는 사회복지사도 편안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때'와 '곳'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사자와 상의합니다.

'층간 소음에 대한 해결'을 욕구로 보았습니다.
합의된 목표는 '위층 소리가 심해질 경우 이비인후과 혹은 정신과 계열의 검사나 치료를 받기'로, 실천 계획은 '낮 동안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해오시던 운동 꾸준히 하셔서 건강 유지하시기',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찾고 담당 사례관리자와 의논하기'로 설정했습니다.

사례회의
사례회의는 '당사자와 함께하는 회의'입니다.
사례회의는,
① 당사자를 돕기 위한 회의요,
② 또한, 사례관리자를 돕기 위한 회의입니다.
① 사례회의는 당사자를 돕기 위한 회의
사례회의는 어떤 사례에 대해 여러 사람이 '당사자와 함께'의논하고 계획하고 점검

하고 조정하고 격려 칭찬 감사하는 회의입니다. 당사자가 있어야 되는 회의입니다. 이는 당사자의 특정 욕구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당사자와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회의입니다. 지금 그 일에 관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와 함께 모여 논의하는 회의도 사례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사례관리자를 돕기 위한 회의
사례관리자의 일을 의논할 대는 그의 처지와 역량과 성향을 고려하여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보탭니다. 사례관리자의 일을 평가할 때는 실리 평가, 감사 평가를 합니다. 당사자를 만나 도움 계획을 세운 뒤 '사례관리 업무지원 회의; 시간에 이를 동료들과 나눕니다. 혹은 사례회의 후 세운 계획을 동료와 논의하기도 합니다. 당사자와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당사자와 의논한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눌 수도 있습니다.
'②'는 '사례관리 업무지원 회의'입니다.
현장에서는 '당사자를 돕기 위해 당사자와 함께하는 회의'와 '사례관리 담당자를 돕기 위한 회의', 이 두 가지를 합하여 '사례회의'로 이해합니다. 당사자와 함께 욕구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니, 계속 상의하는 건 당연합니다. 때에 다라 욕구를 도와줄 누군가와 함께 상의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상의한 이 내용 모두를 사례회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를 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현장 업무 흐름과 평가와 실적을 고려했습니다.

사례회의를 몇 번 해야 한다는 실적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당사자와 이뤄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나 욕구를 도와줄 만한 사람과 함께 논의한 것을 '사례회의'라 하고 이를 실적으로 잡으면 됩니다.

당사자와 함께한 사례회의 예 : 어느 부부 이야기
정수현, 아주머니의 다급한 전화
복지관에서 돕는 가정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부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복지관에 전화하셨습니다. 아저씨는 머리를 다치면서 오른쪽 편마비를 가진 분이셨는데, 아저씨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다가 중심을 잃으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긴급히 수술을 받았다며 울먹이셨습니다. 수술비가 4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다행히 병원 사회사업실에서 구청으로 긴급 지원비 신청을 해주셔서 수술비 마련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아저씨 간병을 위해 병원으로 가고 있으며, 6일째 술은 마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저씨 일로 눈물을 글썽이던 아주머니, 얼마나 놀래셨을지… 위로하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주머니께서 병원비와 더불어 이후 발생하여질 간병 비용 문제에 대한 도움을 복지관에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에 전세로 살고 있

으나, 수도 고장, 보일러 절단, 천정에 물이 새는 등으로 인해 도저히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라며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구가 크셨고, 이를 위해 복지관에서 도와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에 아주머니께 복지관에 오셔서 도움 줄 만한 분들과 함께 회의를 해보자 제안했습니다. 이사 문제는 평소 잘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을 모셔서 이사 방안을 마련해 보고, 병원 비용 문제는 함께 논의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진행계획

'진행계획'은 사례회의 뒤 당사자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누가 어떤 자원을 찾아 활용할지 당사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계획서로 작성하는 일입니다.

당사자와 함께 사례회의를 했으니, 진행계획도 당사자와 함께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가 따로 계획을 세울 일이 없습니다.

제시된 욕구	안정된 식사 환경 만들기	
합의된 목표	-정기적 배달 및 식사 (생활 리듬 찾기>정오에 밥 먹기는 적당하다고 사려됨) -복지관과 배달아파트의 왕래에 있어서는 어르신 인사함(동네에 정붙이기) -복지관 담당자와 잦은 대화로 대인관계 개선되리라 사려됨. -심적인 부담 없이 상대를 원만하게 인도하려는 점이 좋아 보임. (복지관에 오고 싶은 느낌)	
실천 계획	실천의 주체	실천 내용 및 활동
	정영규	-지 씨 아저씨가 요청하는 부분 잘 듣고 도와드림. -건강, 경제 부분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돕기
	지 씨 아저씨	-몇 번의 대화와 만남에서 진정성이 보여 계속 노력하려 하며 적당한 충고와 Tip에 긍정적으로 사고하려함. 나름대로 일리 있음(나 개인에게도)

사례관리 계획지의 각 항목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직접 써주시길 부탁했습니다. 그냥 당신의 생각대로만 적으면 되는지를 재차 확인하시고 술술 써주셨습니다.

사례종료

사례관리로 도와 뜻을 이루었을 때, 당사자의 사정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례관리 종료할 때를 생각합니다. 종료하지 않으면 평가를 통해 더 나은 적극적 욕구를 찾고 살리게 돕습니다.

사례관리 과정기록, 당사자와 주고받은 편지, 문자 메시지, 함께 쓴 일기장.. 이런 사례관리철을 정리하고 묶어 제본합니다. 두 권을 만들어 한 권은 복지관에 보관하고 다른 한 권은 그분에게 드립니다.

1. 당사자 욕구를 선정할 때 [욕구의 복잡성'으로 선정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가지 욕구라도 그 욕구를 해결해 가는 데 여러 가지 복지 자원이 필요 한 사람을 돕는 일이 사례관리입니다. 이미 굳어진, 만성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역량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사례관리 담당 사회복지사의 처지와 역량을 생각하여 잘 도울 수 있는 이를 선정해 도와야 합니다.

2. '강점'을 생동하거나 만드는 일이 아닌, '문제'만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사자가 잘해 왔거나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강점과 역량으로 자기 삶을 살게 도우면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찾아 이를 전문가로서 해결해 주려 하면 어렵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건드릴수록 문제가 더 커지기 쉽고, 다른 문제도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문제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게 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ㅍ강점을 찾고 강점을 살리는 방식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 뜻있게 거들었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돕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도왔는지, 그 도움의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 인생을 알기 어렵습니다. 좋은 의도로 도왔어도 결과가 나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행복을 돕는 게 진정 그와 그 가족에 복된 일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 욕구를 이루게 거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인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합니다. 뜻을 두어야 할 곳에 두고 도와야 합니다. 그곳은 사회복지사다움입니다. 우리 실천에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례관리는 인생관리가 아닙니다. 당사자의 그 일에 한하여, 이를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이루었으면 사례관리 종결.
기관 특성이나 상황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대상자 종결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당사자의 더 나은 욕구(적극적 욕구)를 찾고 이를 이루고 누리게 돕습니다.

사례관리 평가와 실적
평가를 통해 사례관리를 종결하거나 당사자와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울 때에는 '당사자 욕구'와 '자원 활용'을 그 중심에 둡니다.

1. 욕구 평가
복지관 현장에서 사례관리 대상자의 종결은 거의 없습니다. 때가 되면 평가를 통해 당사자의 더 나은 욕구를 찾고 살립니다. 좋은 것을 이루려는 욕구, 강점을 더욱 발휘하고 강화하는 적극적 욕구를 찾아 세워나갑니다.

2. 자원 활용 평가
평가 시기가 되면, 이제 당사자가 활용한 그 자원 중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원(비공식 자원)'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법으로 평가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더욱 단순하고 소박하게 이뤄가게 돕습니다.

욕구 평가 예
정신장애인을 도왔던 예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분의 강점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시 쓰는 강점을 찾았고 이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자료집에 Y 씨가 쓴 시를 소개했습니다. Y 씨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시를 썼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더 큰 조직이나 기관 혹은 지역사회 소식지나 신문에 연재하게 돕습니다. 나아가 시 동호회나 문인회에 가입하게 돕고, 개인 시집 출판하게 돕고, 동네 도서관 같은 곳에서 낭독회를 하게 돕기도 합니다.

자원 활용 평가의 예
반찬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인 자원인 반찬 서비스를 받던 할아버지께 반찬 마실을 제안합니다. 점차 반찬 욕구를 비공식 자원 영역인 '이웃과 함께 만들어 먹고 나누게' 주선해 나아갑니다. 반찬복지도 이루지만 좋은 이웃과 관계도 회복 강화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생신 욕구를 처음에는 '따뜻한 생신밥상'이라는 복지관의 공식 서비스로 돕지만, 이 역시 점차 가족과 이웃이 할머니의 생신을 이루게 도와 나갑니다.

사례관리 실적
'실적 실적' 하지만, 이 실적이라는 게 여전히 우리 현장에서는 대부분 정량평가입니다. 몇 명을 몇 번 만났고, 몇 회 이야기 나눴고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건/명'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실적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기 나름입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 살이를 좇아 실천하고, 이 내용을 적절히 요구받는 양식에 맞추면 됩니다.

사례관리 기록
사회사업가의 사례관리 기록은 당사자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고, 둘레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게 도우려고 어떻게 했는지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사례관리,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례관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과정기록을 이야기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며 매 순간 어떤 마음으로 실천하였는지 밝히려면 정해진 빈칸을 채우는 기록 방신은 한계가 많습니다.
정해진 칸 안에 채워 넣는 요약한 기록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일기 쓰듯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그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당사자와 함께 이것저것 알아보고, 욕구를 해결할만한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 그 과정에서 느낀 생각, 그렇게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욕구를 해결해 가도록 거든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 속 사회복지사의 고뇌와 성찰을 기록합니다.
어느 날 당사자가 찾아와 "내 사례관리철 좀 봅시다!" 한다면, 보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동의해야 합니다.

사례관리철은 담당 사회복지사만 보는 비밀일기장이나 사회복지사들만 서로 돌려보는 비밀문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일방적으로 진단하고 계획하고 평가한 기록들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사례관리철은 당사자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을 활용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 묶음입니다. 만약 아동을 도왔다면 이 사례관리철은 그 아이의 성장기록이기도 합니다. 주고받은 편지나 문자 메시지를 복사 혹은 출력하여 모읍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생각이나 글을 철합니다. 이런저런 행사 소감문도 철합니다. 사진도 붙입니다.되도록 쉬운 말로, 이야기체로 작성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 의도를 읽고 이해합니다. 또한, 자신과 상의하면서 진행한 '내 이야기'이니 당사자 역시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록도 가려서 해야 합니다.
사례관리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아니라면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사안이라도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쓴 기록을 여러 곳에 활용하기
전산입력프로그램, 상담일지, 업무일지 등을 쓸 때 정성스럽게 쓰고, 이를 잘 활용하면 업무가 줄어듭니다.
꾸준히 성실하게 써 놓으면 나중에 소식지에 실을 글, 후원 서신을 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산 프로그램 상담일지를 복사해 붙여 넣고 조금 다듬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일지를 모아 편집하면 평가서, 보고서가 됩니다.

기록은 복지관 사례관리자들 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 "클라이언트 서비스보다 중요하지 않은 일", "필요 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관에서의 기록을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 사례관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업무이다.
명료하고 구체적인 용어 사용하되 비난조의 표현을 피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특수용어, 속어, 축약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관리 기록 예시
정영규 선생님이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할 때 세운 사례관리 목표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요구받는) 행정 서식에 적절히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어르신도 읽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 계획
어르신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팀원들과 사업자문위원님게 슈퍼비전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사례관리 계획을 세워볼 것을 의논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흔쾌히 한 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의 욕구를 사정査定할 때, 기존에 어르신이 표출하신 욕구는 문제에 집중해 있는 소극적 욕구이며 더 큰 차원의 적극적 욕구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자문회의를 통해 배웠기에 어르신계서 소음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연신 말씀하셔서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을 욕구로 보았습니다.
합의된 목표는 '위층 소리가 심해질 경우 이비인후과 혹은 정신과 계열의 검사나 치료를 받기'로, 실천계획은 '낮 동안 어르신께서 지금까지 오시던 운동 꾸준히 하셔서 건장 유지하시기',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찾고 담당 사례관리자와 의논하기'로 설정했습니다.

3부 사례관리 실천 이야기: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 살이를 향한 사례관리 실천 사례

민순희 선생님이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할 때 쓴 김 씨 아주머니 첫 만남 과정 기록입니다.
●●김 씨 아주머니께 복지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쭙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본인은 크게 불편함은 없으나,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집을 보고 놀라고 복지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온 이유가 왠지 집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집안 정리를 함께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가 어찌나 족집게 같으신지요●●. 이에 아주머니께서 하실 수 있는 일과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과천시장애인복지관 이명희 선생님의 '과정기록'도 좋은 예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의도가 보이고, 당사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제안하여 이뤄가는 과정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썼기에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9월 9일 월요일
복지관에서 민희 씨를 만났다. 주말 잠을 좀 주무셨는지 여쭈니 눈물을 보이셨다. 주말 내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다. “내가 집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고행하네.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런 민희 씨와 한 시간 남짓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사도 했으니 한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이웃들과 교인들을 집에 초대해보면 어떻겠냐고 여쭈었다. “저는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 우리 집은 곰팡냄새도 나고 안 좋아서 누가 오고 싶겠어요.” 하셨다.
그러면 곧 추석이고 하니 같이 민희 씨 집에 모여 송편을 만들어 나눠 먹으면 어떻겠냐고 다시 여쭈었다. 그러면 따로 음식을 할 필요도 없으니 괜찮지 않으냐고 다시 여쭈니 그럼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신다. “누구와 함께 갈까요?”라고 물으니 수줍게 “에이~선생님 혼자 오세요.”하신다. 일단 혼자 가기로 약속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누구를 더 초대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고 헤어졌다.

민야래 선생님의 ‘이감사 어르신 이야기’
2013.04.26. 어르신의 욕구표현
퇴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어르신을 뵙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다. 어르신께서는 아직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여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다.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치매어르신들이라 말이 안 통하기는 했지만, 퇴원하면 그마저도 없어져 무척 외로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활동가와 말동무 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해도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 성북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어르신 사정에 대해 말씀 드렸다.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복지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쭤보았다. 건강보험공단 정해정 선생님은 어른신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지만, 노인성질환이나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등급판정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선생님계서는 재판정을 돕겠다면, 복지관에서 대리 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셨다. 감사했다.
어르신에게 정해정 선생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재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날짜와 서류에 서명 받는 일을 진행하였다.

팀스터디 16-09

변화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팀 명	활동지원팀
일 시	2016년 04월 15일(금) 17:00~18:00
발표자	박상아
장 소	활동지원팀 사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변화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장애인활동지원 2인 케어 활성화 될까

급여 기존 75%→100% 산정…1인 케어와 동일
시설 퇴소 예정자 1개월 전에 미리 신청 가능

임시저장
저장목록
목록삭제
도움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6 16:50:46

▲ 중증장애인과 활동보조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장애등급제 개편, '감면 확인' 방안 도출
-중증장애인 실야보호 필요할 순회방문 실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성공적' 성과
-내년까지 장애인연금 추가급여 3만원 인상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케어 부분이 올해부터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인 동시 케어를 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더 적은 임금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1인 케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대상자 신청자격이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됐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단기거주시설 이용 또는 거주 장애인의 경우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장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지원되며, 다만 이중급여 등으로 시설 내에서는 사용 제한을 둔다.

또 시설 퇴소 예정자의 경우도 1개월 전에 미리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개월 전에 할 경우 급여개시 전에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시설퇴소 여부를 확인한 후 급여가 결정된다.

급여량의 경우 기본단가가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여 1등급 106만3000원, 2등급 85만2000원, 3등급 64만2000원, 4등급 43만원으로 인상됐다.

추가급여도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246만4000원, 380~399점인 독거 및 취약가구 72만원, 380점 미만인 독거 및 취약가구 18만원, 출산가구 72만원, 자립준비 18만원, 학교생활 9만1000원 등으로 급여량이 변경됐다.

또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사각지대 방안으로 제시됐던 2인 동시 활동보조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2인이 한 중증장애인을 케어할 경우 활동보조인의 임금도 매우 적었다. 원래 단가 75%의 임금에서 또 다시 75%를 깎여 받는 임금이 4000원 남짓의 수준인 것.

이에 올해부터는 2인이 활동보조를 동시에 해도 100%로 각각 산정 가능하다. 시간은 1회 방문당 3시간 범위로 변화는 없다. 다만 2인 활보 시 수급자 등의 도움을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중증장애인 심야보호 밀착형 순회방문 실시

올해 모형개발, 지자체 보급…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복지부, 맞춤형 복지 '2016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임시저장
저장목록
목록삭제
도움말

메이플뉴스, 기사작성일 : 2016-01-20 11:00:09

▲ 복지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증장애인 심야시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을 개발, 본격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과 합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읍면동의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는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 일일 순회" 방문서비스 제공**=먼저 장애인 관련, 오는 2월까지 중증장애인의 심야시간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 모형 개발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보급한다. 이후 올해 안에 본격 실시할 예정인 것.

'지역사회 밀착형 순회방문서비스'는 지난 2012년 이후 고 김주영 활동가, 오지석씨 등 중증장애인 사망으로 인해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확대 요구가 거세지며 마련된 부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연구에 들어간 바 있다.

지역사회기반의 재가 장애인 상시 활동지원서비스 보충체계를 마련하고 사회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순 활동보조를 넘어 의료적 서비스차원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를 고려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

서비스가 도입되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에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일순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대변·소변처리, 체위변경 등 신변처리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대인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해 화재·응급호출 등 위험상황 감지시 소방서에서 즉각 출동하는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을 1만명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설치, 행동발달증진센터 2개소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복지허브화" 장애인 방문상담 활성화**=읍면동 복지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18년까지 3496개소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화를 목표로 하는 것.

복지인력 6000명 확충분 및 지자체별 여유인력을 활용해 700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도 구성한다.

이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발굴, 장애인·노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상담을 활성화 한다.

또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복합적 욕구가 있는 대상에게 심층상담을 통해 욕구를 확인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취약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제도화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및 의료비 과부담 가구에 본인부담 의료비의 50~70%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한 한시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했으며, 오는 2017년 이후 계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생활보장…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정착화 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원으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의 29%로 확대한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127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높여 현금급여액도 월 평균 51만7000원으로 13.4% 증가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자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 파악, 최저생계비 계측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 지속도 강화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연내 완결할 계획이며, 총 8350억원 환자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유도초음파, 수면내시경, 고가항암제 등 200여개 비급여 항목을 신규로 보험 적용할 계획.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도 올해 차질 없이 이행하며, 이중 장애인 관련으로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와 기준금액을 오는 7월과 10월 각각 인상하며, 보장구 수리료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Ⅰ. 2016년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관련 업무

-보건복지부

□ **가산수당 지원 대상자 관리**

○ **(신청방법)**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을 통해 신청

- "행복e음" 내 신청 화면은 현재 개발 중으로 '16년 6월 중 오픈 예정
  * 정확한 오픈 일정은 추후 공지
- "행복e음" 신청 화면 오픈 전 신청자는 **화면 오픈 후 '지원 개시일'을 설정하고 전송하면 소급 지급이 가능**
  * (예시) 6월 15일에 대상자 전송를 전송하면서 '지원 개시일'을 4월 1일로 설정하고 전송하면 비용 지급 시 4월 1일 서비스 분부터 소급하여 비용을 지급

○ **(1순위 대상자에 대한 우선지원)** 인정조사 점수 440점 이상 대상자는 "행복e음" 신청 화면 오픈 전까지 사회보장정보원이 비용을 지급

- 2순위 대상자는 "행복e음" 신청 화면 오픈 후 전송 필요

□ **가산수당 지급액 산정**

○ '활동보조서비스'만 지원하며, **결제 건별 인정시간 한도 내**에서만 지원
  * 단말기 결제 시 1회 결제시간이 8시간을 초과(예 : 9시간)하더라도 1회 결제 시 최대 인정시간인 8시간까지만 지원

○ 서비스 시작 시간이 3월 16일 00시 이후인 모든 결제 건에 대해 지원하며, **소급결제** 시에도 **서비스 시작일시를 3월 16일 이후로 입력한 건**에 한해 지급

○ 시·도 추가지원 바우처 결제 시에는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
  * 시·도와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 예정

○ **(지원 금액)** 평일 결제에 대해 시간당 680원을 지원하되, 심야·공휴일 결제 시 **가산수가 인정시간에 대해 1,020원을 지원**하고, 이외 시간에 대해서는 680원을 지원

<가산급여 지원 예시>

○ 일반 결제 8시간인 경우 : 680원 × 8시간 = 5,440원 지원

○ 심야·휴일 결제 8시간인 경우 : 1,020원 × 8시간 = 8,160원 지원

○ 심야·휴일 결제 8시간인 경우(일반 2시간, 심야 6시간) :
(680원 × 2시간) + (1,020원 × 6시간) = 1,360원 + 6,120원 = 7,480원 지원

○ **(과오반납)** 활동지원기관이 가산수당이 지급된 원 결제 건을 반납하면, 가산수당도 함께 과오반납 처리되며, 가산수당만 과오반납 하는 것도 가능

□ 가산수당 지급(활동지원기관으로 일괄 지급)

○ 매월 1일 ~ 말일까지의 결제 건을 합산하여 **다음달 5일 정기지급일 익일 이후(통상적으로 6일) 서비스 비용과 별도로 일괄 지급** (☞ 지급구분 : 활동지원가산수당)

- 활동지원기관 급여비용수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활동지원기관은 급여 지급 시 **활동지원인력별 지원 금액 전액을 지급**

○ 월별 지급일(안)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10월분	11월분	12월분
5. 9(월)	6. 8(수)	7. 6(수)	8. 8(월)	9. 6(화)	10. 6(목)	11. 8(화)	12. 6(화)	1. 6(금)

□ 가산수당 정산(월정산 / 연말정산)

○ 매월 정산서 제공 시 가산수당 지급내역을 별도 항목으로 제공

- 정산항목에 “활동지원 가산수당” 항목 추가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내역 조회(제공기관 담당자용)

❑ 화면 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제공기관별 가산수당 지급내역조회

▌화면개요▐

● 제공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별로 가산수당 지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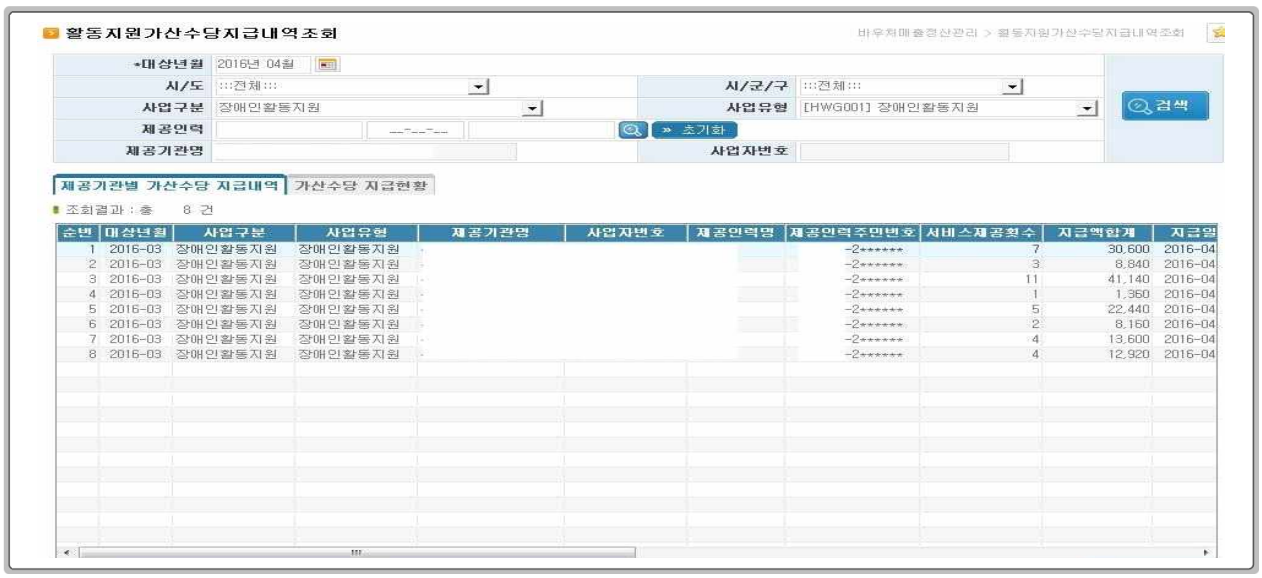

○ 대상연월을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가산수당 지원 제공인력 정보가 조회

○ 가산수당이 지원되는 제공인력의 결제 횟수, 지급액, 지급일자 정보가 조회

○ 제공인력을 선택하고 '가산수당 지급현황' 탭을 클릭하면 해당 제공인력의 이용 내역이 조회 – 결제승인번호, 시작시간, 종료시간, 지급액 등 상세정보가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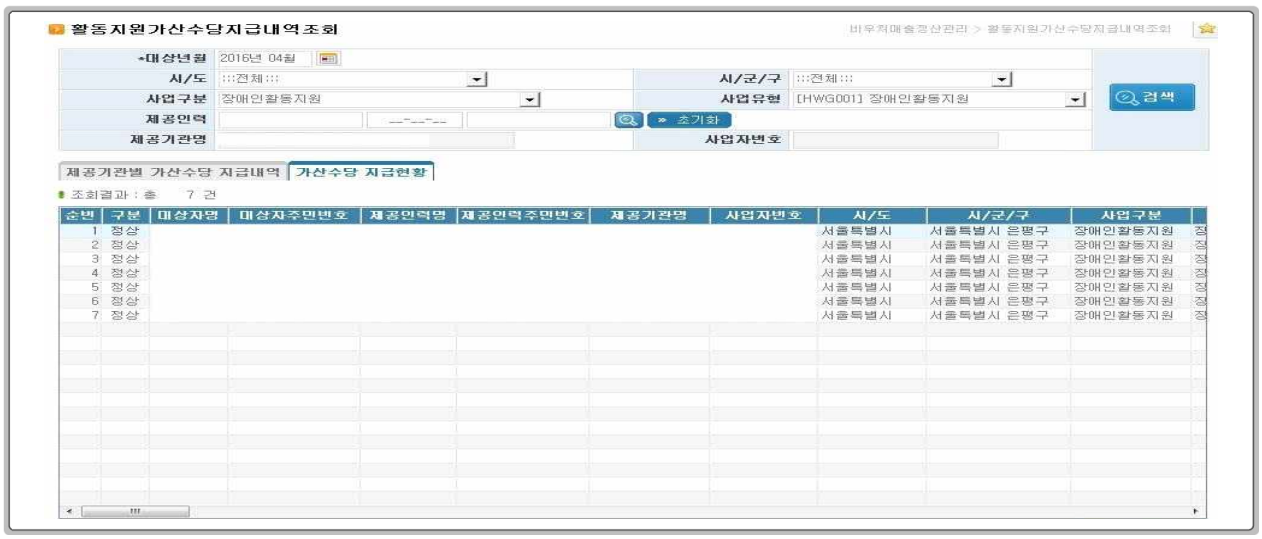

가산수당 지급내역 조회(제공기관 담당자용)

❑ 화면 경로 : 매출및정산 >> 바우처매출정산관리 >> 가산수당지급내역조회

▌화면개요 ▐

● 대상자별로 가산수당 지급내역을 조회하는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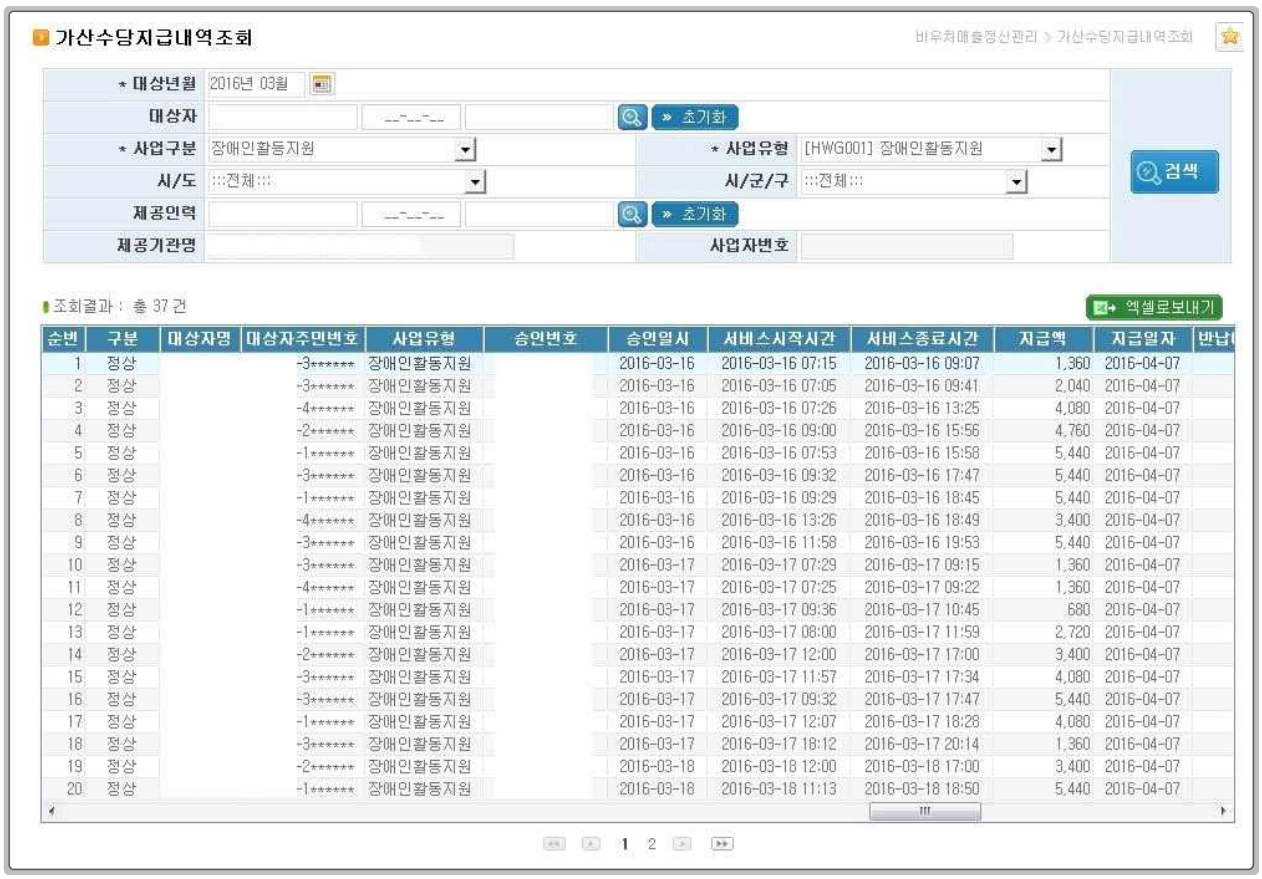

○ 대상연월을 선택하고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대상자별 가산수당 지원 정보가 조회

○ 대상자별 이용내역 중 가산수당이 지원된 내역이 조회

Ⅱ.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수당 도입에 따른 정책제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협의체

1. 제안 배경

□ 1차 정책제안(2015. 12. 8)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시감독 문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심상정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주휴수당을 부족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 지적('15.4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약 900여개 중 의원실과 협의하여 70개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15. 7월말 전국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 수시감독토록 지시하였고, 11월말까지 감독을 완료한 후 시정토록하거나, 미시정시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함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주요내용>

구 분	편법이나 불법 의심 내용
최저임금 미달 지급 (주휴수당 부족지급)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 6,696원(5,580+1,116)이어야 하는데 6,608원을 지급(복지부 단가의 75%)하여 88원이 미달 * 1주 3,520원이 부족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초과근무를 시키지 않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 제안사항

○ 고용노동부에서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시감독에서 나타난 최저임금 미달, 연차수당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점들은 사업수행기관의 문제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주휴 및 연차수당 등 정당한 수당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활동지원급여 및 지원기관운영비 재설정을 통한 제도 개선 필요

○ 활동지원인 급여 및 지원기관 운영비 재설정을 통해 발생되는 추경예산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6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필요

□ 2차 정책제안(2015. 12. 29)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비현실적인 서비스 단가로 인한 장애인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애인 선택권 및 서비스의 질 문제, 활동보조인 측면에서의 유사 돌봄 서비스 인건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 의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문제,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각종 법정수당(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등) 과 5대 보험적용, 퇴직금 지급 등 정당한 수당지급 및 근로기준법 준수의 어려움 설명

□ 요구사항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1차적 책임 주체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 9,000원으로는 장애인 이용자, 활동보조인, 활동지원기관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비스 단가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함

○ 또한 2016년부터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 9,000원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장애인,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한 정책 대안 제시를 요청함

○ 2015년 12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대표기관의 회장 및 사무총장(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보건복지부 방문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수시감독 문제 개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현실화 등 정책제안이 이루어짐

○ 이러한 정책제안을 통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 안내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사업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최중증장애인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중증장애인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산수당 도입은 긍정적인 정책으로 사료됨

○ 그러나 가산수당 도입에 앞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자문단 회의”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수행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책실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되고 정책실행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가산수당 도입에 따른 5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증가 등 기관의 사례제시를 통해 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사례제시 도표 생략)

3. 정책 제안사항

○ 2016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수행기관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당한 수당지급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기간(2016년 3월 16일 ~ 12월 31일)동안 소요 예상되는 가산수당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차원의 예산확보를 통한 제도 실행 필요

○ 현행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된 장애인 이용자, 활동보조인, 제공기관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상황 해결을 위한 1만 원 이상의 서비스 단가 현실화를 위한 예산확보 및 2017년도 예산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제도 및 사업수행에 있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개선 자문단 회의”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수행을 대표하는 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제도 및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 강화

○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가산수당 지급과 관련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반, 심야, 공휴일 가산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운영비 활용 불가” 삭제 및 가산수당 지급 보류

팀스터디 16-10

2016 행복에 관한 연구

팀 명	운영지원팀
일 시	2016년 11월 23일
발표자	한 다 혜
장 소	남동장애인복지관 대회의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2016 행복에 관한 연구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만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정신과 의사 로버트 월딩어는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75년 동안 이루어진 성인발달 연구의 총책임자로서 월딩어는 사상 최초로 행복과 만족감에 관한 데이터를 손에 쥔 인물입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성인발달 연구에서 얻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과 더불어, 성취와 장수하는 삶을 위한 몇 가지 실용적이고 오래된 지혜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흔하디 흔한 주제인 좋은 삶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삶이란 것에 대해 연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년, 10년 정도의 프로젝트로는, 인간의 삶을 측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주장의 근거로 들고 온 연구에는 역으로 아주 큰 의미가 실려 있습니다.
무려 1920년대에 시작하여 75년 동안 이어져온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두 부류의 인간군의 삶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하나는 하버드 2학년생들, 다른 한쪽은 빈민가에서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전자는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후자는 완전 그 반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드러났는데 바로 '인간과의 관계' 였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태생이 어떠하든,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많이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관계가 얕고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연봉, 직위, 명예에 관계없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가 많았습니다. 또한 관계의 수는 중요하지 않았고, 질이 중요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피상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행복한 삶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생각과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혹은 어떤 경로로 만난 지인이라도 좋으니, 그러한 깊은 인간관계로부터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있던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설령 시대가 발달해서 물질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고, 인간성이 축소되더라도 결국 최후에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결정해주는 것은 자신이 이뤄왔던, 쌓아왔던 것들이 아니라, 함께 삶의 길을 걸어온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바쁘다 바쁘다 라는 말 대신, 시간을 내어 전화라도 한 통, 식사라도 한 번 함께 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팀스터디 16-11

정신장애의 이해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6년 04월 22일(금) 17:00~18:00
발표자	강명진
장 소	직업지원팀 사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정신장애의 이해

정신질환의 역사

정신질환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대 중국과 인도,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도 지금의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을 연상케 하는 증상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정신장애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우리나라 전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30.2%로 국민 1/3이 한 번쯤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의미히다. 혹자는 모든 정신장애의 유병률을 합치면 대략 60% 정도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100명 중 60명꼴로 현대인들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신장애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카페 참조]

정신질환의 정의

정신질환은 사람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말한다.

정신질환의 분류

1. 기질성 정신질환 : 명백한 육체적인 이상이 있는 질환으로 치매, 알츠하이머 등이 해당된다.알코올 약물에 의한 정신병 상태
2. 기능성 정신질환 : 기질성을 제외한 모든 정신질환으로 조현병(구 명칭 :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 장애, 편집증, 각종증후군이 해당된다.
3. 신경증, 인격이상 및 기타의 비정신병성 정신장애 :신경증, 인격이상, 성적도착과 성적장애, 알코올 의존, 약물의존, 급성스트레스 반응, 부적응반응, 기타 미분류 행위장애, 정신지체

정신질환의 실제 병명들

1. 조현병 : 도파민 과다로 인행 생기는 대표적인 정신질환으로 현실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에 있는 상태를 지칭(구 명칭 : 정신분열증)
2. 중독 : 심각한 의존성을 의미하며 물질중독(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과 비물질적 중독(도박 중독, 성 중독, 일 중독 등)으로 나뉜다
3. 불안증 : 정사를 담당하는 외신경 내의 신경전달물질의 부족 또는 과다로 발생한 정신질환(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4. 우울증/조울증/양극성 장애 : 우울한 상태/우울증이 깊어지면 반대현상으로 조증이 생김/조증과 우울증상태를 반복하는 정신질환
5. 기타 : ADHD(집중력 결핍 장애), 치매, 할츠하이머

정신질환 유형

1. 정동장애 : 우울증(기분저하, 자책감, 의욕상실이 두드러짐), 조울증(크게 들떴다가 저하되는 증세가 반복됨), 조증(조울증 등 들뜨는 상태가 두드러짐)
2. 신체형 장애 : 신체화장애(병이 없는데도 각종 통증과 소화기장애, 두통을 호소함), 전환장애(병 없이 심리적 갈등으로 온몸이 마비되고 감각이 없어짐), 건강염려증(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체 및 감각 이상을 호소함)
3. 인격장애
4. 정신분열성 장애(조현병)
5.충동조절장애 - 도박, 쇼핑, 중독, 방화, 폭발성 장애 등
6. 불안장애 :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 질환, 공황장애(집 이외의 낯선 곳이 두려운 공포장애, 대부분 광장공포증이 동반됨), 강박장애(의지와 무관하게 특정 생각과 행동을 반복함, 결벽증, 정리벽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사고 경험, 목격 이후 반복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대인관계가 힘들어짐)
7. 적응장애 : 어떤 스트레스나 개인적으로 충격적 사건을 겪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서적 또는 행동적 부적응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 불안동반 적응장애, 품행장애
8. 해리성 장애 : 통합되어 있던 개인의 기억, 의식, 정체감, 지각기능 등이 단절되어 와해된 행동상태
9. 성격장애 :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해 청소년기 또는 초기 성인에 공고화된 개인의 병리적인 정서, 사고 및 행동 양식으로 시간과 상황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며 좀처럼 변하지 않음
10. 학습장애 : 뇌 기능 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생리적 기능의 변화로 인해 발생
11. 망상장애 : 망상이 주된 증상인 정신과적 질환
12. 수면장애 :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음에도 낮 동안에 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또는 수면리듬이 흐트러져 있어서 잠자거나 깨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포함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
13. 섭식장애 :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과식증, 비만을 포함한 식이 행동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동과 생각의 문제
14. 강박장애 : 강박적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을 주로 보이는 불안 장애
15 성욕장애 : 성적 활동에 대한 욕구가 결핍되거나 성적인 접촉을 피하는 경우

정신질환의 치료

- 약물치료 :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통한 방법
- 정신치료 : 정신분석, 행동치료, 인지치료, 가족치료, 부부치료 등을 통한 방법
- 기타치료 : 최면요법, 경두개자기자극술, 뉴로피드백, 안구민감성소실요법, 놀이

치료, 싸이코드라마, 정기경련치료, 광치료 등

http://ydrich.tistory.com

1. 인식향상 단계 : 정신분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것은 마치 마음의 감기와 같다.
2. 지식향상 단계 :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도 정신분열 증상일 수 있다. 빨리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다.
3. 생각변화 단계 : 남들 눈치가 보여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게 망설여지는데, rmfoeh 지금 이렇게 힘든 것보다 도움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4. 행동변화 단계 : 내가 힘든데 남들 인식이 뭐가 중요해. 다들 한 번쯤은 겪는다는데 일단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

모든 병은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으므로 더욱 빠른 치료를 요함.

장애의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의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 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정신장애 등급 기준

1. 1급

① **정신분열**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이상행동 등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과 같은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② GAF(Global Assessment Function)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능력장애 판정기준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등상이 동반되기도 하며

③ 기분, 행동, 의욕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반복되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능력장애 판정기준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④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 2급

① 정신분열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이상행동 등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과 같

은 증상이 있으며, 중증도 이상의 인격변화가 있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해 능력장애 판정기준 3항목이 상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이상 50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 행동, 의욕 및 사고장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한 능력장애 판정기준이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GAF척도 점수가 41이상 50이하인 사람

③ 만성적인 분열형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 3급

① 정신분열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이상행동 등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와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로하고 GAF척도 점수가 51이상 60이하인 사람

②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분, 행동, 의욕 및 사고장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 능력장애 판정기준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하여 GAF척도 점수가 51~60이하인 사람

③ 분열성 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분열증(조현병)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함. 또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지만 최근에 약물요법 등 치료법에 상당한 진척이 있어서 조기진단과 적극적인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 함.

1. 정신분열증 원인 : 정신분열증 자체를 어떠한 이유로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양한 원인을 가진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함.

① 유전적인 원인
② 뇌 구조의 이상
③ 뇌 기능의 이상
④ 신경전달물질 이상

2. 정신분열증 증상 : 정신분열증에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은 망각과 환각임. 망상은 피해망상, 과대망상, 신체적 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음. 환각은 가장 흔한 증상은 환청이며 와해된 언어와 행동을 보이고 움직임과 의사소통이 심하게 둔화되는 긴장증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함. 또한 충동조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은 환자는 흔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자살시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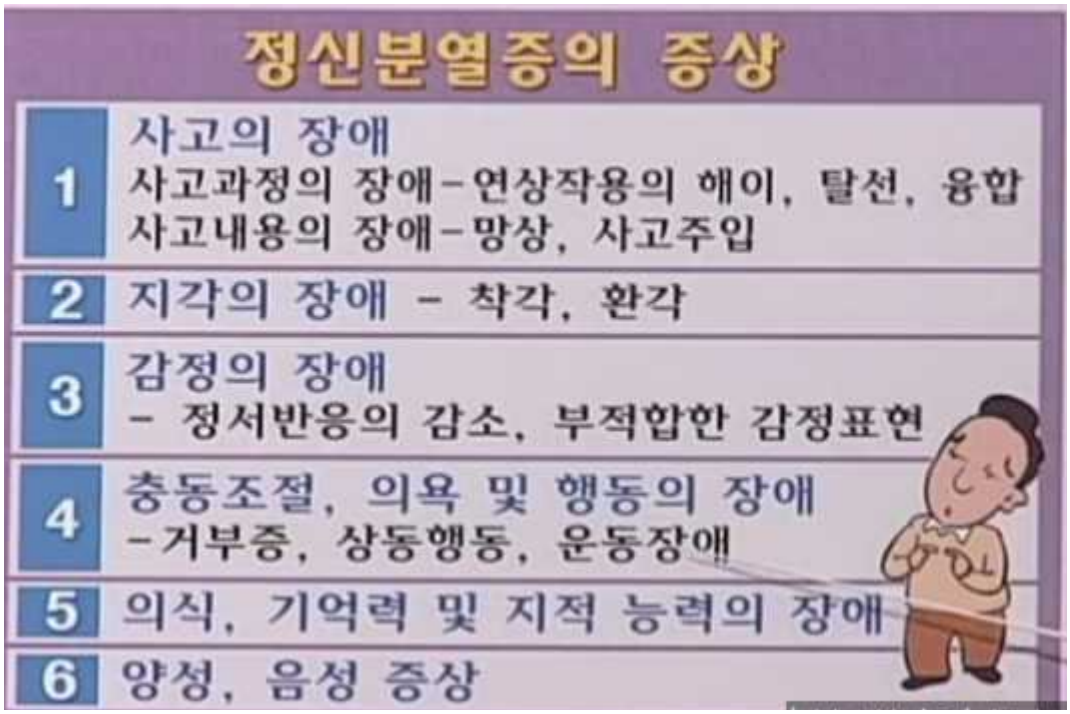

3.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

① 게으르고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거나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한다.
② 대인관계가 안 좋아져 사람과의 유대 관계가 끊어진다.
③ 공상에 빠져 혼자 멍때리는 시간이 많아진다.
④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의 능률이 떨어지며 삶의 질이 떨어진다.
⑤ 이유 없이 난폭해지고 참을성이 없어진다.
⑥ 몸이 이유 없이 아프다.
⑦ 병원에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아픈 증세가 있다며 호소한다.
⑧ 정신집중이 잘 안된다.

4. 정신분열증 후 증상

① 전체적인 태도가 달라진다.
② 헛소리를 듣거나 헛것을 본다.
③ 엉뚱한 망상이 생긴다.
④ 언행이 달라진다.
⑤ 몸의 움직임이 전과 달라진다.
⑥ 환자 본인은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⑦ 생각, 행동, 감정, 의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5. 정신분열증 치료

항정신병 약물을 중심으로 한 약물치료가 중심이지만 정신치료를 포함한 사회심리

적 치료접근이 통합될 때 더 나은 치료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함.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들은 직업이나 자아실현의 욕구가 적어지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고 함. 이런 상태의 환자들에겐 사회심리적 치료가 그들이 가진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함.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연습하는 사회심리적 치료는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도와주어 재발을 막아주는 효과 또한 입증되었다고 함.

참고자료 [아직은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건네는 편지]

환청 체험

정신장애와 직업재활 관련 이론

1.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행동이 병리학적으로 특징 지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조건(기질성 뇌증후군, 조현병, 반복적 우울증, 조울증, 망상장애, 기타 정신병)으로 인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정신적 기능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신장애는 질병자체의 활발한 진행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기타의 사회적인 기능의 파손까지 포함하여 증상이 없어진 이후에도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문인숙&양옥경, 1991).

이러한 정신장애인의 직업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신장애의 증상인 정신병의 증상, 무감동, 철수, 인지적 장애와 취업을 위한 학습이나 경험부족, 의사결정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부적절한 직업을 선택하여 현실적인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둘째, 정신장애의 발병시기가 대체적으로 직업을 갖는 시기와 비슷하여 다양한 구직기술습득 및 경험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병의 경과에 따른 주의력, 집중력, 인지기능의 악화로 인해 구직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 부족한다.

셋째, 직장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하더라도 작업수행과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직업유지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부적절한 언어, 행동, 의존성, 문제해결의 부족,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능력, 증상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 등으로 직업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김효정, 2004).

따라서 직업재활 과정 전반을 통해 취업 시도 및 유지에 필요한 적응기술(자기관리기술, 도구사용기술, 대인관계 기술, 작업기술 등)을 익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이로 반복적인 훈련과 습득한 기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홍성진, 2005).

2.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

이금진(2000, 재인용)은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만성정신질환의 치료결과이면서 동시에 치료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며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정신장애인에게 일은 동기, 자기확신, 구조적 활동, 관계성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일은 포괄적인 정신과적 치료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고, 실제적 성취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M.D. Bell, P.H. Lyesaker & R.M. Milstein, 1996). 일은 정신장애인의 자아존중감과 자아개념을 항진시켜 너무 쉽게 '환자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혹은 타인이 성인에게 기대하고 있는 역할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직업적인 성공과 직업에 대한 만족은 정신건강을 향상시킨다.

둘째, 증상의 감소효과를 가져온다. 정신장애인이 일을 한 경우 재 입원률이 낮고 일에 대한 참여가 증상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임금을 받는 일의 경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재 입원률이 낮았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경우가 양성증상의 감소가 더 많았음을 보여준다(M.D. Bell, P.H. Lyesaker & R.M. Milstein, 1996).

셋째, 정신장애인의 총체적 기술의 척도가 된다. 일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게 광범위한 기술의획득과 활용이 요구되는데, 사회적 기술 직업기술 대처기술과 증상관리 기술 등이다(R.P. Liberman, 1998). 이런 기술들이 부족한 경우 직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재활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내의 주류(mainstream)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의 지표가 된다(R.P. Liberman, 1998). 직업이란 그 개인이 지역사회내의 생산적인 구성원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기여자로 역할로 바꿀 수 있으며(이상, 1998),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독립체로서 주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재활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활과 치료에 기여하는 면을 가질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직상담 시 확인할 내용

1. 자신의 병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2. 최초 발병 시기, 발병 시 증상, 입원치료 여부, 재입원 횟수, 최근 입원치료 시기
3. 재발징후를 인식할 수 있는가?
4.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어떤 것이며, 부작용은 있는가?
5.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6. 복용 약물 용량

7. 스스로 약물을 관리할 수 있는가?
8. 피로 또는 무력감을 느끼는가?
9. 식욕감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10. 수면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11. 최근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가?
12. 가족 또는 동료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가장 지지해 주는 사람 등)
13. 음주나 흡연은 얼마나 하는가?
14.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팀스터디 16-12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인권의 이해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6년 05월 26일(목) 17:00~18:00
발표자	강명진
장 소	직업지원팀 사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인권의 이해

▣ 장애인 학대 신고

Q1.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가 하나요?

- A. 장애인 학대 신고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직군의 종사자는 학대 상황을 발견했을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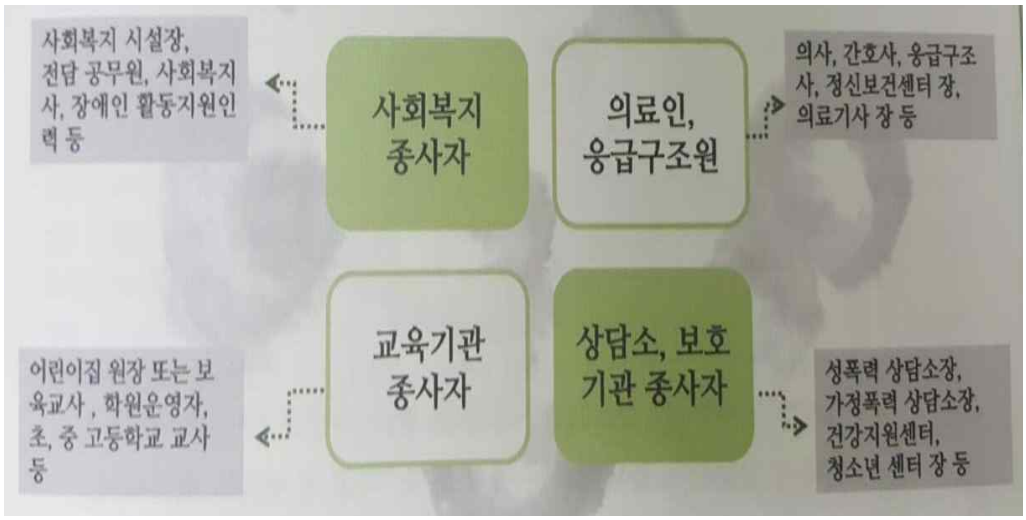

Q2.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꼭 해야만 하나요?

- A. 네! 장애인복지법에서 신고의무자는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 4 제2항). 신고의무자임에도 '직무상 장애인학대의 발생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신고의무자의 신분은 보장되나요?

- A. 네! 장애인복지법은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 4 제3항).

Q4.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신고해야 하면 되나요?

- A.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2017년 설립예정), 수사기관(11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5364)

Q5. 신고 시 주의사항은?

- A.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고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며,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는 등 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과 진술 오염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 염전 노예 사건

> 전남 신안군 일대의 염전에서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폭행과 학대 속에서 중노동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예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 사실은 지역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으나 누구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결국 한 장애인이 어머니에게 '살려 달라'는 편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일제 수색으로 수백 명의 장애인 피해자가 발견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숙인이나 무연고자로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는 직업소개소에 속아 염전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몇 피해자들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섬이라는 환경 상 탈출이 쉽지 않았고, **주민들이 탈출하려는 인부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바람에** 번번이 다시 잡혀가 구타를 당하곤 했다.

⇒ 염전 내 장애인 64명 발견, 장애인 권익 옹호 체계에 대한 필요성 제기됨. 염전 사건,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사건이 UN에 보고되었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

⇒ 제1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의견

> 위원회는 장애인이 여전히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폭력, 학대 및 착취에 노출되어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한 장애인을 위한 쉼터가 존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

▣ 학대받지 않을 장애인의 권리

■ 인권

> 성별, 인종,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헌법 10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의 1

>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세계인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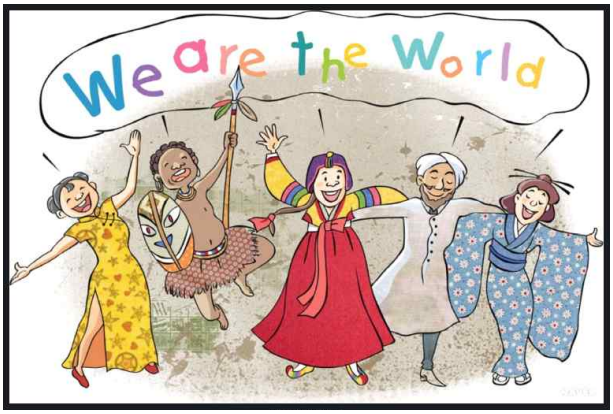

세계인권선언은 세상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준을 보인 선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인권 무시, 인권의 존중과 평화 확보 사이의 깊은 관계를 고려하여 기본적 인권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택되었다. 1948년 6월 국제 연합 인권 위원회에 의해 선언문이 완성되었고, 같은 해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구제 연합 총회에서 찬성한 나라는 50개국, 8개국이 기권하여 채택되었다. 선포될 당시 58개 전체 회원국이 각자 처해 있는 서로 다른 경제 발전 수준과 다양한 이데올로기, 정치 체제, 종교•문화적 배경을 뛰어넘어 세계의 주요 법체계와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 내재된 보편적 가치를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제1조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2조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로 예속된 삶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 매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제24조	모든 사람에게는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 장애인권리협약(CRPD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장애인권리협약은 71개국의 당사국에 의해 2006년 12월 13일 채택되어 2008년 5월 3일 발효된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로, 신체 장애,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2001년 53차 UN 총회에서 멕시코의 빈센트 폭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 2002년에 총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약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까지 총 8차에 걸쳐 열린 회의와 협상을 통하여 완성되어 마침내 2006년 12월 13일에 유엔 총회에서 선택의정서와 함께 만장일치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쳤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증진, 보호,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양자 간 혹은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당사국을 위한 장애포괄적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을 장애에 적용하여, 일반적인 인권의 내용을 장애인과 관련하여 구체화하고 현존하는 장애관련 국제법들을 명료하게 하고 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이다.

① 내용

1.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2. 차별 금지
3.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통합
4. 인간의 다양성, 속성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5. 기회의 평등
6. 접근성
7. 남녀 평등
8. 장애아동의 발전 역량에 대한 존중 및 장애아동의 정체성 유지권리의 존중

② 비준국가의 일반적 의무

- 필요한 경우 입법 및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법, 관습, 또는 관행을 개정하거나 폐지한다.
- 모든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를 포함시킨다.
-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관행을 억제한다.
- 모든 개인, 단체 또는 사기업에 의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학대 관련 조항

> 제16조 모든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
> 1. 당사국은 가정 내에외서 성별을 이유로 한 유형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밖의 조치를 취한다.
> 2.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및 장애를 고려하여 이러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은 공적 사적 기관들에게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 편의제공'을 할 것을 요구하며, 협약의 서문에서 장애가 '진화하는 개념'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는 손상을 가진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태도적 환경적 장벽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이러한 장벽들은 '장애인이 타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한다.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이들 의무를 장애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개발 및 전 세계 장애인들의 참여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대책들을 강조한다. 또한 장애라는 것이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문제로서 다루어질 사안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을 말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0일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한편 협약의 내용에 따른 국내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얼마 전,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한국수어법을 발의했는데, 장애인권리협약이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발의 이유로 제시되기도 하다.

⑤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장애는 발전하는 개념입니다. 이 협약에서는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

함한다."고 하여 장애의 개념에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태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의학적 손상만을 근거로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법 보다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다.

이 밖에도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접근권, 자립생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시킬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장애인권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계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성년후견제가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성년후견제와 같은 대리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하고, 조력의사결정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이 같은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제가 올바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⑥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진전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일반적인 권고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심의하는 회의를 매년 2차례 개최하고 회의마다 3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금년에도 오는 6월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뉴욕 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개최된다.

⑦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된 당사국 보고서에는 그 나라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기기 쉽다. 그리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 보고서만으로 그 나라에 협약 이행을 권고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각국의 시민단체에서는 당사국 보고서의 문제점과 미진한 협약 이행 실태를 꼬집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회의 사이에 민간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민간보고서와 발표 내용에 따라 당사국의 미진한 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질타하기도 한다.

⑧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당사국에 강제할 수 있을까?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힘은 없다. 그러나 당사국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나라는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국제적

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 또한 국제기구의 권고는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얼마 전 정부가 해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전교조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했는데, 이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반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 학대의 이해

■ 장애인 학대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애인복지법 제2조 3항)

■ 장애인학대의 특성

①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가정 내 장애인 시설 내, 직장,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②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 복지서비스 제공자, 직장 동료, 이웃 등 장애인과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사람이 장애인의 가장 좋은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③ 학대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학대임에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유기•방임에 놓은 장애인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습니까?

④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장애인은 피해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⑤ 학대를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로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 학대 유형

■ 신체적 폭력 :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① 신체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때리는 행위
② 꼬집기, 할퀴기, 짓누르기, 밟기, 물기, 꺾기 등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③ 불, 담뱃불 등 뜨거운 물건이나 차가운 물건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
④ 장애인을 묶거나 가두는 행위
⑤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신체를 통제하거나 건강을 저해하는 행위
⑥ 이리저리 끌고 다니거나 짐짝처럼 마구 다루는 행위
⑦ 행동 교정을 이유로 한 신체적 체벌

※ 이럴 경우 신체적 폭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체에 상처, 멍, 묶인 자국, 흉터가 있으나 보호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②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상처, 멍, 묶인 자국이나 흉터, 출혈이 있습니다.
③ 치아의 결손, 잇몸의 출혈이나 붓기
④ 관절의 탈구나 붓기 혹은 골절
⑤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위축됨

■ 성적 폭력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

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갖는 경우,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②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 강제로 입맞춤, 포옹, 애무 등을 하는 경우
③ 장애인에게 자신의 성적 부위 등을 만지게 하거나 애무를 요구하는 경우
④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⑤ 음란물이나 타인의 음란물을 강제 혹은 의사와 상관없이 보게 하는 경우
⑥ 알몸이나 신체의 일부를 의사와 상관없이 노출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⑦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이용하거나 상애인을 속여 위와 같은 성적 행위들을 하게 하는 경우

※ 이럴 경우 성적 폭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합니다.
②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③ 성기나 항문, 구강 주변에 상처나 출혈이 있습니다.
④ 갑자기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과도한 자위행위를 합니다.

■ 정신적, 정서적 폭력 :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장애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① 외부 접촉의 배제, 소외시킴, 따돌림 등 장애인이 정서적인 소외를 느끼게 하는 경우
② 모욕, 희롱, 조롱, 굴욕, 비난, 비하, 경멸 등 언어를 통하여 장애인을 정신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
③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 폭언 상스럽거나 혐오스러운 말로 고통을 주는 경우
④ 강압, 강제, 협박, 통제, 위협 등 장애인에게 정신적인 억압을 가하는 경우
⑤ 내쫓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⑥ 폭력적이거나 엽기적인 장면 또는 영상을 보게 하는 경우
⑦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특정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⑧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거나 벌을 세우는 경우

※ 이럴 경우 정신•정서적 폭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정신적•정서적 학대의 피해자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냅니다.
② 악몽을 꾸거나 수면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③ 종종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④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소극적인 경우, 타인을 회피하는 경우
⑤ 갑작스럽게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이는 등 학대 가해자의 행위를 모방할 수 있습니다.

■ 가혹행위 :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①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② 신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거나 무리한 일(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③ 말을 듣지 않는다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경우
④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⑤ 잠을 재우지 않는 경우

※ 이럴 경우 가혹행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노동으로 인하여 의복이 흙이나 기름때 등으로 오염돼 있거나 손발, 손톱 등에 흙, 찌든 대 등이 끼어있을 수 있습니다.
② 구토, 설사, 복통 등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③ 근육통, 붓기 등 신체에 손상이나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지나치게 피로해 하거나 살이 빠져 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착취 :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①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인연금을 가로채는 경우
② 재산을 관리해 주겠다며 마음대로 장애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③ 장애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가져가는 경우
④ 장애인을 협박하거나 속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⑤ 장애인의 재산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
⑥ 장애인의 부동산 등 재산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⑦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⑧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위조하거나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⑨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는 경우
⑩ 무임금 또는 저임금 노동
※ 가족이나 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나 임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 이럴 경우 경제적 착취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은행 계좌의 잔액이 갑작스럽게 감소하는 경우
② 금융거래 내용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매주 소액을 인출하다가 며칠 만에 거액이 인출되는 경우)
③ 갑작스럽게 지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④ 돈이나 값어치 있는 소유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
⑤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도 형편없는 돌봄이 제공되는 경우
⑥ 정기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의식주가 형편없는 경우
⑦ 본인이 임금을 얼마 받는지 모르고 있거나 타인이 관리해 준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 유기, 방임 :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저버리는 행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① 보호자가 장애인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② 보호자가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경우
③ 필요한 치료를 해 주지 않는 경우
④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보호자가 직접 치료하겠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경우
⑤ 사회적인 돌봄 혹은 교육 서비스의 제한
⑥ 필요한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⑦ 상한 음식을 주는 경우
⑧ 보호자가 청결과 위생의 유지 등 기본적인 신변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
⑨ 보호자가 장애인이 부적절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하는 경우

※ 이럴 경우 유기•방임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①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있는 경우
②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③ 장애인의 건강이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경우
④ 가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회서비스 연계를 거절하는 경우

▣ 장애인학대 처벌기준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 7 제1호)

■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2항, 제59조의 7 제2호)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2항, 제59조의 7 제2호)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 7 제3호)

■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 7 제4호)

■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3항 제

2호, 제59조의 7 제5호)

■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느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 7 제5호)

■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 7 제7호)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 86조 제5항 제2호, 제59조의 7 제8호)

▣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종사자의 역할

①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식한다.
- 장애인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입니다.

② 장애인 인권교육/학대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스스로의 인권감수성을 돌아보고 높입니다.

※ 장애인비하 표현사용하지 않기 등 언어적 노력이 요구됨.
(생활보호**대상**자→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의 개념이 ICIDH 방식(손상, 장애, 핸디캡에 관한 국제 분류)에서 상황적 장애까지 고려한 ICIDH-2를 거쳐 상황적 요인과 역동성을 보다 강조한 ICF 방식으로 변화함.

③ 당사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힘을 배양한다.
- 기분 좋은 인권침해 에방을 위한 방법입니다.

④ 학대의 징후를 유심히 관찰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는다.
- 학대 신고 : 수사기관,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
- 상담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장애인인권센터

⑤ 장애를 이유로 한 따돌림, 비하발언 등 정서적 학대를 유념한다.
- 친구들 사이의 일이 아닌 명백한 정서적 학대입니다.

⑥ 이용자 간 학대에 유념한다.
-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학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대의 피해자가 학습된 학대로 인하여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생각해 보기

■ 학대 사례

① 남원 생활시설 신체적 폭력 사례

남원 장애인 상습폭행 사건이 주는 시사점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전문가·치료사 현장 배치 필요

글자크게

▲남원 '광화의 집'에서 생활재활교사인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발차기로 위협하는 장면. ⓒ 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 장애인 상습폭행 생활재활교사 무더기 적발

최근 남원시 소재 지적장애인 시설 평화의 집 인권침해가 보도되면서 한국장총을 비롯한 장애계는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실효성 있는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와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나도 이번 사건과 같이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모습을 뉴스로 접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 사회복지사의 인권, 발달장애 전문가나 치료사들을 복지관, 시설 등의 현장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자기옹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관, 시설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 중심의 자기옹호 지원방향에 혼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제공자 중심의 지원이 행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등 이용자 중심의 자기옹호 지원 사례를 복지관, 시설 등 민간차원에서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옹호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기에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에서 얻은 노하우를 국가와 지자체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지원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꾸준히 하지 않는 한 남원판 도가니는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한번 봐야겠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인권 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에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자선적·자발적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사회복지사의 권리 및 신분을 보장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제5조는 사회복지사 인권에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4년 10월경, 사회복지사의 직무 상 권리보장과 적정 보수수준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 권고는 아직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사회복지사 하면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지, '사회복지사도 한계가 있는 인간이고 권리의 주체이며 엄연한 직업이다'고 인식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사회복지사는 쉽게 지치는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어 자신의 직업에서 자긍심을 갖기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게 되고, 발달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여지는 더욱 커진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사회복지사업법 5조 개정 등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엄연한 직업으로 존중받는 것이 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발달장애인을 폭행한 사회복지사를 두둔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폭행한 사회복지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회원에서 영구 제명하며, 법원에서 발달장애의 특성과 발달장애인과 시설내 직원과의 위계관계를 고려, 상식적이고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일반학급 내 정신적•정서적 학대 사례

에이블뉴스,장애인뉴스

5월 24일 오전 08:40

소식받기

장애자녀 집단따돌림 법적 구제, 부모의 좌절

"인권위 결정이 법원 판결에 치명적일 수도 있어"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친구들로부터 심한 따돌림을 받았다. 친구들이 놀림에 대항하여 싸우게 되면 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되었고, 보복을 위해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는 나쁜 아이가 되었다.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을 받는 경우, 내가 듣는 한 단어만으로도 나는 피가 거꾸로 솟고,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지만, 누구도 나의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았고,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잘못으로 지적되었다.

나는 초등학교 시절의 장래 희망이 거지였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나는 어떤 직업도 가질 수가 없을 것이고, 어느 여성도 나와 가족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나는 매일 세상을 한탄하며 구걸을 하여 눈물이 섞인 찬밥을 먹는 상상을 했었다.

나는 며칠 전 여주에 사는 오필승(가명)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 오필승은 지금은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에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다고 했다. 나는 당사자로서는 눈이 뒤집히고, 세상에 살고 싶지 않으며, 감정을 도저히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내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태연하고 이성적이며 그 정도는 감수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③ 본관 성인 발달장애인 이용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 나의 관점은?

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언어적 폭력과 개입과 인권존중 사이의 딜레마를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듦.

② 변화하는 패러다임 안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각자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의 촉진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가치를 잘 정립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할 듯함. 어려운 과정이지만 우리의 고민이 후배 실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함.

③ 기존에 이용인들에게 개입하던 방식, 대하는 태도들도 장애인의 인권이나 권리를 고려하여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임.

④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도리이므로 아직은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장애인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사회적 배려와 희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됨.

팀스터디 16-13

맞춤형 전달체계의 과제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팀 명	직업지원팀
일 시	2016년 11월 17일(목) 17:00~18:00
발표자	강명진
장 소	직업지원팀 사무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맞춤형 전달체계의 과제와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김용득(성공회대)

1. 장애등급제 폐지(개편)의 배경과 경과

장애등록 및 등급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의 역사이다. 1988년 11월에 전국적으로 장애인등록을 시작했다. 장애인등록제도 시행당시 장애유형은 5개 유형(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5개 유형(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이 추가되었고, 2003년에 다시 5개 유형(호흡기, 간, 장루요루, 안면, 간질장애[1])이 추가되어 현재는 15유형의 장애를 포괄하고 있다. 등록장애인 수는 약 25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에 수준이며, 2000년 등록장애인 수 약 100만 명의 2.5배 수준이다. 장애인구 수의 증가는 장애범주 확대 영향도 있지만, 장애인정책의 발전과 복지급여 확대와도 관련이 있다. 장애인 등록제도 시행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등록해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장애로 등록하는 비율은 40% 이하 수준이었다. 장애인등록제도 시행 이후 장애인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되었다. 항공요금 할인,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의료비 지원, 이동통신요금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자녀교육비 지원 등의 각종 감면 또는 할인제도가 확대되면서 지급대상을 결정하는데 장애등급을 주요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연금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 등의 핵심적인 장애인복지제도에서도 장애등급을 급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현금급여, 현물급여, 감면 또는 할인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급여는 80여종에 이른다. 장애등급제를 둘러싼 갈등은 복지급여 확대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2007년 중증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급여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증장애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통해 적격성 심사를 받

7) 2014년 6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도록 하였다. 이전에 지역 병·의원 의사들로부터 판정받은 장애등급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애등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장치는 2010년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등과 함께 더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에 복지급여를 받던 사람이 등급재판정을 통해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운동단체들은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장애등급제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비인간적인 제도임을 역설하면서 등급제 폐지라는 대안을 정치권에 호소하였다. 등급제폐지는 당시 새누리당, 민주당 대선후보들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현재는 등급제폐지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등급제폐지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이슈이다. 장애등급제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지급여 전달비용을 낮추는 행정효율성이 높은 장치이다. 그러나 복지급여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는 개별중심의 지원, 맞춤형 복지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판단하는 장애정도에 모든 급여를 맞추는 매우 비인간적인 제도이다. 이런 면에서 등급제폐지는 정당하다. 그러나 등급제 이후의 대안 마련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급제폐지 이후에 복지급여의 기준이 복지제도 마다 각각 마련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즉, 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 장애기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 장애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장애기준, 각종 감면 및 할인제도 대상 장애기준 등이 각각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제도 마다 신청 시에 장애정도심사 및 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도단위로 assessment 절차가 마련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의 전면적인 대개편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장애정도를 숫자로 표시하는 등급을 없애고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구분하는 방안, 장애로 인한 기능 손상을 비율로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다. 이런 논의에 대해 장애인운동진영에서는 등급제폐지의 기본 방향에 맞지 않다고 비판한다.

장애등급제폐지는 사회복지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자원중심(resource-led) 또는 서비스 중심(service-led) 사정에서 욕구중심(need-led) 사정으로의 변화 필요성 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욕구주도 사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꼭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사용할

수 있는 욕구사정을 위한 사정 도구 또는 패키지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사정 도구 또는 패키지를 사용할 공공분야 사회복지사들을 사정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훈련 받은 전문가들의 사정 결과가 존중될 수 있는 행정에서의 재량적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도구를 기계적 사용하여 cutting point를 정하는 방식에서는 욕구주도의 사정이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대안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2. 장애등급제 폐지(개편) 이후의 과제

2017년 하반기에 장애등급제는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중요하다. 첫째는 등급제 폐지 이후 각 서비스별 장애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장 제도에 적용할 장애기준,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서비스제도에 적용할 장애기준, 감면할인 및 이동지원 제도에 적용되는 장애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장애인의 개인적인 욕구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이다.

1) 서비스 별 장애이기준의 개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서비스별로 장애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2] 장애인연금제도에서는 근로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애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서비스에서는 서비스 욕구를 구성하는 장애정도, 거주환경, 가족관계 등을

2) 등급제 폐지의 이슈는 이제는 구체적인 논의수준으로 들어가야 한다. 행정적 편의를 위하여 사람을 판정하고, 이를 다면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등급제 폐지는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감면할인 등의 제도 목적에 맞게 장애정도가 고려되는 방식이 고민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장애수준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라는 기준만으로 장애인연금의 지급도 가능하다. 또 동일한 저소득인데 장애정도가 더 중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금액의 장애인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 심사는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측정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기능적 기준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측정 수준으로 가면 사실상 의학적 기준과 큰 차이를 두기가 어렵다는 점을 가정하면). 활동지원제도의 인정심사의 수준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감면할인제도에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중증장애인에게 국한된 또는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감면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중경증 정도의 구분은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구체적인(가시적인) 수준의 큰 가닥을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의 필요성을 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감면할인 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장애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새로운 전달체계의 구축

등급제 폐지 이슈의 대안은 장애인연금제도, 각종감면할인제도, 복지서비스, 활동지원제도 각각에서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6개 지자체에서 수행한 종합판정체계 시범사업은 등급제 폐지를 서비스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제이다. 연금공단이 종합판정체계를 통해서 심사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지원계획의 개요적인 제안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심의위원회에서 개인별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제공서비스를 정한다.

지난해 수행된 시범사업 예산배정을 보면 서비스 소요예산은 지자체에, 시스템 운영예산은 연금공단에 지급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의 모습은 공단이 심사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공단은 지역사회의 각종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통제권한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연금공단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분담 모형은 연금공단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심사를 수행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3] 연금공단의 향후 근본적인 역할은 장애심사이다. 등애등록을 위한 심사기능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 관련 장애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다. 장애인활동지원심사 기능도 향후 여기에 통합되도록 한다.

3.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의 과제

지난해 6개 지자체에서 수행한 등급제폐지 이후의 종합지원체계가 맞춤형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연금공단의 인정조사를 토대로 지자체가 확정한 서비스 계획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되는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비스

3) 발달장애인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보면, 연금공단은 다른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센터는 현재 시범사업에서의 지자체에 준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장애인연금 등의 소득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각종 감면할인제도 등을 포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 소속한 복지플래너가 장애인에 대한 인정조사를 수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장애인연금 수급 등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통합조사팀에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각종 감면할인제도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잘 안내해 주면 된다. 서비스 영역은 개인에게 적합하게 서비스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하기 때문에 맞춤형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의 사실상 핵심은 장애인 서비스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이를 실제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비스들의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서비스들을 맞춤형 급여와 제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런 연계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인정조사의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이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구분	매우 중대 (critical)	중대 (substantial)	보통 (moderate)	낮음 (low)
응급대응 필요 영역	〈매우중대/응급대응 필요〉 - 즉시 제도서비스로 의뢰 - 제도 서비스로 의뢰 시 서비스 기관에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 기존제도의 긴급지원, 학대보호 등과 연계 - 위험상황의 독거, 학대 등의 상황에 있는 경우	〈중대/응급대응 필요〉 - 제도 서비스로 의뢰시 서비스 기관에 서비스 제공 적극 검토 의무 부여 - 장애부모 양육 스트레스 등의 경우	보통의 문제/ 단기적 대응 - 제도 서비스로 의뢰	중요도 낮은 문제/ 단기적 대응 - 종결
장기대응 필요 영역	〈매우중대/장기대응 필요〉 - 즉시 제도서비스로 의뢰 - 제도 서비스로 의뢰 시 서비스 기관에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 독거, 서비스 단절된 만성장애 등의 상황에 있는 경우	〈중대/장기대응 필요〉 - 제도 서비스로 의뢰시 서비스 기관에 서비스 제공 적극 검토 의무 부여 - 가족기능회복, 장애아동 사회적응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보통의 문제/ 장기적 대응 - 제도 서비스로 의뢰	중요도 낮은 문제/ 장기적 대응 - 종결

1)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의 '급여 개편'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은 크게 거주시설서비스와 비거주시설서비스로 구분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서비스는 단기적으로 각각의 인정심사 기준(거주시설 입소 기준, 활동지원 인정조사 기준)에 따르되 장기적으로 단일의 인정조사 체계(single assessment system)에 의하여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거주시설서비스는 전체 거주시설 서비스 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이 해당한다. 맞춤형 전달체계가 인정조사를 통하여 거주시설 이용이 필요하고, 이용자도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거주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결되어야 한다.[4] 그리고 실제로 이런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거주시설의 모습도 분리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에 통합된 '집과 같은(like home)' 소규모 거주공간으로 대대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의 비거주서비스의 경우는 지나치게 분절되어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 활동지원제도(현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구성)를 중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향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day services), 단기휴식서비스(respite services), 보조기기 서비스(technical aids services) 등을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맞게 재편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모두 활동지원법에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방향의 개편을 통해서 일본의 장애인종합법(이전 자립지원법) 체계, 영국의 커뮤니티케어 체계와 같이 장애인서비스 전반을 지역사회 단위로 하나의 진입점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급여 다양화', '급여 범위 확대', '타제도 흡수'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정부에서 2016년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은 활동지원제도 이용자의 50%를 구성하는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라는 큰 틀을 통하여 기존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급여통합 대상으로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

4) 현재 '수급자 또는 무연고자'로 제한되어 있는 이용자격을 '장애정도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 지원 수준이 높은'거주시설 중증장애(현재는 1, 2급)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 활동지원의 급여 범위에 발달재활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8세 이후에도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욕구에도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도 발달재활예산을 활동지원 예산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의 종류에 발달재활이 추가됨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선택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 기존의 발달재활 받던 아동들 중 탈락하는 아동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정조사표를 통한 장애구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급여량이 적은 경증등급을 추가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경증의 인정조사 등급은 현재의 발달재활급여량에 준하게 설정하는 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급여대상인구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동 인정조사 등급과 성인 인정조사 등급을 분리하고, 아동 인정조사 등급에만 경증 활동지원등급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과정에서 기존의 제도를 통합하는 경우 통합대상 제도의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 소요가 추정되어야 한다. 점진적 제도 통합은 점진적 예산확대와 병행되도록 하여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불리한 상황에 빠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이양사업의 서비스 '진입경로의 개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수화통역센터, 체육시설 등 다양한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사업은 맞춤형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서비스들이다. 현재 이들 각각의 서비스는 각 서비스 기관이 이용자를 선발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향후 등급제 폐지 이후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정조사 결과에서 <심각/응급>, <중대/응급>의 경우는 지방이양 장애인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지방이양 장애인서비스 기관의 이용자 충원을 맞춤형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1단계에서는 지방이양 장애인서비스의 각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의 10%를 맞춤형 전달체계의 인정조사를 통해서 진입하도록 하고, 2단계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의 30% 이상을 맞

춤형 전달체계를 통해서 진입하게 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50% 수준으로 이용자 충원이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4.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1) 단기: 맞춤형 전달체계 수행 참여자로서의 역할

현행 맞춤형 전달체계는 장애등급제 폐지(개편)의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은 새로운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등급제 폐지(개편) 이후에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구분 외에는 장애정도에 대한 정보가 없어진다. 이 경우 새로운 서비스 기준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거주시설 중증장애기준은 2급 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2급 장애라는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거주시설 지원기준인 2급 장애를 대체하는 서비스 기준이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해서 산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에서 중증장애 우선이용의 원칙을 정한다고 할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의 구분을 그대로 서비스 기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부 기준 중증장애 내에서 더 중증의 장애가 서비스 진입의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 기준으로서의 장애심사가 매우 중요해 진다. 이 영역은 지금까지 장애등록 심사와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를 담당해 온 연금공단의 역할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맞춤형전달체계는 크게 연금공단의 장애심사기능과 지자체의 서비스연계기능이 결합된 체계이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지자체단위로 연금공단에 4명의 복지플래너, 지자체에 2명의 품질관리사를 배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자체의 서비스 연계기능과 관련해서는 읍면동복지허브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읍면동복지허브화와 희망복지지원단은 서비스 급여를 할당하는 기능보다는 개인별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공적사적 자원을 개발하여 욕구와 자원을 연결시키는 역할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에 맞춤형전달체계는 자원개발을 통한 자발적 서비스 연계도 포함하지만, 기본 역할은 연금공단의 장애심사 정보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역할이다. 동복지허브화나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메꾸는 역할모형이지만 맞춤형전달체계는 공공복지의 제도적 연결을 주로 담당하는 모형이다. 그러나 실제로 맞춤형전달체계는 심사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제도적으로 연계시키는 활동 외에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같이 비제도적 차원의 서비스 연계 활동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지자체의 서비스 연계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 맞춤형 전달체계를 통하여 욕구가 확인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두드러진 기관이 때문이다.

2) 장기: 장애인복지관 재정 구조의 예상되는 변화

장애인복지관은 의료, 교육, 직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망라하여 제공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기관이며, 1980년을 전후하여 설치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전국에 200여개가 존재한다. 그리고 직원 수는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50여 명에 이르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제공기관이다. 이런 장애인복지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서비스는 수요자(개인별) 지원방식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기관 운영비 지원 방식과 수요자 지원방식이 병존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수요자 지원방식에 의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을 위한 지원서비스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재가복지봉사센터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기관 운영비지원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 등의 장애아동발달재활 영역의 경우에도 이전부터 기관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던 서비스가 있고, 바우처를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활동지원과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들 사업을 통하여 확보되는 정부재정의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향후 몇 년

후에는 활동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등과 같이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전체 재정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의 절반에 가까운 서비스가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전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장애인복지관은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요자지원과 공급자지원 방식의 조합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방정부와의 두 가지 측면의 서로 다른 관계를 통해서 수행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지방정부가 이용자격을 승인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미리 정해져 있는 서비스별 단가에 따라 지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같은 경우이다. 둘째는 지방정부와 협의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프로그램 기반으로 지급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개별 프로그램 단위로 개별적인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몇 개의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포괄계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관 운영비지원 방식은 전체 서비스에 대한 포괄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관운영비 지원 부분의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은 지역사회중심적이면서 장애민감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동안 강조되었던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관점을 계승하고, 최근의 모델로 제안되는 CBSS(Community Based Support Services) 모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실천의 지역사회 중심기관으로서 장애당사사정을 존중하는 장애민감성(disability awareness)을 실천의 바탕에 두는 옹호(advocacy) 지향성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의 인력을 구성하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치료사 등에 대하여 직원의 공통적 실무기반을 제공하는 의무적 권리옹호 교육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다른 지역사회서비스들의 경우에도 어떤 재정지원 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주간보호시설처럼 중증장애인 중심의 이용이 중요한 서비스의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운영비용을 가산하는 중증장애인 비용가산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런 면에서 주간보호시설의 경우는 공급자

지원 방식보다는 수요자지원방식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제도 변화가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기존의 주간보호시설의 명칭을 '장애인 활동센터'로 개칭하고, 그 내에서의 종류도 '중증장애인 활동센터[5]', '장애인 활동센터'로 구분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센터'에 대해서는 인력 및 공간 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 대안적인 전달체계로 시도되고 있는 맞춤형전달체계의 기능과 부합한다. 맞춤형전달체계를 통해서 서비스 심사와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역할을 장애인복지관이 등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5) 중증장애인활동센터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팀스터디 16-14

“응용행동분석의 이해”

팀 명	주간보호팀
일 시	2016년 09월 18일
발표자	김은숙, 임명호, 이지수, 정지은
장 소	늘푸른동산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ABA-Applied Behavior Analysis-의 간단한 정의

작성자 : 주간보호 김은숙

응용행동분석은 과거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쏜다이크(Edward Thorndike)가 정리한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을 기초로 하여 하바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비 에프 스키너(B. F. Skinner) 박사가 체계화한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를 모체로 하여 탄생된 행동 관리 학문이다.
비 에프 스키너 박사의 작동적 조건화가 바로 과거에 선풍을 일으켰던 행동수정이론(Behavior Modification)이다.
그러나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행동수정이론(Behavior Modification)은 운영상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하였기에 이를 과학적으로 행동수정하여 탄생시킨 이론이 바로 응용행동분석이다.
그러나 응용행동분석 이론도 행동수정의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행동 수정의 기초적 이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이 이론은 최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인 모델로 더욱 체계화시킨 미국 UCLA의 이바 로바스(Ivar Lovaas) 박사의 이름을 예우하기 위해서 로바스 방법(Lovaas Method)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응용행동분석의 구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변별 학습 이론(DTT: Discrete Trial Teaching)이 그 명칭으로 대체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응용행동분석의 효과성에 관한 확실한 과학적 검증 자료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LA)의 이바 로바스 교수 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어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2 년간 철저히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89%의 아동들의 현격한 변화가 관찰되었는데 특히 47%의 아동들은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었으며 지적 능력이나 적절한 행동에 대한 테스트 결과도 평균적인 일반 아동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cEachin, et al,1993).

응용행동분석은 다음에 소개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1. 응용행동분석의 중요 내용

(1)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응용행동분석의 초점은 아동들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은 배워 익힌 것(learning)이고 또한 이렇게 배운 행동들은 상실될 수도 있는 것(unlearning)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이 보이는 행동적인 증상도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상실하게 할 수 있다(unlearning).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부적응 행동들을 행동치료를 통해서 없애거나 다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원리인 것이다.

(2) 변별학습이론 (DTT: Discrete Trial Teaching)
모든 학습된 행동이나 기술은 전제적 자극(Antecedent)에 기인하여 학습되는데 이미 학습된 내용이나 행동 혹은 기술은 후속자극(혹은 결과 유발, Consequence)에 의해서 강화되고 유지하거나 혹은 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A-B-C 공식이 탄생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변별학습 공식이다.

전제자극(Antecedent) --> 행동 (Behavior) --> 후속자극 (Consequence)

예를 들어 교사가 아동에게
“철수야! 1+2가 뭐니?”(전제자극: Antecedent)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아동이 “3”(행동; Behavior)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교사는 그가 더 잘 맞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사탕을(후속자극:Consequence)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럴 때 아동은 위의 A-B-C의 변별학습 공식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행동적인 면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본다.
아동이 어느 순간에 텐트럼(행동: Behavior)을 보였다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전제자극: Antecedent) 발생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텐트럼 행동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타임아웃과 같은 응벌(후속자극: Consequence)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변별 학습 공식이 적용되어 아동의 행동을 치료하는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어 본다. 11개월 된 아기가 더운 여름 날(전제자극: Antecedent)에 우연히 방안을 기어 다니다가, 구석에 놓인 물이 담긴 세수 대야에 우연히 손을 넣었더니(행동: Behavior) 시원함을 느껴서 미소를 지었다(후속 자극: Consequence).

원래 이 아기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물이 담긴 세수 대야에 손을 넣으면 시원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손을 넣은 행동 후에 뒤따른 시원한 보상적 상황(후속 자극)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수시로 손을 넣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행동 후에 유쾌한 보상적 상황이 이어지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 행동 후에 불쾌한 응벌적 상황이 이어지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만약에 같은 아이가 더운 날(전제 자극) 방에서 기어 다니다가 구석에 놓여있는 뜨거운 커피 잔에 우연히 손가락을 넣었을 경우(행동) 즉시 아동은 불쾌한 응벌적 상황(후속 자극)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커피 잔 근처에는 전혀 접근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변별 학습 과정을 통하여 아동은 위험의식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별 학습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거나 부적응행동을 치료하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중요한 학습 과정인 것이다.

이는 스키너 박사의 작동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 이론, 즉 행동 수정(behavior modification)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그의 이론 맥락은 어떤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어지는 상황이 유쾌한 상황, 즉 보상적 상황(rewarding conditions)이 따르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며, 만약 그 행동에 이어지는 상황이 불쾌한 상황, 즉 응벌적 상황(punishing conditions)이 따르면 그 행동의 재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키너 박사의 행동 수정 이론에 첨가하여 그 행동이 일어나는 이유나 원인적 전제 상황을 추가함으로써 변별 학습의 공식과 이론이 성립된 것이다.

(3) 과제 분석(Task Analysis)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학습과 인지적인 능력에서 지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방법으로는 별로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 이유로 아동들이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까지 갖추고 있는 기술의 수준이 객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반 아동의 진도 수준으로는 학습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아무리 기능도가 낮은 기술을 가르칠지라도 기술을 세분화하고 과제 분석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과제 분석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Helen Keller) 여사이다.

이 과제 분석의 기초적 원리는 어린 아이가 뛴다는 것은 간단한 기술이지만 세분화한 기능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제일 먼저 그 아동은 기어 다니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은 일어나 앉는 법, 그 다음은 일어서는 법, 마지막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난 후 뛰는 법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과제 분석의 기초 원리이고 아무리 기능이 낮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일지라도 이러한 방법으로 기술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4) 측정 가능성(Measurable)
모든 행동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하고 데이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행동관리와 학습방법은 모든 행동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어서 평가가 합리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객관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행동치료나 학습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도 평가할 수 있어서 아동의 필요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갖추어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에 소개하는 바와 같이 치료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정의 내리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학계에서는 작동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라고 한고 그 반대를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라고 한다. 응용행동분석학계나 심리학계에서는 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작동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념적 정의(측정불가)
1. 아동이 항상 자제력이 필요하다.
2. 아동이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3. 아동이 지금 공부할 기분이 아닌 것 같다.
4. 아동이 일반적으로 성격이 포악하다.
5. 아동의 말이 발전되고 있다. (위의 다섯가지의 관찰력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작동적 정의(측정가능)
1. 아동이 하루 평균 열 차례의 텐트럼을 보인다.
2. 아동이 친구나 친척이 방문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서 악수하고 안긴다.
3. 아동이 과제나 지시를 주면 울고 고개를 돌린다.
4. 아동이 다른 사람을 꼬집으면서 발로 찬다.
5. 지난 주에 네 단어를 모방했는데 이번 주에는 일곱 단어를 모방했다.

(5) 일관성 있는 적용과 구조적 환경
(Consistent administration and structured environments)
모든 행동 치료나 학습의 방법은 용어 사용에서 적용할 때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일관적인 심리적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치료 교사들이 항상 팀웍을 유지해야 하며 서로간에 의사소통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가운데 교사의 프로그램 적용이나 행동관리 규정이 통일성을 이루고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2. 응용행동분석의 장점
(1) 교육을 받는 아동에게 언어의 사용은 필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지체되어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 애 아동들에게 크 유리하다.

(2) 증세의 원인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여타의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아동의 증상의 원인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체적인 원인을 알기 어려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특히 유리하다.

(3) 측정성이 높아 객관적인 측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4) 현재까지 연구된 무궁무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참조할 연구 자료가 많다.

예를 들어 외국의 사례에 관련된 참고 문헌 중에서 응용행동분석을 통한 사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학계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치료모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되는 "탁월한 (choice)"이라는 수식어가 응용행동분석방법에 붙여 사용되는 예우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자폐 아동 치료 교육 기관인 May Institute, New England Center, Autism project Center외에 여러 기관에서 응용행동분석을 선호한다 (Treatment of Choice).

(6) 운영방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소정의 연수만 받고도 집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24시간 체계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7) 집중성이 떨어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에게는 더욱 쉬운 단계로 과제 분석을 나누어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에게는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8) 응용행동분석 방법이 일정한 패턴(Pattern)과 일관성 있는 적용을 중심적인 원리로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에게는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을 위한 의사소통 및 언어 훈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안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음운론적, 문장론적, 조음론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아동의 자발성과 동기 함양에 훈련의 초점을 두게 되면서 응용행동분석에 의한 교육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언어를 하나의 행동(speech act)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보상 방법을 통하여 동기와 발화 능력을 함양하는 화용론적 접근 방법과 가장 적합한 모델이 바로 응용행동분석 방법이다.

팀스터디 16-15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16년 03월 31일(목) 17:30-19:00
발표자	김지혜
장 소	보호작업장

열 린 일 터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2016년도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 22가지를 소개했다. 시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바뀐 주요 복지제도는 50가지 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터넷에서 '복지로'를 검색하여 바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달라져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이하면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8%를 넘고 40%이하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40%를 넘고 43%이하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으며, 43%를 넘고 50%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2016년 1월1일부터 생계급여 수급자는 29%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2015년 대비 4% 인상되어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2016년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2만 4831원, 2인 가구 276만 6603원, 3인 가구 357만 9019원, 4인 가구 439만 1434원, 5인 가구 520만 3849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즉, 1인 가구는 81만 2416원, 2인 가구 138만 3302원, 3인 가구 178만 9510원, 4인 가구 219만 5717원, 5인 가구는 260만 1925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니고, 대학교는 정원외로 특례입학하며, 대학교 입학 후에는 연간 48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인상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는 422만 2533원이었는데, 2016년 1월부터 439만 1434원으로 4% 인상되었기에 수급자의 수가 늘고, 급여수준도 인상

된다. 2015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위소득의 28%이하였는데, 2016년에는 29%이하로 상향되었다. 4인 가구의 경우 2015년에는 생계급여로 최대 118만 2309원까지 받았는데, 2016년에는 127만 3516원까지 받을 수 있어서 9만 1207원이 인상된다. 이는 생계급여액이 7.7% 인상된 셈이다.

또한, 주거급여는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4% 인상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2015년 보다 1.4% 인상된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6년의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의 경우 서울 19만 5000원, 인천·경기 17만 4000원, 광역시 14만 3000원, 그 외 지역 13만 3000원이다. 4인 가구의 경우 각각 30만 7000원, 27만 6000원, 21만 5000원, 1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임차가구가 받은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임차료만 받고, 많으면 기준임대료만 받을 수 있다.

▶ 암검진 연령 낮추고 주기 짧아져

2016년부터 암검진 연령을 낮추고 주기가 짧아진다. 2015년에도 특정 연령이 되면 자궁경부암, 유방암, 간암, 위암, 대장암은 무상이나 본인이 10%만 부담하고 암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자궁경부암은 20대의 자궁경부암과 상피내암 발생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다. 미혼인 경우에도 자궁경부암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40세 이상은 유방암 검사를 하면 좋다.

또한, 간암은 암의 발전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하여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했다. 암은 빨리 발견하고 치료할수록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혹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보건소에 신고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어 주고, 치료비를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신청하기 바란다.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

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 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은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가 새로 설치되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도 강화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당 4억원을 투자해 2개소 새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도 10억 원을 책정해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고 지원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3500명 확대된다. 현재 5만 75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장애정도와 지원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2015년 대비 2.2% 인상해 9000원이다.

또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15년에 비교하여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밖에도 새해에 바뀌는 복지제도가 많으니 '복지로'를 꼭 검색하기 바란다.

* 복지포털 사이트 http://www.bokjiro.go.kr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으로 확 바뀌었다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1원만 많아도 수급권자에서 벗어나서 생계급여 등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다소 낮아 생계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소득인정액이 높아 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보다 더 여유있게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난한 사람은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다면 수급자의 지위를 유

지할 만한 돈만 벌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계속 받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셈이다.

▶ 선정기준 중위소득 419만 원(4인가구)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종합선물세트형 복지에서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바뀌었다.

첫째, 선정기준을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금액이다. 2015년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61만7281원, 2인가구는 105만1048원, 3인가구는 135만9688원, 4인가구는 166만8329원 등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으로 4인가구는 422만2533원이다(필자 주- 최저생계비와 기준 중위소득, 그리고 선정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649,932원, 2인가구 1,106,642원, 3인가구 1,431,608원, 4인가구 1,756,574원 등이다. 2016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24,831원, 2인가구 2,766,603원, 3인가구 3,579,019원, 4인가구 4,391,434원 등이다).

둘째,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당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생계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급여의 종류별로 중위소득의 기준이 달라진다.

생계급여는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인 118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118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이 미치지 못한 액수만큼을 받을 수 있다. 즉 소득인정액이 18만 원인 4인 가구는 생계급여로 100만 원을 받고, 68만 원인 가구는 50만 원을 받는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도 고려된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인 168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필수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률로 받을 수 있다. 근로능력이 없는 1종 가구는 외래진료에 1000~2000원을 내고 입원은 무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2종 가구는 외래와 입원 진료비의 10~15%를 낸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에 싼값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인 181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실제 임대료에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했는데 점차 현실화될 것이다.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이하일 때 선정되어,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와 초·중학교의 부교재비, 중·고등학교의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이하(필자 주- 2016년에는 29%, 2017년에는 30% 이하로 조정될 예정)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의 28%는 더 되고 40%이하인 사람은 생계급여를 못 받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43%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함께 받고, 50%이하인 사람은 최소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이하 땐 '능력 무'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미치지 못해도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부모 등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개편된 제도에서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부양의무자 소득이 중위소득 미만일 때는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교육급여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인 211만 원 이하인 사람은 누구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사람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조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으로 세분된다.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100%를 매달 소득으로 간주하고(차값이 250만 원인 중고차는 매달 250만 원의 소득), 예금 등 금융재산은 500만 원을 공제한 후 연리 75%(월 6.26%)의 이자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면 매달 31만3000원의 소득).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자활급여, '근로' 조건 소득인정액 보충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은 국민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책정돼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그 중 생계급여·주거급여 등은 매월 통장으로 받지만 의료급여는 아픈 사람이 병원·약국 등을 이용할 때 무상으로 요양급여를 받거나 진료비의 10~15%를 내고 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금품의 지급과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과 기술 습득의 지원, 취업 알선, 근로 기회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일을 조건으로 받는다. 자활급여는 일을 통한 복지이고, '생산적 복지'의 상징처럼 인식되었다.

▶ 수급자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 배양

자활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서 근로능력이 있을 때 지정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학생은 근로의무가 면제됨)이고 65세 미만이면서 심신이 건강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들은 자활사업 등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로 선정하였기에 '조건부 수급자'로 불린다.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아 그 일을 하는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호받았다.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를 통칭하여 자활사업이라 한다. 자활사업에는 자활근로, 취업·알선 등 취업 지원, 개인 창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타 자활 프로그램 참여 의뢰 등이 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공공근로사업과 다르다. 수급자가 일을 통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둔다.

자활사업은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 수행하고,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 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활근로의 시간은 1일 8시간(근로유지형은 5시간), 주 5일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지급액은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다. 2015년 현재 시장진입형은 1일 3만6770원(그중 기술·자격자는 3만8770원)이고,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은 3만6770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3만3270원이며, 사회서비스형은 3만3270원(그중 기술·자격자는 3만5270원)이고, 근로유지형은 2만4800원이다. 지급액에는 급여단가에 3000원의 실비가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유지형 지급액은 급여단가는 2만1800원에 실비 3000원이 포함되어 2만4800원이다(필자 주– 지급액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 자활 소득 30% 공제 후 소득 산출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2015년 6월말까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부족한 만큼 주는 보충급여방식이었다. 2015년 6월 현재 최저생계비인 1인가구 60만3403원, 2인가구 102만7417원, 3인가구 132만9118원, 4인가구 163만820원이하일 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계·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1인가구 48만8063원, 2인가구 83만1026원, 3인가구 107만5058원, 4인가구 131만9089원 등이다.

쉽게 말해서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63만820원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으면 최대 131만9089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차액인 31만1731원은 수급자라는 이유로 각종 제도를 통해 받은 급여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금액이다.

따라서 어떤 가구에 소득인정액이 많으면 생계·주거급여 등 현금으로 받는 액수는 줄어든다. 4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가구는 매월 생계·주거급여로 131만9089원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81만9089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한도액을 모두 받고, 일을 열심히 하여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계·주거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충급여 방식이 처음 도입될 때에는 자활소득의 전액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였다. 만약 4인 가구에서 복지·자활도우미로 20일 동안 일했다면 3만6770원의 20일분인 73만54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간주하여 생계·주거급여는 58만3689원만 받을 수 있었다. 자활참여자의 소득은 131만9089원을 넘을 수 없어서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줄인다고 비판받았다.

이후 정부는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공제한 후 소득인정액으로 산출하였다. 73만5400원에서 30%를 공제하면 자활소득은 51만4780원이 되고, 이를 뺀 80만4309원을 생계·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 가구의 실제 수입은 153만9709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추가로 실비 3000원을 공제하여 자활사업으로 73만5400원을 벌면 그 중 실비로 6만 원을 빼고, 나머지 67만5400원의 70%(47만2780원)를 공제하여 생계·주거급여로 84만6309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을 통한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 2015년 7월부터 자활급여 바뀌어

2015년 6월말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가 된 사람은 3년간 자활사업에 참

여할 수 있고, 공익형(사회서비스형)에서 시장진입형으로 옮길 경우 2년간 연장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2015년 7월부터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40%를 넘은 사람은 자활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중위소득의 40%를 넘고 50%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활급여는 받을 수 없다.

6월말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은 지정된 날부터 3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활급여 특례자의 소득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중위소득의 40%를 넘을 때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가족 중에 추가로 소득행위를 하여 40%를 넘을 때에는 자활급여를 받을 수 없다.

정리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소득은 늘고 생계·주거급여는 줄어든다. 자활참여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하루 3000원을 실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70%만 소득평가액으로 간주하여 자활참여자는 소득을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다.

2015년 7월부터는 자활급여의 수급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자로 하고, 이전에 자활급여 특례자로 지정된 사람은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은 시·군·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을 하기 바란다.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많다
–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등 다양
지난해 광주시민 1만 8544명이 이용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낮은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정부가 구매하여 필요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하고 정부가 지원·평가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는 매년 다양해지고 있는데, 간병·가사·간호·보육·노인수발 서비스, 외국인 주부·저소득가정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교육 서비스, 문화·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 고소득자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

시민이 사회서비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등 3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일 년간 1만8544명의 시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올해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할 예정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19개 사업에 1477명을 모집하고 16억7000만 원을 투자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정서발달지원, 아동청소년문화예술집중,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서비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많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웰리빙, 어르신 생생활력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등 노인·장애인을 위한 사업과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등이 있다.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해서 이용권(바우처)을 받아야 하기에 제 때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15년의 경우 1인 가구는 월평균소득이 184만6000원, 2인 가구는 371만9000원, 3인 가구는 530만8000원, 4인가구는 596만9000원, 5인 가구는 631만8000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고소득자만 아니라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필자 주– 이 기준은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2016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고, 노인, 장애인 대상 사업은 140%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사업별로 예산과 이용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1순위이고, 과거에 이용한 재신청자와 연장 신청자가 2순위이다. 같은 순위에서는 소득수준, 등급과 선착순을 고려하여 선정하는데, 연초에는 사업별로 신청자가 미달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발급일 1년 이내 의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혹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용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천서는 학교 교장의 것은 인정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센터 등에서 추천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신청자 많으면 선착순 마감…서둘러야

같은 사회서비스 사업도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여러 곳일 때는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동청소년의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을 이용하고 싶다면 이용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중에서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한 해 동안 광주광역시의 사회서비스는 32개이었는데, 제공기관은 167개 기관이었다. 여행지가 같더라도 여행사마다 서비스의 품질이 다르기에 사회서비스는 품질을 평가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매년 프로그램을 평가하지만, 이용자가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선택하는 것이 기

본이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전자바우처를 활용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꼭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것을 일부만 부담하도록 하여 관련 시장을 발달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은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 남구에 사는 주민의 경우, 아동청소년사업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가족사업은 5일부터 9일까지, 노인장애인사업은 10일부터 12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때에는 선착순으로 일찍 마감될 수도 있으니 빨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접수기간은 2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 70가지
– 기획재정부 발간 '2015년 달라진… 이렇게 지원받자' 호평

기획재정부는 '2015년 달라진 정부예산 이렇게 지원받자 70선'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기존의 복지서비스는 물론 새로 도입되는 복지제도를 보육·양육, 교육, 주거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분류와 장애인·중소기업·농어업인 등 이용집단별로 분류했다.
이 책자는 '국민이 모르면 못 쓰는 복지서비스가 70가지가 넘는다'는 것을 정부가 적극 알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공무원이 하는 복지업무의 종류만도 293가지 이상이라고 한다(필자 주– 2015년 7월부터는 360가지라고 홍보함). 다양한 복지서비스 중에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것을 정부가 골라서 알리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가요?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일을 기획재정부가 앞장섰다는 점이 새롭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 각 부처에서 요청하는 예산을 조정하거나 깎는 등 '칼질'하는 곳이다. 바로 그곳에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널리 알린 것은 보편적 복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복지서비스 수급자 기준이 너무 다양하여 국민이 실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소득·장애 여부·실업 여부·비정

규직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 복잡해 당사자가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이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정부가 신청기준을 단순화시키고 표준화 해 널리 알려 당사자나 사회복지사 등 관련 대리인이 신청할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노인에게 33만7000개의 공공일자리를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에서 신청 자격자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인 65세 이상이 아닌 '60세 이상'이라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65세 이상'에게 제공되지만, 이 사업은 '60세 이상'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야 '60세 이상'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4년에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었는데, 2015년 4월부터 20만2600원까지 인상된다. 작년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올해 65세가 되는 사람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하위 70%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본인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동거하는 형제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 당사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노인은 일단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정 한 후에 수급여부와 그 액수를 알려줄 것이다. 국민연금을 타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일단은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소득인정액이 70%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더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받더라도 일단 기초연금 신청을

정부는 2015년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월 60만 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1인당 80만 원 한도에서 6개월까지 지원하며,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3년간 지원하고, 실업기간 중 최장 8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해당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나 기관이 '지원 신청'을 할 때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평소 지원조건을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같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등 제도별로 계산방식이 달라서 당사자가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를 설계할 때마다 기준을 달리하지 말고, 소득인정액의 산출방식을 표준화시켜, 그 액수의 100% 이하는 수급자, 120% 이하는 차상위계층, 150% 이하는 차차상위계층, 200% 이상일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산정과 같이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들도 자신과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보아야 한다. 알아야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사각 없애는 긴급복지제도
– 주 소득자 사망·가출·실직·질병 시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긴급지원

이웃이 어려운 처지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두끼의 식사나 얼마의 돈은 무상으로 줄 수 있지만, 집에 화재가 나 살 곳이 없거나 큰 병에 걸려서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에는 시·군·구청이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정보를 주는 것이 좋다. 주된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실직·질병 등의 상황에 부닥친 가정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내면 생계비를 받을 수 있고, 150% 이내면 의료비·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필자 주– 2015년 7월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확대되었다. 이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생계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연료비·장제비·해산비 등으로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생계비는 6개월까지, 의료비와 교육비는 2회, 주거비는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만약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도 있다(필자 주– 2015년 7월부터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세분화되었으니, 해당 연도의 기준을 확인하기 바란다).

▶ 부양의무자 능력 안 따지는 긴급복지

긴급복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긴급하게 돕는 것이기에 당사자와 그 가족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

지지 않는 제도이다. 따로 사는 아들이나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는데 긴급한 상황에 빠지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까지 긴급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대부분 지원을 받았지만, 일부는 "금융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통장에 예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2015년부터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 원(주거급여는 700만 원)까지 있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하반기부터는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인상되었다. 기준이 인상되면 그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일부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185%로 인상한 경우도 있으니 주된 소득자의 사망·가출·실직·질병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나 그러한 이웃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다.
광주광역시와 각 구청은 매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열심히 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하였다. 각 구청은 통장·반장뿐만 아니라, 쌀집·연탄가게·식품가게 주인 등 주민 생활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동 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여 저소득층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는데, 복지위원이 아닌 사람도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 '선 보호조치 후 자산조사'

긴급복지는 '선 보호조치 후 자산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보호조치를 하고, 후에 소득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한다. 복지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략적인 형편을 파악하고, 통장에 500만 원 이하 돈만 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이 제도의 오용이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많은 금액이 산출되면 지원한 돈을 회수하기도 하는데, 생계비·의료비와 같이 소멸된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나쁜 의도로 지원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탕감해준다. 긴급복지는 도움이 꼭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면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비의 경우 병원에 아직 정산하지 않는 것만 3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빚을 내서 의료비를 낸 경우라도 이미 의료비를 낸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여 의료비가 많이 든 경우에는 바로 시·군·구청에 의료비를 신청하여 병원에 정산해

야 한다.

특히 의료비는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은 소득과 재산을 가져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료비 지원을 주선해줄 수도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즉시 읍·면·동이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도움을 요청하기 바란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록 안하면 무용지물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가족이나 이웃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정부에 등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장애인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등록하지 않으면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종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는 15가지다.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지적장애인 등 다섯 가지에 한정된 적도 있었기에 아직도 장애인의 범주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현재 장애인은 위 5가지에 뇌병변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간장애인·안면장애인·장루/요루장애인·뇌전증장애인이 추가돼 있다. 흔히 뇌성마비 환자였던 사람이 뇌병변장애인이고, 자폐아동이 자폐성장애인이다.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신장장애인·심장장애인·간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정신장애인이고, 화상을 입어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 사람은 안면장애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인처럼 눈에 쉽게 보이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을 한 사람은 환자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당사자와 가족들도 그것이 장애로 분류되는지 몰라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과 단체가 제공하는 대부분의 장애인복지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주어지기에 장애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지만, 신청은 당사자나

가족이 해야 하기에 다음 절차로 하기 바란다.
간혹 장애인등록 절차만 복잡하고 받는 서비스는 별로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글을 읽고 꼭 신청하기 바란다. 등록장애인이 받는 일부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고, 일부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

본인이나 가족이 장애인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과 그 시행령(별표 1)의 내용을 보고 관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 손·발 등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를 증빙하기 위해 엑스레이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원을 찾으면 된다. 또한, 신장·심장·간 이식수술이나 요루·장루수술 등을 받은 사람은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된다. 병원에서는 "장애인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달라"고 하면 된다. 대체로 장애진단서와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장애인등록 신청서'를 달라고 한 후에 잘 기록하여 병원에서 떼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신청해도 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공무원이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보내고, 서류를 받은 국민연금공단이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장애등급심사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가 완료되면 판정 결과를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보내고,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장애인등록증 등은 이후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하면 된다.

▶ 등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록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상당히 많고 매년 조금씩 바뀌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도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클릭해 도움이 되는 것을 적극 신청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예컨대, 18세 이상인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소득·재산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것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어 장애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만 6세 이상~만 65세 미

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2급 장애인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12만2000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등록장애인이 되면 본인 혹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수십 가지가 있다. 승용차를 사면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지역개발공채를 면제받으며, 배기량에 상관없이 LPG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등을 고려하면 편리한 점이 많다. 장애인이나 가족이라면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기 바란다.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 등 선택 가능

날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겨울이 더 춥다. 소득은 낮은데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에 난방비로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너지 빈곤층'이란 낱말이 생겼다. 사람이 살기에 편한 섭씨 18~20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10%를 초과한 가구를 에너지 빈곤층이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 빈곤층은 약 158만 4000가구이다. 저소득가구는 에너지가 많이 드는 노후주택에 산다. 한 집에 평균 3명이 산다면 에너지 빈곤층은 약 475만 명으로 추산된다.

노후주택 거주율은 상위소득 20%의 30%이지만, 하위소득 20%는 67.7%라는 통계가 있다. 노후주택에 사는 가구일수록 노인·아동·장애인이 많고, 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이 더 춥다.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53%는 노인가구이다.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 등 노인포함 가구가 에너지 빈곤층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가구의 연료비는 월평균 7만4078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10만8517원보다 낮지만, 월 지출 중 연료비 비율은 11.5%로 전체 가구 5.3%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지출중 연료비를 많이 쓰지만, 에너지 효율이 낮은 집에서 살기에 겨울이 춥다.

▶ 중위소득 43% 이하 주거급여 가능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달 통

장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의 액수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2015년의 경우 1인가구는 서울에 살면 19만 원, 인천과 경기도 17만 원, 광역시 14만 원, 그 외 지역에선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주거급여의 액수도 늘어나서 4인 가구는 서울 30만 원, 인천과 경기도 27만 원, 광역시 21만 원, 그 외 지역은 19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한도액이고 광주광역시에 사는 4인 가구의 실제 임차료가 월 25만 원이면 21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임차료가 월 15만 원이면 15만 원만 받을 수 있다.

▶ 에너지 바우처 내년 1월29일까지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의 28%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물론이고,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자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이므로 그것의 40%인 62만4935원 이하인 사람, 4인 가구의 경우 422만2533원의 40%인 168만9013원 이하인 사람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책정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늦어도 2016년 1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 1인가구 8만1000원, 내년 3월까지 사용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사람은 난방카드로 난방에너지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와 요금을 차감하는 가상카드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실물카드 신청자는 국민행복카드사(BC, 롯데, 삼성)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이 카드를 이미 소지한 대상자는 별도의 발급 절차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사는 현재 전화 상담과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 등 수급자 편의를 위해 요금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신청도 가능하다. 가상카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카드결제가 어려운 아파트 거주자 등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추가적인 카드발급 절차 없이 본인이 선택한 난방에너지의 12월 사용 요금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동으로 차감 받는 방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가구당 지원액은 가구원수가 많으면 조금씩 늘어난다. 1인가구는 8만1000원이고, 2인가구는 10만2000원, 3인가구는 11만4000원이다. 사용기간은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쓸 수 있다. 3월까지 다 쓰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4월 전기 사용분에 대한 요금고지서에서 일괄 차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자 수가 11월30일 현재 약 22만 명이라고 밝혔다. 11월9일 공식 개통된 이후 매일 신청자가 늘었고, 2016년 1월말까지 신청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 대해 12월부터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발급한다.

▶ 당사자 신청때만 지급? '생색내기' 오명

정부가 저소득층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실시하지만,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 대표적인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은 생산원가에 비교하여 비싼 편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와 도시가스 등은 산업용에 비교하여 턱없이 비싸기에 가정용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 노후주택을 그대로 두고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효과를 키울 수 있다.

한편,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복지행정만 번거롭게 한다"는 불평도 있다. 현재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다. 복지공무원이 수급자 가구중 노인·아동·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알고 있는데, 당사자가 신청할 때만 에너지바우처를 주는 것은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겨울철에 난방비가 더 들어가기에 주거급여 액수를 한시적으로 더 입금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일만 만든다고 한다. 2016년에는 반드시 개선되길 희망한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전화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에너지바우처 http://www.energyv.or.kr

팀역량계발 16-16

당사자 연구
‘베델의 집 렛츠! 당사자 연구’사례를 중심으로

팀 명	남동사회복귀시설 그루터기
일 시	2016년 11월 21일(월)
발표자	김진애, 정진옥, 정용주, 송현식, 송준규
장 소	그루터기 상담실

당사자연구의 이해

1. 당사자 연구

1) 당사자연구의 진행방법

당사자연구의 대략적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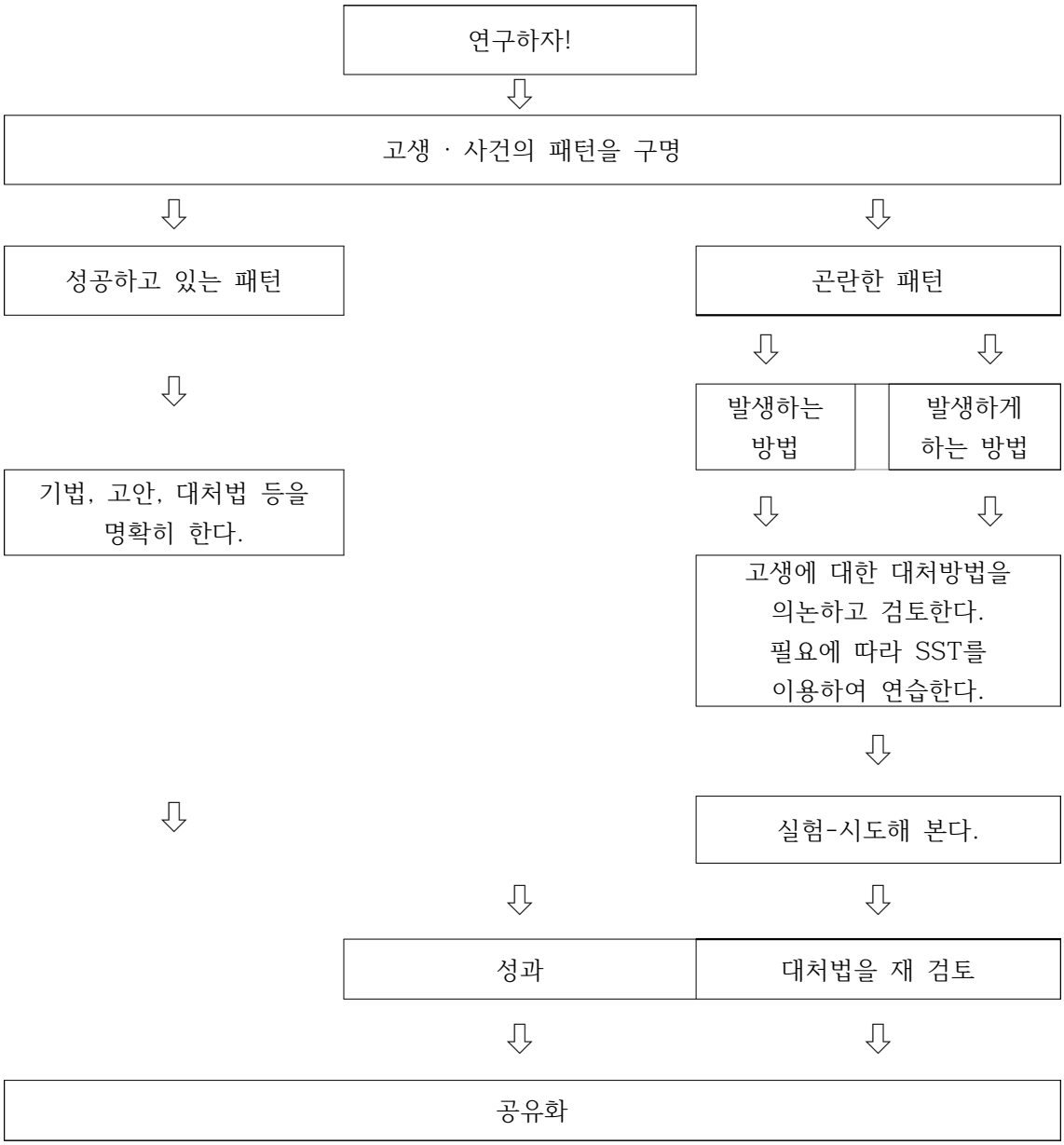

2. 당사자 연구의 실제

1) 커뮤니케이션 계통의 고생

▦ 머리말

‘말 되찾기’에 대한 연구 ~‘죽고 싶은 욕구’에서 ‘살고 싶은 욕구’로~

: 제 안에는 줄곧 ‘죽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 내내 그 욕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인연이 닿아 우라카와에 이주해 온 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주일 내내 “죽고 싶다!”고 호소하며 응급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면 그 기세를 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병원에서는 입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우라카와에 와서도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고 이러다 죽어 버리는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 고생의 프로필

저의 자기병명은 ‘조현병 습관성 자기학대형·환청씨와 나의 상호의존타입’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항상 비난 받거나 혼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늘 전전긍긍하며 사람들에게 응석부리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행동도 느려서 부모에게 늘 야단 맞곤 했습니다.

발병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기분이 매우 침체되어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인사를 해도 같이 인사를 나누지 못하거나, 집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며 ‘서툴다’ 라든지 ‘못친다’고 하는 동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문학교에 들어가서도 ‘죽는게 낫겠다’ 혹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가’고 말하는 5명 정도의 남자 목소리가 들려와서 제가 자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안심했습니다. 저의 고통을 겨우 설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죽음의 신’이라고 부르는 압박과 ‘미치야키씨’라고 부르는 저를 위로하는 환청씨와의 사이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며 극한 상태에 달해 있습니다.

▦ 연구 목적

당사자연구의 목적은 일단 응급외래진료를 그만하고 싶고 ‘죽고싶다’고 하는 갈망에서 벗어나고 싶었거 때문입니다. 우라카와에 와서 제가 해온 방법은 ‘자기 고생의 전적 위임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생을 소중히 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당사자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연구 방법

지금까지 겪어온 저의 고생을 화이트보드에 써가며 패턴을 밝히는 작업을 모두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에서는 저의 고생을 말로 표현해나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죽고 싶다’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하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S·A(자조그룹), W·A(여성자조그룹)에 참가하여 동료들의 말하는 방법을 참고하면서 베델과 데이케어 당사자연구 미팅에 참가했습니다.

▦ '죽고 싶다' 패턴의 메커니즘

저는 스무살 때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4년간 '죽고 싶다;고 하는 관념에 지배되어 왔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매우 안심이 되기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는 강박에서 해방되지만, 반대로 이번에는 다량의 약으로 인해 머리가 잘 돌지 않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괴로워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마찬가지여서 '왜 살고 있는 거지?' 라든지 '장래에 대한 생각도 못할 정도라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죽고 싶다'고 하는 관념(죽음의 신)이 나타나 응급외래진료를 받고 응급 입원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당사자연구 과정에서 응급외래진료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과의 유대'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병원이 유일하게 안심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병'이 안심을 얻기 위한 매체였으며 병을 이용해 사람과 연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사람과 연결' 되는 수단이 된 죽고 싶은 메시지

저는 죽고 싶어지면 한밤중에도 부모님께 '응급외래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간청하며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까지는 40분정도 걸립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죽고 싶다'는 고통이 아니라 병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점차 수그러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역시 나는 외로우며, 부모님은 밤중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고 있고, 병원에는 의사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죽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유지시켜 최악의 상태로 병원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열심히 비난하면서 기분을 괴로운 상태로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학대형이라는 자기병명을 붙인 이유입니다.

심야에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선생님에게 '죽고 싶다'고 말해도 역시 처음에는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손목을 자를지도 몰라요'라든지 '약을 대량복용할지도 몰라요'라고 호소하면서 끈질기게 우겨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말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수단을 상실하게 하는 공포감으로 느껴졌습니다.

▦ 말을 되찾다

홋카이도·우라카와에 와서 정신과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주치의선생님으로부터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고향인 '아이치'에서 밖에 통용되지 않는 일종의 방언이고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라카와에서는 응급외래진료를 받을 때 '죽고 싶다'고 말해도 전혀 입원시켜주지 않고 열일곱 알 복용하고 있던 약도 한 달 사이에 네 알로 줄었습니다. '죽을 겁니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베델의 당사자연구 미팅에서 '죽음의 신과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멤버인 시미즈 리카씨가 '응급외래에 가고 싶어지면 나한테 전화줘!'하며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죽음의 신이 찾아왔을 때, 용기 내어 시미즈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마침 좋은 때 전화 줬네. 지금 찌개 만들고 있는데 오지 않을래?"라고 말해줘서 응급외래가 아닌 공동주거 레인보우하우스 찌개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 한 사람 죽음의 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즐겁고 맛있게 찌개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제 안에서 죽음의 신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저의 '죽고 싶다;는 사실은 '살고 싶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다'는 외침이었단 것입니다.

우라카와에서는 자기에 대해 말하는 장면이 실로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한다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던 저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모두가 들어주는 것을 보고 '그럼 내 이야기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미팅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차츰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즉 '말'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당사자연구를 통해 얻은 것

우라카와에 와서 당사자연구를 실시하여 '죽고 싶다'는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밝혀내고 저의 진짜 마음을 '우라카와어'로 번역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이 낫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유대 방법입니다. 아이치에 있었을 때나 우라카와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죽고 싶다'고 하는 괴로움을 통해서만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었지만, 저 나름의 '말'로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하는 괏어을 통해 새로운 유대 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료가 생긴 것입니다. 돈이 드는 응급외래보다 돈이 들지 않는 동료가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레인보우하우스(공동주거)에서 동료들과 함께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매일 갈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데이케어나 베델에 나가기도 하고 강연하러 다니기도 해서 집에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고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끝으로

당사자연구를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토록 많이 죽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왔어'하고 제 자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말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친구가 없어 외로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연구에서는 몇 번이고 이야기해 가며 자기 고생을 정리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명해가는 과정을 중요시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고 싶다'고 하는 일도 없어지고, 점차 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자신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로 자기를 좁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 내 실천 및 적용 사항

– 베델의 집에서 진행되었던 '당사자연구' 사례를 통해 당사자연구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시설에서 적용하기에는 이해가 낮아 실제 당사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시설의 기관방문을 통해 실무자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당사자의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베델의 집에서는 당사자연구 뿐만 아니라 병원 치료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원한다고 무조건 적인 입원을 시키기 보다 다른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는 부분이 있어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강점이었다고 생각된다. 본 시설의 당사자들 또한 스스로 자신의 고생에 대해 연구하며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2016전문자료집 – 팀스터디

남동발간 2016-11호

■**발행일** : 2016년 12월

■**발행인** : 서 현 정

■**편집인** : 윤 진 현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